

#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제도를 통한 거래징수 효율화 방안

2010. 12

김재진

**Kipf** 한국조세연구원



## 서 언

부가가치세란 재화나 용역이 생산·제공 또는 유통되는 모든 단계에서 기업이 부가적으로 창출하는 가치에 대해 과세되는 조세이다. 부가가치세는 간접세로서 납세자가 본인의 세금이 아닌 담세자의 세금을 징수하여 납부하는 제도이며, 따라서 납세편의와 납세자가 담세자로부터 징수된 세금을 탈루하지 않고 그대로 국고로 납부하는 납부의무 이행이 가장 중요하다.

부가가치세의 경우 간접세이기 때문에 납세자와 담세자가 다르며 이론상 세금이 최종소비자에게 전가되어 소비자가 담세자가 되며, 사업자는 세금부담이 없는 단순한 납부의무자임에도 불구하고 2008년도 기준 부가가치세 체납액이 6조 1,131억원으로 체납발생총액 19조 3,560억원의 약 31.6%를 차지하고 있어 선형·기간세제로서의 부가가치세의 역할이 크게 훼손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런 현실이 계속 방치된다면 성실한 납세의무 이행 풍토가 무너지고 정부와 국세행정에 대한 신뢰성에 심각한 악영향을 초래할 것이다.

정보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다양한 방식으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바, 국세행정도 새로운 전자금융 및 결제 환경의 변화에 부응하여 개선되어야 하며,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도 거래징수의 효율화를 도모하고 새로운 금융기회를 창출해야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 제도의 특징과 전반적인 체계 및 문제점들을 살펴보고,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제도의 국내·외 사례를 다각적으로 분석하여 이를 토대로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들을 제안한다.

본 보고서는 본원의 김재진 박사가 집필하였다. 저자는 본 연구의

중간 및 최종보고 세미나에서 도움을 주신 원내의 연구위원들과 외부의 전문가들 그리고 최종단계에서 유익한 조언을 주신 익명의 심사자들께도 깊은 감사를 표하고 있다. 그리고 보고서 작성 과정에서 자료 수집 및 정리 등에 도움을 준 허운영 연구원, 변경숙 주임연구행정원에게도 심심한 감사의 뜻을 표하며, 보고서 제작에 애쓰신 본원 출판팀 직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린다.

끝으로 본 연구보고서의 내용은 저자들의 개인적인 의견이며, 본원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을 밝혀둔다.

2010년 12월

한국조세연구원

원장 원 윤 희

## 요약 및 정책시사점

부가가치세란 재화나 용역이 생산·제공 또는 유통되는 모든 단계에서 기업이 부가적으로 창출하는 가치에 대해 과세되는 조세이다. 부가가치는 사업자가 생산·유통과정을 통하여 창출한 가치의 증가분을 의미한다. 현행 부가가치세 제도는 매출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율(10%)을 적용하고 매입 당시 부담한 부가가치세액을 공제하여 납부세액을 계산하는 전단계세액공제법을 적용한다. 전단계세액공제법하에서 사업자(공급자)는 재화 등을 공급할 때 그대가 이외에 부가가치세액을 거래상대방으로부터 거래징수하여야 하고, 거래상대방은 공급자가 거래징수하는 부가가치세액을 지급할 의무가 발생한다. 이러한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는 1977년 도입되어 올해로 33년이 경과되었으며, 도입 시점과 비교하여 경제규모·공급자와 수요자간 역할관계 등 부가가치세 제도의 환경은 크게 변화하였다. 하지만 도입 당시 거래징수의 기본 골격을 수정·보완 없이 그대로 유지하여, 지금에 와서는 제도의 현실 적합성이 떨어지고 있다. 그러므로 전자금융의 출현과 시장 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한 실효성 있는 제도의 개선을 통해 부가가치세 세수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한다면, 결손 및 체납의 세수누락이 방지되고 납세협력비용 및 행정비용의 절감·공정거래를 통한 중소기업 보호 등 사회·경제적 효과도 매우 클 것으로 기대된다.

부가가치세는 간접세이기 때문에 납세자와 담세자가 다르며, 이론상 세금이 최종소비자에게 전가되어 소비자가 담세자가 되며, 사업자는 세금부담이 없는 단순한 납부의무자임에도 불구하고 2008년도 기준으로 체납액이 6조 1,131억원으로 체납발생총액 19조

3,560억원의 약 31.6%를 차지하고 있다. 더욱이 세수규모는 부가가치세, 법인세, 소득세, 상속·증여세 순임에도 불구하고, 2005~2008년 사이 부가가치세는 세수실적 대비 13~15%의 체납비율을 나타내 소득세 9.4%, 법인세 3.8%와 비교할 때 높은 수준이다.

한편 부가가치세 징수실적은 2001년 25조 8,347억원에서 2008년 43조 8,198억원으로 약 69.6% 이상 증가한 반면, 운영비용은 2조 7,754억원에서 65.3% 증가한 4조 5,880억원을 나타내 상대적으로 효율적인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하지만 2008년도 부가가치세 총징수금액 43조 8,198억원 중 내국부가가치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약 12%인 5조 2,308억원에 불과하며, 수입부가가치세가 88%인 38조 5,890억원을 차지하고 있다. 부가가치세의 징수실적은 1995년 14조 6,369억원에서 2009년 43조 8,198억원으로 약 200% 이상 증가하였으나, 국내분 점유비는 오히려 약 8.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입부가가치세는 납부 불이행시 세관을 통관할 수 없기 때문에 부가가치세의 운영비용은 대부분 내국 부가가치세에서 발생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결손 및 체납비율 측면에서는 개선의 여지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사회적 비용 측면에서 볼 때, 현행 부가가치세제는 매입자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으로 재화나 용역의 공급자가 매입자에게 전가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대기업의 하청기업에 대한 단가인하 압력 등으로 오히려 부가가치세의 역전가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비정상적 세금계산서 수수, 신용카드 깡을 통한 탈세, 덤핑거래, 거래자 간 담합을 통한 부가가치세 탈루가 만연하고 있다.

이러한 부가가치세제의 문제점은 우리나라의 시장 환경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에 기인한다. 시장에서의 역학관계가 수요자 우위로 변화됨에 따라 부가가치세 거래징수를 담당하는 공급자가 거래관계에서 “을”의 위치로 변경되었으며, 무한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단가인하 등이 이루어짐에 따라 중소기업공급사업자의 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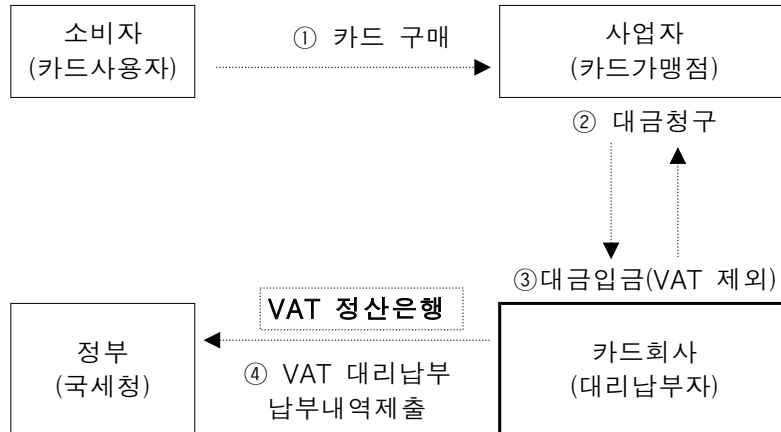
업환경이 크게 악화되었고, 이에 따라 부가가치세 거래징수부담도 증가하였다. 대체로 중소기업은 자본축적 기간이 짧거나 자본축적 기회를 갖기 어려운데, 이런 상황에서 비용부담이 집중 전가되면서 체납 및 결손액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재화 등을 공급하는 모든 사업자에게 비차별적으로 부가가치세 거래징수권리·의무를 부여함으로써 영세 사업자에게서 조세채권의 연체나 대손이 집중 발생하고 있으며, 이들에게 납세협력비용이 역진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더욱이 정부는 자영업자의 과표양성화를 위하여 소비자에게 소득공제제도와 복권제도 등 카드거래 활성화 정책을 도입하였으나, 소비자 결제 환경 변화에 부가가치세제가 적절히 대응하지 못한 결과 카드거래에 의하여 수입금액이 노출됨에도 실질 세수로 연결되지 못하고 있으며, '신용카드 깡' 등 불법사례 역시 기승을 부리고 있다.

즉, 현재의 전단계세액공제방식에 의한 부가가치세는 세금계산서를 통하여 근거과세를 실현하고 있으나, 면제사업자와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의 작성 및 발행의무가 면제되므로 거래내역을 파악할 수 없어 근거과세원칙을 저해하고 소규모사업자들의 매출 과소신고와 부가가치세·소득세 탈루로 인하여 근로소득자들과의 과세형평성을 저해하고 있다.

이러한 거래징수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매입자 납부제도」의 도입을 고려하여야 한다. 첫째, 「사업자와 최종소비자(B2C) 거래」에서 「매입자 납부제도」는 신용카드 사업자를 부가가치세 거래징수 및 대리납부자로 지정함으로써 사업자와 최종소비자 거래시 부가가치세 징세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제도로 적용될 수 있다.

[그림 1] 「사업자와 사업자(B2B) 거래」에 대한 「매입자 납부제도」 기본 개념도



- ① 소비자(카드사용자)는 신용카드로 대금을 지급하고 물품을 구매
- ② 신용카드가맹점은 신용카드회사에 대금을 청구
- ③ 신용카드회사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을 카드가맹점에 대금으로 지급
- ④ 신용카드회사는 VAT 정산은행을 통하여 정부(국세청)에 매출세액을 대리납부하고 납부내역을 제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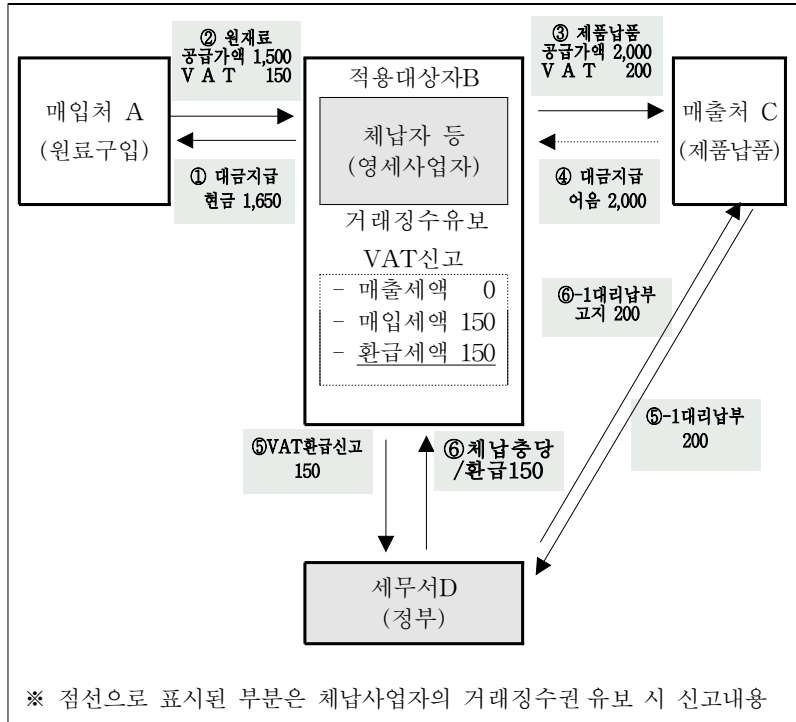
과거에는 결제 노출단계가 「소비자→사업자→국가」의 순이었으나 1999년도 정부의 신용카드 활성화 정책의 결과로 신용카드가 보편적인 결제수단으로 자리매김함에 따라, 현재는 「소비자→전자금융업자(신용카드회사)→사업자→국가」의 순으로 변화하여 신용카드를 통한 수입금액이 노출되고 있다. 따라서, 근로소득의 원천징수처럼 신용카드사를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의무자로 지정하여 우리나라 세수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부가가치세 세수의 안정적 확보를 달성할 수 있다.

둘째, 「사업자와 사업자(B2B) 거래」에 대한 「매입자 납부제도」

적용에 있어서는 부가가치세의 거래징수제도를 납세자의 세무이행 능력과 납세자 간 역학관계를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 대기업처럼 시장에서 우월적인 위치에 있는 사업체 또는 세무이행능력이 탁월한 자에게 부가가치세 거래징수대리의무를 부여하여 영세사업자를 보호하고, 국세체납 및 결손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방법을 통하여 부가가치세 탈루가 경쟁력의 수단이 됨으로써 납세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는 건전한 정상사업자가 퇴출되는 현실을 타개하고, 공정거래를 유도해야 한다. 고의 체납자 등 불성실 사업자, 부가가치세 전가가 곤란한 한계기업, 생계형 영세사업자 등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거래징수 특례제도의 도입도 고려되어야 한다.

우리나라에서 볼 수 있는 부가가치세제의 사회적 문제는 동 법을 도입한 주요국에서도 찾아볼 수 있으며 이들은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제도」를 기초로 하는 효율적인 제도 도입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EU의 경우 ‘행방불명 무역업자 사기(missing trader fraud)’에 대한 근절대책 중 하나로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매입자 납부제도」의 적용이 가능하며, 일부 EU국가에서는 탈세방지 목적으로 ‘국내에 사업장이 있는 거주자 또는 국내법인’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에도 특별히 「매입자 납부제도」로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고 있는바, 이를 「국내매입자 납부제도(domestic reverse charge)」라고 한다. 현재 27개 EU 회원국가 중 11개 국가에서 「국내매입자 납부제도」를 운영중이다. 영국의 경우 2007년 6월 1일부터 “£5,000 이상의 휴대폰 및 컴퓨터 칩 공급”에 대해 매입자 납부방식으로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고 있다. 뉴질랜드의 경우에는 EU와는 달리 “부가가치세의 중립성(GST neutrality) 강화” 측면에서 「국내매입자 납부제도」 도입이 논의되고 있다.

[그림 2] 「사업자와 사업자(B2B) 거래」에 대한 「매입자 납부제도」 기본 개념도



- ① 부가가치세 거래징수 특례적용대상자인 사업자 B가 매입처 A로부터 공급대가 1,650원(VAT 150원)의 원재료 매입
- ② 사업자 B는 구입대가로 1,650원을 현금 지급(결제)
- ③ 사업자 B가 매출처 C에 공급대가 2,200원(VAT 200원)의 제품을 매출
- ④ 매출처 C는 제품납품 대가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공급가액 2,000원을 사업자 B에게 어음으로 지급
- ⑤ 사업자 B는 매입세액 150원을 세무서 D에 환급신고
- ⑤-1. 매출처 C는 사업자 B의 매출세액 200원을 세무서 D에 대리하여 납부

⑥ 세무서 D는 사업자 B의 매입세액 150원을 체납세액에 충당하거나 환급

⑥-1. 세무서 D는 매출처 C에 200원의 대리납부를 고지

우리나라에 『매입자 납부제도』가 도입된다면 먼저 세수수입의 증대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현재 세금신고는 그 의무를 이행하는데 있어서 무자력을 이유로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사업자가 많아 신고자납비율이 저조하다. 체납이 발생한 시점에 고의적이든 그러하지 아니하든 체납자가 대부분 무자력 상태에 빠져 있어 국세청의 행정집행에도 불구하고 징수비율이 저조하고, 대부분 폐업과 함께 결손처리되어 국고손실이 발생하고 있다. 하지만 거래자 납부제도가 실시되면 이들 사업자는 매출세액 상당액이 거래 상대방에 의하여 자진납부되어 신고한 세금이 대부분 납부될 것으로 기대된다. 1인당 자납세수 증가효과는 연간 1천 400만원으로 연간 자납세수 증가효과는 무려 2조 6,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과세당국이 그동안 무재산으로 결손처리하여 왔으나 거래징수제도의 개선으로 결손 방지 및 미정리 체납액 정리효과가 기대되며, 이는 2005년 기준으로 약 1조 8,000억원의 세수수입증대 효과를 가져온다. 적용대상자에 대해서는 기왕의 체납액이 모두 현금징수되는 효과가 발생하는 것은 물론 더 이상 체납이 발생하지 않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으며, 신용카드 단말기 등록제를 통해 음성탈루 부가가치세를 추가적으로 징수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을 것이다. 『매입자 납부제도』는 영세업자의 단가인하 부담으로 인해 발생하는 세금 탈루와 이를 경쟁력으로 삼는 악성사업자의 시장진입을 막고, 부가가치세의 역전가 현상을 차단시켜 건전하게 세금을 납부하고 있는 사업자를 보호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자료상이나 금지업자 등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령하는 자는 매입세액을 본인이 직접 납부해야 하므로, 근본적으로 자료상이나

폭탄업체들을 이용한 세금탈루 역시 불가능하게 된다.

이와 더불어, 「매입자 납부제도」는 금융기관에도 새로운 기회창출 효과를 가져다 줄 것으로 기대된다. 신용카드 발급사를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자로 지정하면 카드 발급사는 현재 약 150만개 가맹점의 부가가치세 거래금액의 10%를 최소 1달 이상 운용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다. 이 외에도 현행 사후적 조세채권관리제도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단말기 부가기능을 활용하여 납세협력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목 차

I. 서론	21
II. 부가가치세 거래징수 현황	23
1. 부가가치세의 개념과 특성	23
가. 부가가치세의 개념	23
나. 우리나라 부가가치세의 특성	26
2. 부가가치세 거래징수의 특징	28
가. 거래징수의무자	30
나. 거래징수의 대상	31
다. 세율의 적용	31
라. 거래징수의 상대방	31
마. 거래징수 시기	32
3. 부가가치세법 주요 개정내용	32
III. 부가가치세제의 문제점 및 발생원인	38
1. 현행 부가가치세제의 문제점	38
가. 국세채납 및 결손액 증가	38
나. 제도운영비용 과다 발생	48
다. 부가가치세 부담의 역전가현상 발생	56
라. 부가가치세의 탈루	58
2. 문제점의 발생원인	66
가. 사업자의 영세화	66
나. 시장에서의 역학관계 변화	68
다. 사업자의 세무이행능력의 차이를 고려하지 않은 조세채권관리	69

라. 소비자 결제환경 변화의 미수용(직접결제 → 간접결제) ..	73
마. 면세범위의 확대와 간이과세제도 .....	80
<b>IV.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제도」 국내외 사례 .....</b>	<b>83</b>
1. EU 지역 .....	83
가. 개 요 .....	83
나. EU 내의 논의동향 .....	85
다. EU 내의 「매입자 납부제도」 확대적용 사례 .....	93
2. 영국의 사례 .....	100
가. 「국내매입자 납부제도」 도입배경 .....	100
나. 회전목마 사기의 진화과정 및 이에 대한 영국 정부의 대응 ..	102
다. 구체적인 「매입자 납부제도」 운영방식 .....	106
라. 「국내매입자 납부제도」 도입으로 인한 원가 및 효익 분석 ·	115
마. 기타의 회전목마 사기 대응전략 .....	118
3. 뉴질랜드 사례 .....	123
가. 「국내매입자 납부제도」 도입배경 및 동향 .....	123
나. 「국내매입자 납부제도」 개요(정부案) .....	125
4. 국내 유사 운영사례 .....	127
가. 금 매입자 납부특례제도 .....	127
나. 주류결제 시스템 .....	136
<b>V. 거래징수제도 개선방안 .....</b>	<b>138</b>
1. 「사업자와 최종소비자간(B2C) 거래」 .....	147
가. 개선방안 .....	149
나. 관계법령 개정 검토(안) .....	159
2. 「사업자와 사업자(B2B) 거래」 .....	160
가. 1단계 개선방안 .....	162
나. 관계법령 개정 검토(안) .....	171
다. 2단계 발전방안 .....	172

VI. 거래징수 납부특례제도 전산시스템 구축방안	175
1. 「사업자와 최종소비자간(B2C) 거래」	175
가. 시스템 설계(안)	175
나. 사업자의 이행부담 완화	175
다. 신용카드 인프라 보완 필요	176
2. 「사업자와 사업자(B2B) 거래」	177
가. 시스템 설계(안)	177
나. 사업자의 이행부담 완화	178
VII. 기대효과	181
1. 세수증대	181
가. 신고자진납부비율의 향상	181
나. 결손 및 체납발생 방지	182
다. 부가가치세 추가징수 효과	183
2. 중소기업 보호와 공정거래 유도	184
3. 자료상 근절 등 세금계산서 수수 정상화	184
4. 현행 사후적 조세채권관리제도의 문제점 해소	185
5. 새로운 금융기회의 창출	185
6. 단말기 부가기능을 활용한 납세협력비용 절감	185
가. 일용근로자 임금지급보고의 편의성 제고	185
나. 사업용계좌제도의 편리한 이행	186
다. 복식부기의무자의 장부기장의 자동화	187
참고문헌	188
〈부록 1〉 관련법령	191
〈부록 2〉 부가가치세 거래징수 및 납부특례 운용(안)	204

## 표 목 차

〈표 Ⅲ-1〉 연도별 체납발생액 현황 .....	38
〈표 Ⅲ-2〉 세수 대비 국세 체납비율 .....	40
〈표 Ⅲ-3〉 연도별 체납액 정리실적 .....	42
〈표 Ⅲ-4〉 주요 세목별 체납발생총액 현황 .....	43
〈표 Ⅲ-5〉 연도별 부가가치세 세수실적 대비 체납비율 현황 .....	44
〈표 Ⅲ-6〉 세목별 체납액 정리실적(2008년 기준) .....	45
〈표 Ⅲ-7〉 체납자료 신용정보기관 제공 현황 .....	48
〈표 Ⅲ-8〉 운영비용 .....	51
〈표 Ⅲ-9〉 국세 미징수금액 비율 .....	52
〈표 Ⅲ-10〉 부가가치세 운영비용 .....	53
〈표 Ⅲ-11〉 부가가치세 미징수액 비율 .....	55
〈표 Ⅲ-12〉 부가가치세의 역전가로 인한 체납 및 걸손 발생사례 .....	57
〈표 Ⅲ-13〉 개인사업자의 주요업종 체납상황(2008) .....	57
〈표 Ⅲ-14〉 2010년 상반기 신용카드 불법할인(깡) 회원제재 .....	62
〈표 Ⅲ-15〉 신용카드 불법할인(깡) 회원 제재 현황 .....	62
〈표 Ⅲ-16〉 중소기업의 영세화 현황 .....	67
〈표 Ⅲ-17〉 할인점 시장규모 증가추이 .....	68
〈표 Ⅲ-18〉 신규 및 폐업사업자 현황(2008년) .....	70
〈표 Ⅲ-19〉 개인사업자의 신규 및 폐업 현황(2008년) .....	71
〈표 Ⅲ-20〉 개인사업자 사업존속 연수 .....	71
〈표 Ⅲ-21〉 폐업자(개인사업자) 사업존속 기간 .....	72
〈표 Ⅲ-22〉 신용카드매출세액공제 .....	73

〈표 III-23〉 연도별 신용카드 이용도 현황 .....	75
〈표 III-24〉 신용카드의 발급현황 및 가맹점 수 .....	77
〈표 III-25〉 연도별 신용카드 이용내역 .....	78
〈표 III-26〉 카드기능별 발급현황 .....	79
〈표 III-27〉 신용카드 가맹의무자인 일반과세사업자(개인) 체납상황(2008) .....	80
〈표 III-28〉 부가가치세 신고인원 및 과세표준 현황(2008) .....	81
〈표 IV-1〉 일반적인 부가가치세 징수체제와 「매입자 납부제도」 비교 .....	88
〈표 IV-2〉 EU의 「국내매입자 납부제도」 도입현황 .....	95
〈표 IV-3〉 행방불명 사기로 인한 세수손실 추정금액 .....	101
〈표 IV-4〉 「매입자 납부제도」 적용대상 품목(영국) .....	107
〈표 IV-5〉 「국내매입자 납부제도」 적용으로 영향을 받게 될 사업자 수(추정) .....	116
〈표 IV-6〉 「국내매입자 납부제도」 도입으로 사업자가 부담하는 행정비용 및 납세협력비용(추정) .....	117
〈표 IV-7〉 「국내매입자 납부제도」 도입으로 인한 국고증가 효과 (추산) .....	117
〈표 IV-8〉 회전목마 사기: 기소, 유죄판결, 징역형과 재산몰수 .....	122
〈표 IV-9〉 금 매입자 납부특례제도 정산사례 .....	133
〈표 V-1〉 징수제도의 특성 .....	139
〈표 V-2〉 거래주체별 전자상거래 규모 .....	142
〈표 V-3〉 부문별 거래내역 .....	144
〈표 V-4〉 연도별 산업별 기업간 전자상거래(B2B) .....	145
〈표 V-5〉 소매판매액에서 사이버쇼핑(B2C 등)의 거래비중 비교 .....	146
〈표 V-6〉 지불결제수단 및 배송수단별 구성비 동향 .....	147

〈표 V-7〉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실적 .....	148
〈표 V-8〉 신용카드 사업자현황(2010년 6월말 기준) .....	148
〈표 V-9〉 신용카드 가맹 권장사업자 현황(2008. 12. 31일 기준) ·	157
〈표 V-10〉 부가가치세 과세대상별 체납현황 비교 (2006년 12월 체납자 기준) .....	161
〈표 V-11〉 부가가치세 자진납부 미이행자의 체납비율(2008) ·	161
〈표 VI-1〉 전단계세액공제방식하에서의 VAT 금융효과 .....	178
〈표 VI-2〉 신용카드 수수료 부담액 중 부가가치세 거래징수비 해당분 .....	179
〈표 VII-1〉 연간 세수증대효과 추정치 .....	182
〈표 VII-2〉 대리(특례)납부적용 비율 .....	182
〈표 VII-3〉 결손방지 및 미정리 체납액 정리효과(2005년 기준) ·	183
〈표 VII-4〉 총체납액 중 적용대상자 비율 .....	183

## 그림 목차

[그림 II-1] 부가가치의 발생 .....	23
[그림 III-1] 연도별 체납발생액 추이 .....	39
[그림 III-2] 연도별 세수실적 및 체납발생액 .....	41
[그림 III-3] 주요 세목별 국세체납추이 .....	43
[그림 III-4] 세목별 세수실적 대비 체납액 비율 .....	44
[그림 III-5] 세목별 체납발생액 구성비(2008년 기준) .....	46
[그림 III-6] 세목별 미정리 체납액 구성비(2008년 기준) .....	47
[그림 III-7] 세제운영의 사회적 비용 .....	49
[그림 III-8] 연도별 국세실적 및 운영비용 .....	51
[그림 III-9] 연도별 부가가치세 세수실적 및 운영비용 .....	54
[그림 III-10] 금지금 국제시장 변칙거래 구조도(1000원 기준 거래시) · 61	
[그림 III-11] 규모별 사업체수, 종업원수, 부가가치 현황 .....	67
[그림 III-12] 할인점 시장규모 증가추이 .....	69
[그림 III-13] 과세사업자 유형별 신규 및 폐업 비중 .....	70
[그림 III-14] 사업존속기간 현황 .....	72
[그림 III-15] 신용카드 이용금액 추이 .....	75
[그림 III-16] 연도별 신용카드 이용도 추이 .....	76
[그림 III-17] 신용카드 발급현황 및 가맹점 수 추이 .....	77
[그림 III-18] 신용카드 이용내역 현황 비교 .....	79
[그림 III-19] 사업자별 부가가치세 신고인원 및 과세표준 비중(2008) .....	82

[그림 IV-1] 행방불명 무역업자 사기 또는 회전목마 사기의 작동방법 .....	84
[그림 IV-2] 행방불명 무역업자 사기의 가장 간단한 형태(사례) ..	104
[그림 IV-3] 제3국(EU 외의 국가)을 통한 회전목마 사기 .....	105
[그림 IV-4] 금거래 결제업무 흐름도 .....	128
[그림 IV-5] 단말기 형태 및 기능 .....	131
[그림 IV-6] 금 매입자 납부특례제도 정산사례 .....	132
[그림 IV-7] 주류결제 시스템 운영 흐름도 .....	137
[그림 V-1] 전자상거래액 및 규모(전년도 대비) .....	142
[그림 V-2] 연도별 거래주체별 전자상거래 규모 추이 .....	143
[그림 V-3] 산업별 기업간 전자상거래(B2B) 비중(2009년도) ·	145
[그림 V-4] 신용카드 결제분 거래징수 개념도 .....	149
[그림 V-5] 주사업장총괄납부 개념도 .....	153
[그림 V-6] VAT 신용카드 결제분 거래징수 구현도 .....	158
[그림 V-7] 기본 개념도 .....	162
[그림 V-8] 「매입자 납부제도」 .....	164
[그림 V-9] 전자적 거래징수 개념도(통신/금융/IT/조세 통합) ···	173

## I. 서론

1977년 부가가치세가 도입된 지 올해로 33년이 경과되었다. 도입시점과 비교하여 볼 때 경제규모, 공급자와 수요자 간 역학관계 등 부가가치세 제도의 환경은 크게 변화하였다. 그동안 부가가치세 제도와 관련된 연구나 제도 개선이 과세범위, 과세표준, 세율 등과 관련된 부분에 집중되면서 상대적으로 부가가치세 제도 운용 비용 절감, 징수구조의 효율화 등에 관한 연구는 다소 미흡하였다.

부가가치세는 세수 비중이 가장 높은 중요한 세목이지만 IMF 이후 지속되고 있는 체납 및 결손액의 증가, 제도 운영 비용의 과다 발생, 부가가치세 탈루 등으로 인하여 국세행정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부가가치세는 간접세이기 때문에 납세자와 담세자가 다르며 이론상 세금이 최종소비자에게 전가되어 소비자가 담세자가 된다. 사업자는 세금부담이 없는 단순한 납부의무자임에도 불구하고 세수실적 대비 13~15%의 체납비율을 보이고 있는데, 2008년도에는 14.0%로 나타나 소득세 9.4%, 법인세 3.8%와 비교할 때 가장 높은 수준이다.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선형·기간세제로서의 부가가치세의 역할이 크게 훼손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이런 현실을 계속 방치한다면 성실한 납세의무 이행 풍토가 무너지고 정부와 국세행정에 대한 신뢰성에 심각한 악영향을 줄 것이다. 부가가치세 제도를 둘러싸고 있는 사회·경제적 환경변화로 발생되고 있는 이러한 현상은 국세청 행정력만으로는 해결되기 어려운 사안이다. 부가가치세 제도는 국가의 기간세제이며 다른 세목의 선형세제임을 감안할 때 부가가치세제 제도의 개선은 다른 세목에 우선하여 추진되어야 하며, 그 파급효과가 여타 세제에 미치는 영향도 매우 클 것이다.

새로운 전자금융의 출현 등 시장 환경의 변화를 감안하여 부가가치

세를 현실적으로 개선하여 명실상부하게 기간세목으로 자리매김하도록 하고 시장에서의 역학관계의 변화(갑과 을의 위치 변화)와 거래결제시스템의 변화에 주목하여 부가가치세 거래징수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실증하고 나아가 실효성 있는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

「사업자와 최종소비자(B2C) 거래」간 거래에 있어서는 사업자가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사업자와 사업자(B2B) 거래」간 거래에 있어서는 원천징수제도와 같이 납세편의, 납부의무의 이행 가능성을 고려하여 대리납세자를 유연하게 정할 필요가 있다.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제도를 도입함으로써 기존의 부가가치세 거래징수제도의 혼란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있을 수 있으나, 「매입자 납부제도」는 현행 「전단계세액공제법」으로 발생하는 문제점을 보완·완성하기 위하여 공급자의 거래징수를 부인하는 것이 아닌 거래징수의 대리제도이며, 적용대상도 세무이행능력을 감안하여 일부 사업자에 한정하지는 것이다. 「법인세법」 제73조에서는 금융기관 등의 원천징수 대리 금융기관과 법인에게 별도의 대리 및 위임의 관계가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라도 금융기관이나 법인의 월등한 원천징수의무 이행능력, 실무상의 편의를 감안하여 금융기관이나 법인을 원천징수의무자로 의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부가가치세는 간접세로서 납세자가 본인의 세금이 아닌 담세자의 세금을 징수하여 납부하는 제도이며, 따라서 납세편의와 납세자가 담세자로부터 징수된 세금을 탈루하지 않고 그대로 국고로 납부하는 납부의무의 이행이 가장 중요하다. 소득세 등 직접세에 적용되는 원천징수제도도 이러한 점을 반영하여 납세자를 원칙적으로 담세자의 상대방으로 하되 개인과 법인 또는 금융기관 간의 거래 등에 있어서는 예외적으로 법인이나 금융기관이 대리하여 그 의무를 이행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현행 부가가치세의 징수와 관련한 비효율성을 개선함으로써 부가가치세 세수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여 결손 및 체납의 세수누락을 방지하고 납세협력비용 및 행정비용의 절감, 공정거래를 통한 중소기업 보호 등 사회 경제적 효과도 매우 클 것으로 기대된다.

## II. 부가가치세 거래징수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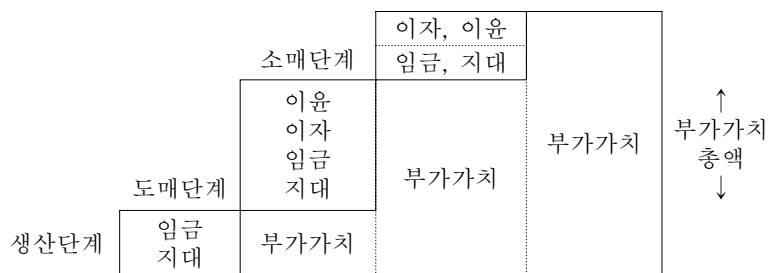
### 1. 부가가치세의 개념과 특성

#### 가. 부가가치세의 개념<sup>1)</sup>

부가가치세란 재화나 용역이 생산·제공 또는 유통되는 모든 단계에서 기업이 부가적으로 창출하는 가치에 대해 과세되는 조세이다. 부가가치는 사업자가 생산·유통과정을 통하여 창출한 가치의 증가분을 의미한다. 부가가치세는 각 거래단계에서 산출한 부가가치에 대해 과세하므로, 각 거래단계에서 발생한 매출액 전체에 대해 과세하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부가가치의 주된 구성요소는 한 기업이 지급하는 급료, 임대료, 이자와 그 기업이 취득한 이윤 등이라 할 수 있다. 실제 부가가치액을 계산하기 위해 이러한 구성요소들을 계산하여 합산할 필요는 없고, 기업의 총수입에서 자본설비, 토지, 건물 등과 다른 기업으로부터 매입한 재료나 생산재의 금액을 뺀 금액으로 부가가치를 구할 수 있다.

[그림 II-1] 부가가치의 발생



자료: 김정길, 『부가가치세법의 이론과 실제』, p. 45

1) 김정길(2007), p. 45

이론적으로 부가가치세의 과세기반을 파악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투자재의 포함 여부에 따라 총생산형(GNP Type), 소득형(Income Type), 소비형(Consumption Type)의 세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 중에서 EU형 부가가치세제로도 불리는 소비형 부가가치세제는 많은 국가에서 광범위하게 채택하고 있다.

### 1) 총생산형(Gross National Product Type) 부가가치세

총생산형(Gross National Product Type) 부가가치세는 총매출액에서 다른 기업으로부터 구입한 원료나 반제품 등의 총가액만 공제하고, 당해 기간중의 내구자본재의 구입액과 과거에 구입한 자본재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공제하지 않는 유형이다. 결과적으로 소비와 투자를 포함한 국민총생산(GNP)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이다. 다른 유형에 비하여 총생산형(GNP형)의 부가가치 범위가 가장 넓으며, 자본재에 대해 과세하므로 투자를 억제하는 효과를 가져 온다. 또한 자본재에 부과한 부가가치세액이 자본재를 투하하여 생산한 소비재 가격에 반영되기 때문에 세금에 세금을 부과하는 누적효과를 발생시킨다.

$$\begin{aligned} \text{총생산형 부가가치} &= \text{총매출액} - \text{중간재 구입액} = C + I \\ &= W + P + D \end{aligned}$$

※ C=소비, I=투자, W=임금, P=이윤, D=감가상각비,  
NI=국민순생산

### 2) 소득형(Income Type) 부가가치세

소득형(Income Type) 부가가치세는 원료나 반제품 등 중간재 구입 가격과 자본재의 감가상각비를 공제하여 산출하는 유형이다. 즉, 거래 단계에서 순증가가치를 과세표준으로 하는데, 총생산형보다 과세범위

## II. 부가가치세 거래징수 현황 25

가 감가상각비만큼 적다. 그러나 감가상각비의 계산이 과세행정상 어려워지며, 총생산형과 마찬가지로 자본재에 대해 과세하므로 투자를 억제하는 약점이 있다.

$$\begin{aligned} \text{소득형 부가가치} &= \text{총매출액} - \text{중간재 구입액} - \text{감가상각비} \\ &= NI = C + I - D = W + P \end{aligned}$$

### 3) 소비형(Consumption Type) 부가가치세

소비형(Consumption Type) 부가가치세는 중간재 및 자본재 구입액을 공제하는 유형인데, 이 유형의 부가가치는 총소비액과 일치한다. 이 방법은 간접공제방법(Indirect Subtraction Method) 또는 전단계세액공제방법(Tax Credit Method)으로 각 거래단계에서 매출액 전체에 세율을 적용하여 매출세액을 계산하고 매입한 총액에 대해서도 세율을 적용하여 매입세액을 계산한 후 그 차액으로 납부세액을 계산하는 제도이다. 이 유형을 적용할 경우 부가가치의 범위가 가장 작으며, 이 제도하에서는 투자금액이 많아 매출세액보다 매입세액이 많으면 부가가치세 조세부담액이 부(-)로 나타나는 경우가 발생한다. 소비형(Consumption Type) 부가가치세는 중간재 및 자본재 구입액 전액을 공제하여 구입할 때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즉시 회수할 수 있기 때문에 투자를 촉진하는 효과가 있고 감가상각비를 계산할 필요가 없어 간편하다는 장점이 있다.

$$\begin{aligned} \text{소비형 부가가치} &= \text{총매출액} - \text{중간재 구입액} - \text{자본재 구입액} \\ &= C = W + P + D - I \end{aligned}$$

## 나. 우리나라 부가가치세의 특성<sup>2)</sup>

### 1) 소비형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 과세유형은 총생산형(Gross Product Type), 소득형(Income Type), 소비형(Consumption Type)으로 구분된다. 우리나라가 채택하고 있는 과세유형은 「소비형(Consumption Type)」으로서 EU 국가를 비롯하여 부가가치세를 도입하고 있는 대부분의 국가가 채택한 방식<sup>3)</sup>이다. 소비형 부가가치세에서는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계산에 있어서 자본재의 구입에 대한 부분을 일시에 전액 공제하는 방식을 취한다.

### 2) 전단계세액공제방법

부가가치세액의 계산에 있어서는 전단계세액공제방법을 적용한다. 부가가치세의 납부세액의 계산은 공제법과 가산법<sup>4)</sup>이 있으며, 우리나라가 채택하고 있는 방법은 공제법 중에서도 「전단계세액공제방법」으로서 매출세액에서 거래 전단계에서 징수당한 매입세액을 공제(Tax Exclusive)하는 방식이다. 전단계세액공제방법은 세액계산절차를 거치면서 부가가치에 대해서만 과세하는 결과가 간접적으로 유도되는 특징이 있다. 이 방법에 따르면 수출 등에 대한 국경 조정이 용이하고 전단계거래의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으면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게 됨

2) 황중대 외(2010), pp. 106~108

3) EU국가 중에서 「후단계세액공제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국가로는 프랑스가 있음.

4) 일정기간 동안 지급한 임금, 지대, 이자, 이윤 등 부가가치를 구성하는 기본요소를 합한 금액에 세율을 곱하여 부가가치를 산출하는 방법으로 생산요소의 합계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소득형 부가가치세에 적용될 수 있는 방법이다.

## II. 부가가치세 거래징수 현황 27

으로써 각 납세단위들을 유기적으로 연결하여 탈세를 억제하는 장점이 있다.

$$\text{부가가치세 납부세액} = \text{매출액} \times \text{세율} - \text{매입액} \times \text{세율}$$

### 3) 다단계거래세

부가가치세는 재화나 용역이 최종소비자에게 도달할 때까지 모든 거래단계마다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다단계거래세」이다. 따라서, 각 거래단계별로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한 금액, 즉 부가가치에 대하여 과세한다. 부가가치세 시행 이전의 간접세인 물품세나 영업세 등은 기업의 매출에 대하여 과세한다.

### 4) 간접세

부가가치세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징수하여 납부하도록 함으로써 법률상의 납세의무자와 실질적인 담세자가 다른 「간접세」이다. 따라서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는 사업자이지만, 담세자는 최종소비자가 된다.

### 5) 일반소비세

부가가치세는 모든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과세하며 소비자실을 담세력으로 간주하는 「일반소비세」이다. 개별소비세, 주세, 인지세 등은 특정 물품에 대하여 과세하는 개별소비세이다.

## 6) 소비지국과세원칙

부가가치세는 재화의 국가간 이동에 있어서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재화의 생산국에서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아니하고 재화의 소비지국에서 과세하는 「소비지국과세원칙」을 적용한다. 소비지국과세원칙에 따라 수출하는 경우 영(0)의 세율을 적용하여 우리나라에서는 과세하지 않는다. 수입하는 재화는 내국물품과 동일하게 과세 대상으로 규정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다.

## 7) 물세

부가가치세는 재화 또는 용역의 소비 사실에 대하여 과세하는 「물세」이다. 따라서 납세자의 부양가족 수, 기초생계비 등 개별적 특성 또는 인적사항이 전혀 고려되지 아니한다.

## 2. 부가가치세 거래징수의 특징<sup>5)</sup>

현행 부가가치세 제도는 매출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율(10%)을 적용하고 매입 당시 부담한 부가가치세액을 공제하여 납부세액을 계산하는 전단계세액공제법을 적용한다. 전단계세액공제법하에서 사업자(공급자)는 재화 등을 공급할 때 그 대가 이외에 부가가치세액을 거래상대방으로부터 거래징수하여야 하고, 거래상대방은 공급자가 거래징수하는 부가가치세액을 지급할 의무가 발생한다.

우리나라 부가가치세 거래징수제도는 전단계세액공제법에 의하여 「가격」이라는 운반도구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부담을 다음 단계로 이전시킨다. 이처럼 전단계세액공제법에 의한 부가가치세 ‘거래징수’를

5) 황종대 외(2010), pp. 1297~1302

## II. 부가가치세 거래징수 현황 29

통하여 부가가치세의 부담이 최종소비자에게 전가된다.

거래징수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 해당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 이외에 별도로 부가가치세를 공급받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것을 말한다. 즉, 사업자가 과세대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 그에 대한 대가 이외에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징수하는 경우 거래상대방이 사업자인 때에는 그 거래징수당한 부가가치세를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어 당해 사업자의 부담이 되지 아니하나 최종 소비자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므로 궁극적으로 최종소비자의 부담으로 남게 된다. 부가가치세는 다단계거래세의 형태를 취하여 모든 거래단계마다 과세하면서 전단계세액공제법으로 과세하기 때문에 거래단계마다 특별히 거래징수를 명문화할 필요가 있다.<sup>6)</sup>

현행 부가가치세법은 제15조<sup>7)</sup>에서 사업자에게 부가가치세를 징수할 수 있는 권리와 의무가 있음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사업자가 거래징수하지 않은 세액을 정부에 의해 강제징수당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15조(거래징수)의 위반에 대한 직접적인 효과가 아니고 동법 제2조<sup>8)</sup> 납세의무에 관한 규정에 근거를 둔 것이다. 그러나 전단

---

6) 개별소비세의 경우 동일한 소비세이지만 모든 거래단계마다 거래징수제도를 두지 않는 이유는 개별소비세가 제조·반출 또는 소매판매과세방법을 취하고 있는 단단계과세이기 때문에 제조·반출 또는 소매판매자와 국가간의 납세의무규정만을 두더라도, 그리고 이들의 제조반출가격 또는 소매판매가격에 개별소비세가 포함되도록 함으로써 그 전가가 이루어진다고 보아 그 후 거래단계에는 개별소비세를 과세하지 않는다.(최명근 『부가가치세법론』(2003) 참조)

7) 제15조 (거래징수)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에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

8) 제2조 (납세의무자) ① 1. 사업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따른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따른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 2. 재화를 수입하는 자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에는 개인·법인(국가·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과 법인격없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를 포

계세액공제법을 채택하고 있는 입법례에서 납세의무에 관한 규정, 거래징수에 관한 규정, 세금계산서에 관한 규정은 일반소비세의 본질을 조명하면서 유기적으로 일체성을 갖도록 해석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따라서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거래징수는 부가가치세법상 권리임과 동시에 의무라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sup>9)</sup> 거래징수의 불이행에 대하여는 가산세규정이 없지만, 거래징수하지 않은 부가가치세액상당은 그 세액산정의 기초금액인 거래가액이 과세표준에 산입됨으로써 그 사업자가 과세권자에 의해 강제징수당하게 된다. 신고에 관련된 가산세에 의하여 간접적으로 과태료적 성격의 제재도 받으므로 거래징수하지 아니한 세액의 추징은 가산세의 부담을 훨씬 초과하는 무거운 제재이다.

### 가. 거래징수의무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의 거래징수의무자가 된다. 이 거래징수의무는 과세관청의 지정이나 사업자의 신고 등 어떤 절차를 필요로 하지 않으며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과세대상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미등록사업자를 포함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당연히 거래징수의무가 있다.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가 없으므로 거래징수의무도 없다.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징수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거래징수에 관해 명시된 의무는 없으나 간이과세자의 과세표준인 공급대가에 부가가치세액이 포함되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한 것이 된다.

---

함한다.

9) 최명근, 『부가가치세법론』(2003) 참조

### 나. 거래징수의 대상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거래단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게 된다. 사업자가 과세대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의 거래징수의 대상이 된다. 다만,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1조 또는 기타의 법률에 의하여 영(0)의 세율이 적용되는 때에는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거래징수하여야 할 부가가치세는 영(0)이 되므로 실질적으로는 부가가치세로서 거래징수하여야 할 금액은 없게 되며, 또한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또는 기타 법률에 따라 면세가 되는 때에는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가 없으므로 부가가치세의 거래징수의무는 없다.

따라서 부가가치세의 거래징수의 대상이 되는 것은 결국 일반과세자에 의하여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영세율 적용이 되거나 면세대상이 되는 것을 제외한 것에 한하게 된다.

### 다. 세율의 적용

부가가치세의 기본세율은 10%이므로 거래징수에도 이 세율을 적용한다.

### 라. 거래징수의 상대방

거래징수의 상대방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이다. 재화·용역을 공급받는 자는 부가가치세법상의 납세의무자는 아니지만 전단계 세액공제법하에서 부가가치세 부담을 차례로 전가시켜 최종소비자의 부담이 되게 하기 위하여 재화 등을 공급받는 자에게 거래징수에 대한 지급의무를 지우고 있다.

### 마. 거래징수 시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야 하는 시기는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인 「부가가치세법」 제9조에 따른 거래시기이다. 따라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그 거래시기에 실질적으로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였는지의 여부에 불구하고 그 거래시기가 속하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확정신고기간의 매출세액으로 계상하여야 한다.

## 3. 부가가치세법 주요 개정내용

부가가치세법은 1976.12.22 법률 제2934호로 제정된 이후 현재까지 25차례 개정되었으나, 그 중 납세편의 제고와 행정비용 절감을 위한 세법개정은 매우 제한적이었다. 최근 개정된 사업자 단위과세제도, 조세특례제한법상 금지금 매입자 납부제도와 매입자 세금계산서 발부제도 등이 거래징수제도의 효율성과 과세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도입된 대표적 사례라고 할 수 있다.

#### ○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 1978.12.5 법률 제3100호]

연 4회 예정신고납부하게 되어 있는 것을 연 2회로 줄이고 과세특례자의 경우 예정신고제도를 폐지하여 신고의무의 번잡성을 덜어주며 기타 현행법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부가가치세법을 일부 개정하였다.

- 연 4회 예정신고납부하게 하던 것을 연 2회로 감축함
- 과세특례자의 신고납부제도를 고지납부제도로 전환함

#### ○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 1993.12.31 법률 제4663호]

금융실명제의 실시에 따른 과세자료의 양성화로 영세사업자의 납부

## II. 부가가치세 거래징수 현황 33

세액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것을 완화하고, 의제매입세액공제대상을 확대하여 업종간 과세형평을 도모하며, 외상매출채권의 대손시 거래징수하지 못한 부가가치세를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도록 하여 기업의 자금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부가가치세의 신고·납부제도를 개선하여 납세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개정하였다.

- 일반과세자의 예정신고납부제도를 중간신고납부제도로 전환하여 중간신고기간에 대한 납세는 직전 과세기간의 납부세액의 2분의 1만을 신고·납부하도록 하고, 당해 전 과세기간에 대한 납세시 정산함
- 부가가치세의 신고시에 제출하는 세금계산에 관한 신고서류를 간소화함

### ○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 1994.12.22 법률 제4808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일반과세사업자는 세금계산서 대신에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납세비용을 덜고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행위의 소지를 줄여 세금계산서 수수질서를 정상화하도록 하기 위하여 부가가치세법을 일부개정하였다.

### ○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 1995.12.29 법률 제5032호]

소규모사업자에 대한 납세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과세특례제도 등 소규모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과세제도를 개편하고, 납세편의의 제고 차원에서 각종 행정절차를 간소화하는 한편, 과세자료의 양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하여 부가가치세법을 일부개정하였다.

- 사업자등록증검열제도는 사업자의 세적을 철저히 관리하기 위하여 도입·운영되어 온 제도이나, 모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 등 최소한 연 2회 이상 신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세적관리

의 실익이 적고 납세자에게 불편을 주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이를 폐지함

- 연 매출액이 1억5천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에게 업종별 부가가치율에 따라 납부세액을 계산하는 간이과세제도를 도입하여 조세부담을 덜어줌과 동시에 납세편의를 도모함
-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과세특례자에게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생략하고 확정신고만 하도록 하여 신고횟수를 줄여줌으로써 납세편의를 제고함

○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 1998.12.28 법률 제5585호]

성실신고 및 납부를 유도하기 위하여 간이과세자·과세특례자 등 소규모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받는 경우의 세액공제를 확대하고, 불성실납부자에 대한 가산세율을 조정하는 등 관련제도를 정비하고,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세입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담배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도록 하는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개정하였다.

- 현재 직전과세기간의 공급가액이 7천500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에 대하여는 4월과 10월에 부가가치세액을 신고하여 납부하도록 하는 대신 세무서장이 직전과세기간에 납부한 세액의 2분의 1을 부가가치세액으로 결정하여 징수하고 있는바, 납세자의 납세편의를 증대하고 행정부담을 축소하기 위하여 이와 같은 예정고지의 대상을 직전과세기간의 공급가액이 1억5천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로 확대함(법 제18조제2항)

○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 1999.12.28 법률 제6049호]

자영업자에 대한 특별과세제도를 개편하여 현행의 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로 흡수하고 과세특례자는 간이과세의 방법에 의하여 과세함으로써 과세특례제도가 고소득 자영업자의 세부담 회피수단으로 이

## II. 부가가치세 거래징수 현황 35

용되는 사례를 방지하는 한편, 신용카드에 의한 매출분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인상하여 근거과세체계의 확립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개정하였다.

- 납세자의 납세편의를 높이고 징세기관의 행정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대상자의 범위를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이 1억5천만원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에서 모든 개인사업자로 확대함(법 제18조제2항)

###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일부개정 2000.12.29 대통령령 17041호]

인터넷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도록 하되, 자료를 정보처리장치나 디스켓 등으로 보관하도록 하고, 인터넷에 의한 세금계산서 교부업무를 전문업자에게 대행시킬 수 있도록 하여 사업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함이다.(영 제53조제4항 내지 제6항)

### ○ 부가가치세법[일부개정 2003.12.30 법률 제7007호]

2 이상의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사업자가 각 사업장의 물류흐름 및 재고를 관리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을 갖추는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추는 경우에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서 일괄하여 부가가치세의 신고·납부가 가능하도록 하였다.(법 제4조제3항)

### ○ 부가가치세법[일부개정 2006.12.30 법률 제8142호]

사업자의 납세편의를 위하여 사업자단위 과세제도를 도입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따른 매입세액 공제요건을 완화하고, 납부의무면제자인 간이과세자가 부가가치세를 납부한 경우 경정청구 여부와 관계없이 환급하여 주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개정하였다.

- 사업자단위 과세제도의 도입(법 제4조제3항 및 제5조제1항) : 2 이상의 사업장을 갖추고 전사적(전사적)자원관리시스템을 도입

한 사업자로서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얻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은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등록번호로 단일화하고, 세금계산서도 하나의 사업자등록번호로 교부할 수 있도록 함.

-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의한 매입세액 공제요건 완화(법 제32조의2제3항) :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공급받는 자의 사업자등록번호 등을 기재하는 확인제도를 폐지하는 한편, 신용카드 거래정보를 전자적자원관리시스템에 보관하고 있는 경우에도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인정함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 2006.12.30 법률 제8146호]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제도를 도입(법 제126조의4 신설)하였다.

- 공급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공급받는 자가 관할세무서장의 확인을 받아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제도를 도입함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 2007.12.31 법률 제8827호]

귀금속산업의 세원투명성 제고방안(법 제106조의3 및 법 제106조의4부터 제106조의6까지 신설)을 마련하였다.

- 금융기관이 금세공업자에게 판매하는 금지금을 면세 금지금 대상에 포함하고, 면세 금지금 제도를 2010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며, 매입자납부제도를 도입하여 매출자가 거래징수한 후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탈세하는 것을 방지하고, 고금에 대한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허용하여 고금거래의 양성화를 유도하며, 금지금 제련 및 금지금 수입시에는 그 제조반출 및 수입 신고 내역을 과세관청에 제출하도록 함

○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 2008.12.26 법률 제9268호]

부가가치세 주사업장 총괄납부를 확대(부가가치세법 제4조, 시행령

## II. 부가가치세 거래징수 현황 37

제7조·제5조의 2·제6조)하였다.

- 종전 국세청장 승인요건을 삭제함으로써 둘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는 누구나 신청만으로도 주사업장 총괄납부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확대함
-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주사업장 총괄납부제도를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 종전 국세청장 사전 승인요건을 폐지하여 누구나 신청만으로도 가능토록 하여 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납세편의를 제고하고자 함

### ○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 2010.01.01 법률 제9915호]

부가가치세 사업자단위관세제도를 전면 확대(부가가치세법 제4조 및 5조, 시행령 제7조·제11조의 2)하였다.

- 국제적 기준(대부분의 EU국가, 일본 등이 채택)에 맞추어 사업자의 부담 및 납세편의를 제고하고자 사업자단위로 등록한 모든 사업자에게 사업자단위과세를 허용하고, 적용요건을 폐지하여 모든 사업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함

### ○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 2010.01.01 법률 9915제호]

전자세금계산서 제도를 단계적으로 시행(부가가치세법 제161조·제21조 제1항, 시행령 제53조의 2)하고 있다.

- 전자세금계산서 교부를 의무화하고 전자세금계산서 교부명세를 국세청에 전송하도록 하며 전자세금계산서 교부를 활성화함으로써 사업자의 납세협력비용을 줄이고 사업자간 거래의 투명성을 제고시키기 위함
- 발급의무사업자에 개인을 포함하고 기존 사업자의 사업자등록 변경, 홍보 등 시행준비기간(1년)을 감안하여 단계적으로 시행함

### Ⅲ. 부가가치세제의 문제점 및 발생원인

#### 1. 현행 부가가치세제의 문제점

##### 가. 국세체납 및 결손액 증가

2002년도 발생 체납액은 11조 9,769억원이었지만, 2008년에는 15조 7,813억원 수준에 이르고 있어 국세의 체납발생액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체납발생규모는 2004년까지 증가하다가 그 이후 다소 감소하였으나 2006년부터 다시 증가하여 2008년 체납발생규모는 15조 7,813억원으로 최근 들어 가장 높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한편 전년도 미정리 체납액과 당해연도 체납발생액을 합한 체납발생총액은 2002년에 약 14조 8,544억원 수준이었으나 그 후 매년 증가하여 2008년에 이르러서는 2002년에 비해 30.3% 증가한 약 19조 3,560억원에 달한다.

〈표 Ⅲ-1〉 연도별 체납발생액 현황

(단위: 억원)

	당해연도 발생액 <sup>1)</sup>		체납발생총액 <sup>2)</sup>	
	건수	금액	건수	금액
2002년	-	119,769	-	148,544
2003년	-	131,123	-	159,974
2004년	-	157,059	-	186,230
2005년	2,563,192	153,230	3,870,553	192,954
2006년	2,505,786	143,293	3,835,426	187,191
2007년	2,505,435	146,481	3,787,087	187,051
2008년	2,720,281	157,813	3,921,036	193,560

주: 1) 당해연도 발생액은 2008년의 신규 체납액을 말함

2) 체납발생총액 = 전년도 미정리 체납액 + 당해연도 발생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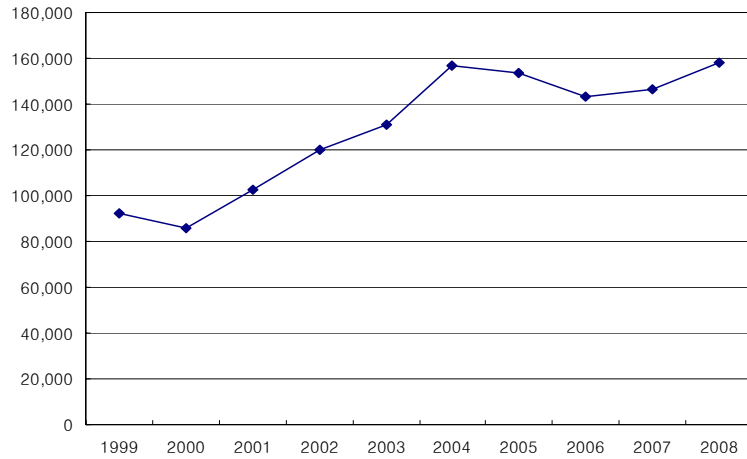
1. - 표시는 통계생산을 하지 않음을 나타냄.

자료: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

Ⅲ. 부가가치세제의 문제점 및 발생원인 39

[그림 Ⅲ-1] 연도별 체납발생액 추이

(단위: 억원)



자료: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

<표 Ⅲ-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세수 대비 국세체납비율은 2002년도 국세수입 94조 7,402억원의 약 12.64%에서 2008년도에는 국세수입 153조 7,679억원의 약 10.26% 수준으로 소폭 하락하였다. 국세수입은 2002년 94조 7,402억원에서 2008년 153조 7,679억원으로 62.3% 증가한 것에 비해, 체납발생액은 2002년 11조 9,769억원에서 2008년 15조 7,813억원으로 31.8% 증가하는 데 그친 것으로 나타났으나 그 금액은 15조 7,813억원으로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표 Ⅲ-2〉 세수 대비 국세 체납비율

(단위: 억원, %)

	세수 실적 <sup>1)</sup>				당해연도 발생액	체납 비율
	내국세	목적세 <sup>2)</sup>	종합부동산세	합계		
2002년	803,495	143,907	-	947,402	119,769	12.64
2003년	907,052	148,175	-	1,055,227	131,123	12.43
2004년	932,794	149,408	-	1,082,202	157,059	14.51
2005년	1,023,106	155,545	4,413	1,183,064	153,230	12.95
2006년	1,113,103	150,539	13,275	1,276,917	143,293	11.22
2007년	1,295,373	181,404	24,142	1,500,919	146,481	9.76
2008년	1,327,956	188,425	21,298	1,537,679	157,813	10.26

주: 1) 세수실적은 현년도분입.

2) 목적세는 교통·에너지·환경세, 방위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를 포함함.  
자료: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

한편 〈표 Ⅲ-2〉, 〈표 Ⅲ-3〉의 체납액 정리실적을 살펴보면 2008년도의 체납발생총액 19조 3,560억원 중에서 체납액 정리실적은 79.8%에 해당하는 15조 4,480억원이며, 이 중 현금정리는 7조 1,061억원으로 정리실적의 46%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어 결손정리, 기타의 순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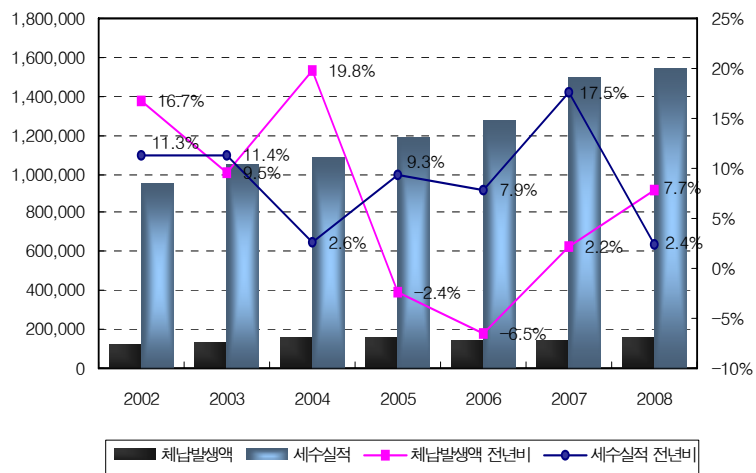
체납발생총액 중 현금정리비율은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2002년 30.6%에서 2008년에는 36.7%로 증가하였으나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2008년 결손정리금액은 6조 9,577억원으로 정리실적의 45.0%, 체납발생총액의 35.9%를 차지하고 있어 결손처분비율이 매우 높다. 결손정리비율이 높은 이유는 재산조사 과정에서 소재추적이나 은닉재산에 대한 조사가 그만큼 어렵기 때문에 행정력 부족에 기인하는 바가 크다고 볼 수 있다.<sup>10)</sup> 또한 2008년도의 미정리금액은 2002년 2조 8,851억원에서 35.5% 증가한 3조 9,080억원으로 이는 체납발생총액의 20.2%를 차지

III. 부가가치세제의 문제점 및 발생원인 41

하고 있으며, 2002년도의 19.4%에 비하여 0.8%포인트 소폭 확대되었다.

[그림 III-2] 연도별 세수실적 및 체납발생액

(단위: 억원, %)



자료: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

〈표 III-3〉 연도별 체납액 정리실적

(단위: 건, 억원)

	정리실적 <sup>1)</sup>								미정리		
	소계		현금정리		결손		기타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인원	건수	금액
2002	-	119,693 (100.1)	-	45,582 (38.1)	-	62,082 (51.9)	-	12,029 (10.1)	-	-	28,851
2003	-	130,803 (100.0)	-	45,192 (34.6)	-	70,909 (54.2)	-	14,702 (11.2)	-	-	29,171
2004	-	146,506 (100.0)	-	54,265 (37.0)	-	73,838 (50.4)	-	18,403 (12.6)	-	-	39,724
2005	2,540,913	149,056 (100.0)	1,757,356	62,686 (42.1)	709,155	73,964 (49.6)	74,402	12,406 (8.3)	682,270	1,329,640	43,898
2006	2,553,774	146,621 (100.0)	1,798,887	65,358 (44.6)	654,241	69,835 (47.6)	100,646	11,428 (7.8)	676,835	1,281,652	40,570
2007	2,586,332	151,304 (100.0)	1,815,498	69,301 (45.8)	650,644	68,710 (45.4)	120,190	13,293 (8.8)	675,303	1,200,755	35,747
2008	2,509,543	154,480 (100.0)	1,822,370	71,061 (46.0)	581,436	69,577 (45.0)	105,737	13,842 (9.0)	793,379	1,411,493	39,080

주: 1) 정리실적은 2008년의 체납액 정리실적을 말함.

1. - 표시는 통계생산을 하지 않음을 나타냄.

2. ( ) 안의 수치는 소계 대비(%)를 나타냄.

자료: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

〈표 III-4〉의 주요 세목별 체납발생총액 현황을 살펴보면, 체납발생 총액 규모는 부가가치세가 가장 높으며, 그 다음으로 소득세, 법인세, 상속·증여세의 순이다. 2001년 대비 2008년 세목별 체납발생총액 증가율은 법인세 104.7%, 부가가치세 76.0%, 소득세 23.9%, 상속·증여세 18.7%으로 나타났다. 부가가치세의 경우 2004년까지 가파르게 상승하다가 2005년 이후 다소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나 다른 세목에 비하여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Ⅲ. 부가가치세제의 문제점 및 발생원인 43

〈표 Ⅲ-4〉 주요 세목별 체납발생총액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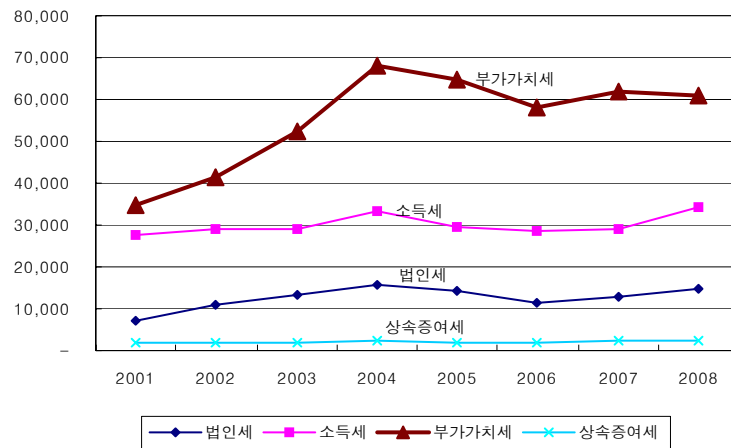
(단위: 억원)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	상속·증여세
2001	7,254	27,509	34,725	2,062
2002	10,891	29,177	41,197	1,869
2003	13,377	29,140	52,350	1,675
2004	15,643	33,202	68,176	2,413
2005	14,174	29,691	64,869	1,704
2006	11,340	28,545	58,158	1,842
2007	13,045	29,045	62,077	2,204
2008	14,850	34,073	61,131	2,447

자료: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

[그림 Ⅲ-3] 주요 세목별 국세체납추이

(단위: 억원)



자료: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

세수규모는 부가가치세, 법인세, 소득세, 상속·증여세의 순이며, 체납발생총액규모는 부가가치세, 소득세, 법인세, 상속·증여세의 순으로 나타났다. 체납발생총액에서 법인세보다 소득세가 높은 이유는 법인이 개인보다 비교적 체납징수가 용이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sup>11)</sup> <표 III-5>의 각 연도별 부가가치세 세수실적 대비 체납비율 현황을 살펴보면, 부가가치세는 세수실적 대비 13~15%의 체납비율을 나타내며, 2008년도에는 14.0%로 나타나 소득세 9.4%, 법인세 3.8%와 비교할 때 가장 높은 수준이다.

<표 III-5> 연도별 부가가치세 세수실적 대비 체납비율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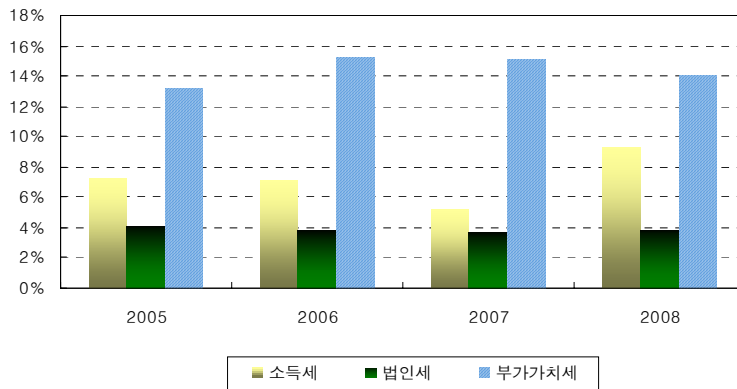
(단위: 억원, %)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세수실적	361,186	380,929	409,419	138,197
당해연도 체납발생액	47,767	58,158	62,077	61,131
체납비율	13.2	15.3	15.2	14.0

주: 세수실적은 현년도분임.  
 자료: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

[그림 III-4] 세목별 세수실적 대비 체납액 비율

(단위: %)



자료: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

11) 김진수·한상국(200), p. 8

Ⅲ. 부가가치세제의 문제점 및 발생원인 45

〈표 Ⅲ-6〉 세목별 체납액 정리실적(2008년 기준)

(단위: 억원, %)

세목	체납 발생총액	정리실적 <sup>1)</sup>				미정리
		계	현금정리	결손	기타	
합 계	193,560 (100)	154,480 (100)	71,061 (100)	69,577 (100)	13,842 (100.0)	39,080 (100)
종합소득세	34,073 (17.6)	26,973 (17.5)	6,461 (9.1)	18,508 (26.6)	2,004 (14.5)	7,100 (18.2)
법인세	14,850 (7.6)	12,531 (8.1)	3,552 (5.0)	8,602 (12.4)	377 (2.7)	2,319 (5.9)
상속·증여세	2,447 (1.3)	1,258 (0.8)	579 (0.8)	496 (0.7)	183 (1.3)	1,189 (3.0)
부가가치세	61,131 (31.6)	46,192 (29.9)	25,730 (36.2)	18,411 (26.5)	2,051 (14.8)	14,939 (38.2)
과년도 수입	57,646 (29.8)	49,136 (31.8)	25,518 (35.9)	17,494 (25.1)	6,124 (44.2)	8,510 (21.8)
기타	23,413 (12.1)	18,390 (11.9)	9,221 (13.0)	6,066 (8.7)	3,103 (22.4)	5,023 (12.9)

주: 1) 정리실적은 2008년의 체납액 정리실적을 말함.

1. ( ) 안의 수치는 합계 대비(%)를 나타냄.

자료: 『국세통계연보』(2009)

〈표 Ⅲ-6〉의 2008년도 세목별 체납 발생현황을 보면, 선행세제인 부가가치세의 체납이 1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후행세제인 종합소득세나 법인세 체납으로 이어지고 있다. 부가가치세의 체납액이 체납발생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31.6%이고 종합소득세, 법인세는 각각 17.6%, 7.6% 수준이다. 2008년의 부가가치세 체납발생총액 중 결손정리금액은 1조 8,411억원, 미정리체납액은 1조 4,939억원으로 각각 체납발생총액의 30.1%, 24.4%를 차지하고 있으며 현금정리금액은 42% 정도에 불과한 실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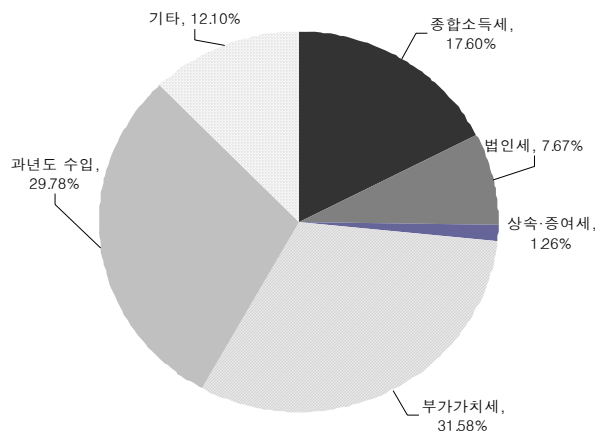
2008년도 총미정리금액 3조 9,080억원 중에서 주요 세목별 미정리

체납액 비중은 부가가치세가 1조 4,939억원으로 38.23%를 차지하고 있으며, 종합소득세 18.17%, 법인세 5.93%로 나타났다. 체납발생총액 대비 미정리금액비율은 부가가치세가 24.4%로 가장 높았으며 종합소득세, 법인세가 각각 20.8%, 15.6%의 순으로 나타났다.

부가가치세의 경우 간접세이기 때문에 납세자와 담세자가 다르며 이론상 세금이 최종소비자에게 전가되어 소비자가 담세자가 되며 사업자는 세금부담이 없는 단순한 납부의무자임에도 불구하고 2008년도 기준 부가가치세 체납액이 6조 1,131억원으로 체납발생총액(19조 3,560억원)의 약 31.6%를 차지하고 있어 선행·기간세제로서의 부가가치세의 역할이 크게 훼손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런 현실이 계속 방치된다면 성실한 납세의무 이행 풍토가 무너지고 정부와 국세행정에 대한 신뢰성에 심각한 악영향을 줄 것이다.

[그림 Ⅲ-5] 세목별 체납발생액 구성비(2008년 기준)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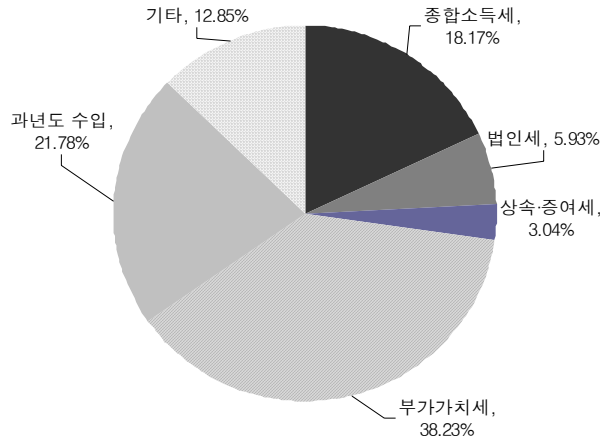


자료: 『국세통계연보』(2009)

### III. 부가가치세제의 문제점 및 발생원인 47

[그림 III-6] 세목별 미정리 체납액 구성비(2008년 기준)

(단위: %)



자료: 『국세통계연보』(2009)

한편 과세당국은 체납자에 대해서 부동산 및 채권압류, 관허사업의 제한, 신용정보기관에 체납사실 통보, 출국규제, 고발 등을 통하여 체납처분을 집행하고 있다. 국세청에서는 일정액 이상의 체납 또는 결손 처분자료를 신용정보기관에 제공하여 금융기관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체납자 및 결손처분자에 대하여 체납액의 납부를 촉구하여 성실납세 풍토를 조성하고 금융기관 등의 금융부실거래를 축소하여 조기에 신용사회 정착을 도모하고자 2000년 7월 1일부터 분기단위로 3차례에 걸쳐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를 전국은행연합회에 제공하고 있다. 2008년 한 해 동안 약 45만건의 체납자료를 국세청이 신용정보기관에 제공하였으며, 2001년~2008년까지 국세청이 체납자료를 신용정보기관에 제공한 경우는 약 292만건에 이른다.

이러한 과정에서 체납자와의 거래를 중단시켜 사업 자체를 불가능하게 하는 경우가 발생되며, 결국 체납사업자는 신용불량자나 조세범으로 전락하여 더 이상 경제활동을 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된다. 결

국 정부는 체납처분의 궁극적 목적인 세금징수도 못하면서 잠재적 세수기반을 상실하고, 신용불량자 양산 등 다른 차원의 사회적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는 것이다.

〈표 Ⅲ-7〉 체납자료 신용정보기관 제공 현황

(단위: 명)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계
361,806	376,013	411,791	432,399	440,492	449,371	445,061	2,916,933

자료: 『국세통계연보』(2009)

## 나. 제도 운영비용 과다 발생

### 1) 운영비용의 개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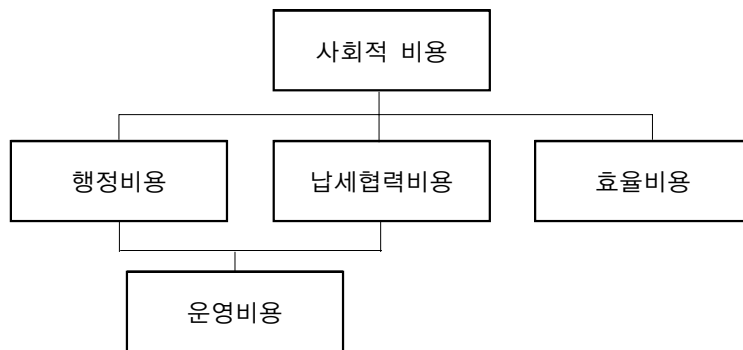
과세는 부족한 자원을 가정과 기업에서 정부로 이전하는 것으로 그 과정에서 일반적으로 사회적 비용(Social Cost)을 수반한다. 사회적 비용은 효율비용(Efficient Cost), 행정비용(Administration Cost), 납세협력비용(Tax Compliance Cost)으로 구분할 수 있다. 효율비용(Efficiency Cost)은 초과부담으로 불리는데, 세금을 부과함으로써 제품의 상대가격을 변화시켜 생산자와 소비자의 선택을 왜곡시키며 전체 생산물이 감소하게 됨으로써 발생하는 것이다. 행정비용(Administration Cost)은 조세법 입법 이전 단계에서 조세정책을 입안하고 기획하는 비용, 조세관련법의 입법과 관련된 비용, 기존 세법을 세무당국이 해석하고 시행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 세법의 해석이나 조세관련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소요되는 비용을 모두 포함한다. 이에 반해 납세협력비용(Tax Compliance Cost)은 납세액과 세금으로 인해 발생하는 자원배분의 왜곡에 따른 초과부담인 효율비용을 제외한 모든 민간부문의 비용을 포괄한다. 납세협력비용은 제반 세무이행 과정

III. 부가가치세제의 문제점 및 발생원인 49

에서 발생하는 내부비용과 외부전문가에게 지불하는 외부비용으로 구분한다. 내부비용은 세금관련 자료의 준비·제출 등과 관련하여 내부에서 투입되는 비용이며, 외부비용은 세금문제와 관련하여 세무대리인 등 외부전문가에게 지불되는 비용이다.<sup>12)</sup> 즉, 장부 관리, 세무계획 마련, 신고납부에 소요된 시간(Time Costs) 및 금전적 비용(Out of Pocket Costs)과 납세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심리적 비용뿐만 아니라 회계사나 변호사와 같은 세무대리인에게 지급하는 납세수수료도 포함된다.

세제 운영의 사회적 비용 중 정부측이 지출하는 비용인 행정비용과 납세자가 지출하는 비용인 납세협력비용을 합하여 운영비용이라고 한다. 이러한 운영비용은 조세정책의 디자인 및 기획단계, 세법 초안 작성 및 법제화 단계, 조세제도의 관리 및 행정단계, 납세순응단계, 분쟁 해결단계에서 각각 발생한다. 조세정책의 목표는 가능한 한 적은 비용으로 정부가 민간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충분한 세원을 확보하는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세법상 의무이행에 소요되는 납세협력비용과 조세제도를 관리·유지하는 데 소요되는 행정비용 즉, 운영비용에 민감하여야 한다.<sup>13)</sup>

[그림 III-7] 세제운영의 사회적 비용



12) 김유찬(2008), p. 28

13) Vaillancourt 외(2008), p. 5.

## 2) 우리나라 현황

2008년 기준 우리나라의 징세비는 약 1조 2,396억원으로 세수실적 대비 약 0.79% 수준이며, 2007년도에 비해 1,577억원이 증가하여 2.9%의 증가율을 나타냈다. 이는 외국과 비교하여 매우 낮은 수준으로 국제행정이 상대적으로 효율적인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나<sup>14)</sup>, 결손 및 체납비율 측면에서는 개선의 여지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제도운영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결손비용과 납세협력비용을 포함할 경우에는 운영비용은 지금보다 크게 증가한다. 특히, 영세·한계사업자에게 결손 및 납세협력비용이 매우 집중적으로 발생하여 역진적 성격이 드러나고 있다.

2008년 기준 운영비용은 약 15조 4,436억원으로 세수의 약 9.8% 수준인 것으로 추정된다. <표 III-8>의 2008년도 운영비용 구성내역을 살펴보면 납세협력비용<sup>15)</sup>은 약 7조 2,463억원으로 추정되며, 결손금액과 징세비용이 6조 9,577억원, 1조 2,396억원으로 납세협력비용, 결손금액, 징세비용의 순으로 나타났다. 결손금 정리는 납세의무는 소멸시키지 않고 체납처리 업무의 효율화를 위해 체납징수를 일시적으로 유보하는 결손처분에 의한 것으로 사후에 확보된 세수규모는 알 수 없다. 따라서 결손금액 중 일부는 사후에 확보되는 것을 고려하는 경우, 운영비용은 <표 III-8>에서 추정된 금액보다 다소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

14) 현진권·문춘걸(2002), p. 90

15) 국세청과 한국조세연구원(2008)이 OECD 표준원가모형을 이용하여 '납세협력비용 추정모형'을 개발하여 관련비용을 측정한 결과, 2007년 납세협력비용은 GDP 대비 약 0.78%, 총세수 대비 4.6% 수준이었다. 세목별 납세협력비용을 살펴보면, 세수 대비 비중은 소득세 7.45%, 법인세 5.53%, 부가가치세 5.42%로 소득세 관련 비용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OECD 표준원가모형은 세금 신고·납부 과정을 단위행위별로 표준화하여 전체 납세협력비용을 계산하는 방식이다.

Ⅲ. 부가가치세제의 문제점 및 발생원인 51

〈표 Ⅲ-8〉 운영비용

(단위: 억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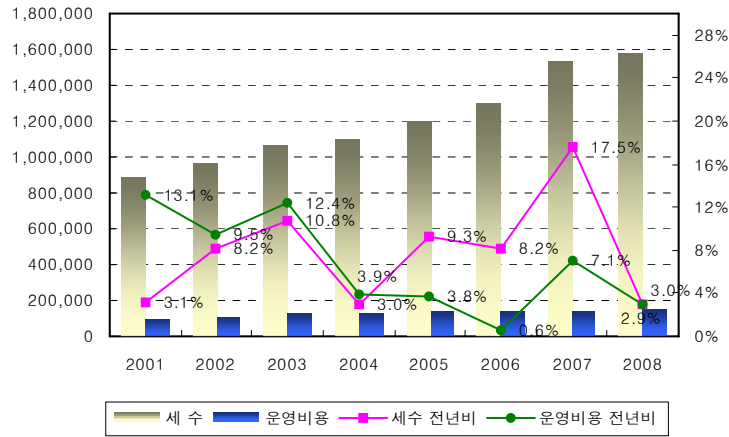
구분	①세 수	②운영 비용 (③+④)	③정 부			④민 간 납세협력 비용	비율 (②/①)
			소계	징세 비용	결손 금액		
2001	892,717	104,743	63,678	7,553	56,125	41,065	11.7
2002	966,166	114,701	70,257	8,175	62,082	44,444	11.9
2003	1,070,486	128,947	79,705	8,796	70,909	49,242	12.0
2004	1,102,172	134,038	83,338	9,492	73,838	50,700	12.2
2005	1,204,237	139,123	83,728	9,764	73,964	55,395	11.6
2006	1,302,608	139,993	80,073	10,238	69,835	59,920	10.7
2007	1,530,628	149,938	79,529	10,819	68,710	70,409	9.8
2008	1,575,286	154,436	81,973	12,396	69,577	72,463	9.8
계	8,679,266	1,065,919	622,281	77,233	545,040	443,638	12.3

주: 1. 납세협력비용은 총세수 대비 4.6%로 추정함  
 2. 국세청과 한국조세연구원(2008)이 자체 개발한 측정모형을 이용하여 측정된 결과임.

자료: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

[그림 Ⅲ-8] 연도별 국세실적 및 운영비용

(단위: 억원, %)



자료: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

〈표 Ⅲ-9〉 국세 미징수금액 비율

(단위: 억원, %)

구분	현금징수가능금액의 구분					비율 ②/①
	① 현금징수 가능금액 (a+b)	a) 실제징수	b) 미징수(결손 및 연체이월)			
			② 소계	결손금액	미정리금액	
2001	977,617	892,717	84,900	56,125	28,775	8.6
2002	1,057,099	966,166	90,933	62,082	28,851	8.6
2003	1,170,566	1,070,486	100,080	70,909	29,171	8.5
2004	1,215,734	1,102,172	113,562	73,838	39,724	9.3
2005	1,322,099	1,204,237	117,862	73,964	43,898	8.9
2006	1,413,013	1,302,608	110,405	69,835	40,570	7.8
2007	1,635,084	1,530,627	104,457	68,710	35,747	6.4
2008	1,683,943	1,575,286	108,657	69,577	39,080	6.5
계	10,475,155	9,644,299	830,856	545,040	285,816	7.9

주: 미정리금액은 체납발생액 중 당해연도에 징수하지 못하고 이월된 금액임.  
 자료: 『국세통계연보』(2009)

〈표 Ⅲ-9〉의 2001년~2008년간 국세의 미징수율은 약 6~9% 수준이며, 동 기간의 평균 미징수율<sup>16)</sup>은 현금징수 가능금액<sup>17)</sup>의 약 7.9%로 나타났다. 2008년 기준 미징수액은 현금징수 가능액의 약 6.5%인 10조 8,657억원으로 상당한 수준임을 알 수 있다. 2008년도의 미징수율은 2001년 대비 2.1%포인트 감소하였고, 2001년도 세수실적이 89조 2,717억원에서 2008년도에는 157조 5,286억원으로 76.4% 증가한 반면 운영비용은 2001년 10조 4,743억원에서 15조 4,436억원으로 47.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징수 효율성은 향상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16) 결손금과 체납발생액 중에서 당해연도에 징수하지 못하고 이월된 미정리금액을 포함.

17) 정부의 실제 징수한 세수금액에 결손금액과 미정리금액을 합한 금액

Ⅲ. 부가가치세제의 문제점 및 발생원인 53

결손금액 비중이 체납발생총액의 30~40% 수준으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가) 부가가치세 운영비용

부가가치세 운영비용(Operating Cost)은 사업자의 납세협력비용과 정부의 징세비용, 결손금액으로 구성되며 2008년도 기준 약 4조 5,880억원 수준으로 추정된다. 부가가치세 운영비용 중에서 징세비용이 약 3,719억원, 납세협력비용이 약 2조 3,750억원을 차지하는 것으로 추정되며, 결손처리금액은 약 1조 8,411억원이다.

〈표 Ⅲ-10〉 부가가치세 운영비용

(단위: 억원, %)

구분	①세 수	②운영 비용 (=③+④)	③정 부			④사업자	비율 ②/①
			소계	징세 비용 <sup>1)</sup>	결손금액	납세 협력비용 <sup>2)</sup>	
2001	258,347	27,754	13,752	2,265	11,487	14,002	10.7
2002	316,087	33,501	16,369	2,452	13,917	17,132	10.6
2003	334,470	39,092	20,964	2,638	18,326	18,128	11.7
2004	345,717	44,100	25,362	2,847	22,515	18,738	12.8
2005	361,186	44,039	24,463	2,929	21,534	19,576	12.2
2006	380,928	39,066	18,420	3,061	15,359	20,646	10.3
2007	409,419	45,400	23,209	3,245	19,964	22,191	11.1
2008	438,198	45,880	22,130	3,719	18,411	23,750	10.5
계	2,844,352	318,833	164,669	23,156	141,513	154,164	11.2

주: 1) 부가가치세 징세비용은 총내국세징세비용의 약 30%<sup>18)</sup>로 추정

2) 납세협력비용은 납부세액의 5.42%로 추정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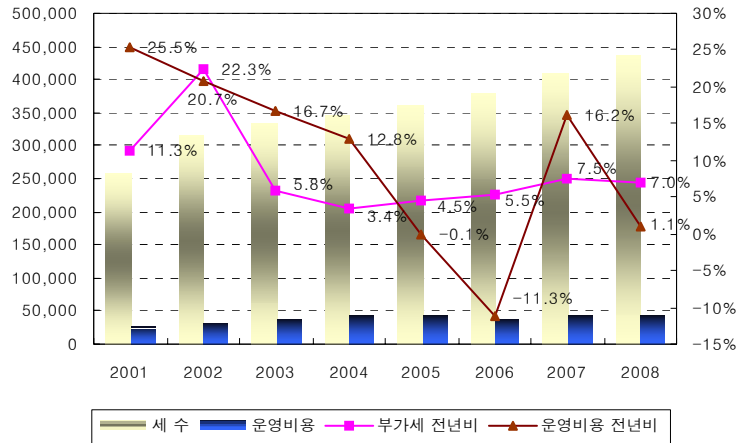
1. 국세청과 한국조세연구원(2008)이 자체 개발한 측정모형을 이용하여 측정된 결과임.

자료: 『국세통계연보』(2009)

2008년도 부가가치세 총징수금액 43조 8,198억원 중 내국부가가치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약 12%인 5조 2,308억원에 불과하며, 수입부가가치세가 88%인 38조 5,800억원을 차지하고 있다. 부가가치세 징수실적 중 국내분 점유비는 39.3%를 차지한 1995년 이후로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09년에는 가장 낮은 수준인 12%로 나타났다. 부가가치세 징수실적은 1995년 14조 6,369억원에서 2009년 43조 8,198억원으로 약 200% 이상 증가하였으나 국내분 점유비는 오히려 약 8.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입부가가치세는 납부 불이행 시 통관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부가가치세의 운영비용은 대부분 내국 부가가치세에서 발생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내국 부가가치세 징수금액 대비 내국 부가가치세 운영비용은 상대적으로 과도하게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그림 III-9] 연도별 부가가치세 세수실적 및 운영비용

(단위: 억원, %)



자료: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

18) 2008년도 총내국세수에서 부가가치세수가 차지하는 비율임.

Ⅲ. 부가가치세제의 문제점 및 발생원인 55

나) 부가가치세 징수 효율성

〈표 Ⅲ-11〉의 2001~2008년간의 부가가치세 미징수율은 약 6~10% 수준으로 평균미징수율은 현금징수가능금액의 약 8.1% 수준인 것으로 나타나며 동일 기간의 국세 평균 미징수율 7.9%보다 약간 높은 수준이다. 2008년도의 부가가치세 미징수금액은 3조 3,350억원으로 2007년도의 3조 3,253억원에 비해 0.2% 감소하였으며, 미징수율은 현금으로 징수 가능한 부가가치세액의 7.1%로 2007년도의 7.5%에 비해 0.4%포인트 하락하였다. 부가가치세 미징수액 비율은 2005년 이후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미징수액이 3조 3,350억원으로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한편 부가가치세 징수실적은 2001년의 25조 8,347억원에서 2008년 43조 8,198억원으로 약 69.6% 이상 증가한 반면 운영비용은 2조 7,754억원에서 65.3% 증가한 4조 5,880원을 나타내어 징수 효율성은 다소 개선되었다고 볼 수 있다.

〈표 Ⅲ-11〉 부가가치세 미징수액 비율

(단위: 억원, %)

구분	현금징수가능금액 구성					비율 ②/①
	①현금징수 가능금액 (a+b)	a)실제징수	b)미징수(결손 및 연체이월)			
			② 소계	결손금액	미정리금액	
2001	277,763	258,347	19,416	11,487	7,929	6.9
2002	340,133	316,087	24,046	13,917	10,129	7.0
2003	365,219	334,470	30,749	18,326	12,423	8.4
2004	385,305	345,717	39,588	22,515	17,073	10.2
2005	400,692	361,186	39,506	21,534	17,972	9.8
2006	411,746	380,928	30,818	15,359	15,459	7.5
2007	442,672	409,419	33,253	19,964	13,289	7.5
2008	471,548	438,198	33,350	18,411	14,939	7.1
계	3,095,078	2,844,352	250,726	141,513	109,213	8.1

자료: 『국세통계연보』(2009)

### 다. 부가가치세 부담의 역전가현상 발생

현행 부가가치세제는 매입자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으로 재화나 용역의 공급자가 매입자에게 전가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대기업의 하청기업에 대한 단가인하 압력 등으로 오히려 부가가치세의 역전가현상이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다. 부가가치세는 판매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가격세제이면서 간접세이지만, 실제 현실에서는 매입자인 대기업이 시장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중소기업의 납품단가를 인하하도록 하여 최종매입자로서의 부가가치세 부담을 회피하고 있다. IMF 이후 시장에서 우월적 지위를 가진 사업자의 지속적인 납품단가 인하 요구와 소비자의 가격인하 요구에 따라 공급자가 제조원가에도 못 미치는 가격에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부가가치세의 역전가는 불공정거래를 조장하고 정상사업자를 퇴출시켜 세수기반을 잠식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정상적 VAT 흐름: 제3하청 → 제2하청 → 제1하청 → 원청  
 역전가 VAT 흐름: 원청 → 제1하청 → 제2하청 → 제3하청  
 → 국가(결손)

이처럼 <부가가치의 이전 → 역마진 발생 → 부가가치세 탈루로 보전 → 체납 → 결손>으로 이어지면서 궁극적으로 매입자가 부담해야 할 부가가치세가 공급자에게 역으로 전가된다. 이러한 부가가치세 역전가를 견디지 못하는 공급자는 체납 후 도산하게 되며, 국가가 이런 체납자의 세금을 결손처리하면 매입자 비용(부가가치세)을 궁극적으로 국가가 보전해주는 결과를 초래한다. 즉, <표 III-1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유통업자인 대기업이 부가가치세 부담을 회피하기 위하여 제조업을 영위하는 소기업으로부터 정상가격보다 낮은 판매가격으로 제품

III. 부가가치세제의 문제점 및 발생원인 57

을 납품받게 되면, 소기업은 역마진을 보전할 목적으로 부가가치세를 탈루하게 되고 궁극적으로 국가는 매출세액 체납에 대하여 결손처분을 하게 되는 것이다.

〈표 III-12〉 부가가치세의 역전가로 인한 체납 및 결손 발생사례

소기업(제조업)		⇒	대기업(유통업자)		⇒	부가가치세 처리상황	
정상납품가격	440		실제납품가격	330		국 가: 결손 30	
제조원가	300	제조원가	300	대기업: 매입세액공제 30			
부가가치	100	부가가치	0	소기업: 매출세액체납 30			
부가가치세	40	부가가치세	30				

최근에는 고의적으로 세금탈루를 경쟁력의 수단으로 삼아 정상적으로 세금을 납부하고 있는 사업자를 퇴출시키는 사례까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실제로 체납자를 업종별로 분석해 보면 비용 전가가 곤란한 영세사업자, 단가경쟁이 치열한 업종에 집중되고 있으며, 제조업, 건설업의 경우 전체 사업자 중 20% 이상이 세금을 체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13〉 개인사업자의 주요업종 체납상황(2008)

(단위: 명, %, 건, 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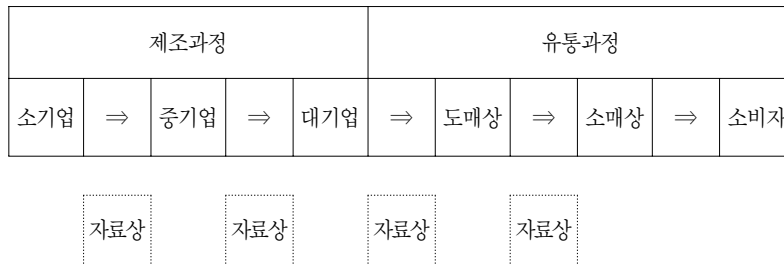
업종	사업자수	체납자수	체납자비율	체납건수	체납액
제조업	287,733	65,562	22.8	178,894	6,077
건설업	219,477	43,042	19.6	101,524	2,670
운수업	191,747	31,103	16.2	75,228	896

자료: 국세청 통계

## 라. 부가가치세의 탈루

### 1) 비정상적 세금계산서 수수 만연

부가가치세는 투명한 유통질서를 기반으로 하는 다단계 소비세제로 이를 위해 세금계산서 제도를 운영중이나 유통단계별로 실물거래와 세금계산서 수수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허다하다. 그동안 국세청의 강력하고 지속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거래징수제도가 내재하고 있는 제도적 한계로 자료상·폭탄업체 등이 활개치고 있다.<sup>19)</sup> 국세통계연보에 의하면 자료상 조사 실적은 지난 2005년 5,488건, 2006년 2,256건, 2007년 2,280건, 2008년 2,881건으로 나타난다.



특히, 환금성이 높은 제품이나 상품을 선택하여 부가가치세 거래징수제도의 허점을 교묘하게 이용하여 거액의 조세를 포탈하고 있는 무자료 업체가 성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언론에서는 폭탄업체를 이용하

19) 세금계산서 수수질서 정상화와 세법질서유지를 위해 가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탈세를 조장한 자료상 혐의자 104명에 대해 전국 일제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조세일보 2005년 10월 18일).

가짜 세금계산서를 수수하는 행위는 조세법 질서의 근간을 뒤흔드는 중대한 범죄행위이므로 가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자와 교부받는 자에 대하여는 지속적으로 정보수집, 세무조사 실시, 조세범칙 고발 등을 통해 거래질서를 확립해 나갈 것이다(조세일보 2008년 1월 9일).

### III. 부가가치세제의 문제점 및 발생원인 59

여 수 조원에 달하는 부가가치세를 포탈한 사례 등이 빈번하게 보도되고 있다. 폭탄업체는 시장수요 규모가 커 비교적 은닉이 용이하고, 환가성이 높은 제품이나 상품을 선택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하고 있으며, 금, 귀금속, 주류, 유류, 철근 또는 시멘트 등의 건설 원자재, 컴퓨터 및 컴퓨터 부품 등이 주요 대상이다.

구리를 납품받는 제강업체는 부가가치세를 탈루하기 위하여 세금계산서를 정상적으로 발행할 수 있는 법인(일명 '간판업체')을 형식적으로 등록한 후, 거래자료를 요구하지 않는 등의 유리한 조건을 내세워 다수의 구리 수집상을 상대로 시중가격보다 비싸게 매입하여 확보한 구리를 간판업체로부터 공급받게 된다. 한편, 유통 경로상 폭탄업체와 제강업체 사이에 위치한 간판업체는 정상적인 세금계산서를 주고 받으며 제강업체로부터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구리대금을 지급받는 즉시 폭탄업체에 송금한다. 폭탄업체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구리대금을 송금받는 즉시 인출한 후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고, 일정 영업기간이 지나면 간판업체와 폐업하거나 영업을 중단하는 과정을 조직적으로 수행하게 된다.

최근 금 밀수를 방지하기 위하여 도입된 금지금 면세제도<sup>20)</sup>를 악용, 이른바 '폭탄영업'<sup>21)</sup>이라 불리는 변칙금거래에 가담한 금지금 도매업

20)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3에 의하면 금지금 금융시장의 활성화를 지원하고 금세공업자의 밀수 및 무자료 금 구입요인을 제거, 과세표준 양성화를 도모하고 금을 이용한 선진적인 금융거래제도의 도입을 세제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2003. 7. 1 이후 최초로 금지금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 또는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있다. 동 면세규정은 2011.12.31까지 공급(수입)하는 분까지 적용된다.

21) 폭탄영업이란 금지금을 수입할 때 부가가치세 10%를 면제해 주는 면세 금지금 제도를 악용하여 금지금을 수입한 뒤 수출하는 과정에서 부가가치세를 부정 환급받는 행위로 「수입 → 1차 도매 → 폭탄업체 → 2차 도매 → 수출」 과정을 거치는 방식이다. 폭탄업체가 유통 중간단계에서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후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자진 폐업하면 금 수출업체는 세금계산서를 폭탄업체로부터 넘겨받아 부가가치세를 환급받게 된다. 즉, 금을 수입하여 수출용이라고 면세거래를 하다가 폭탄업체 단

체에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는 최근 판결이 나왔다. 금거래가 수입에서 수출까지 단기간 내에 6~8단계의 서로 인접한 도매업체를 거쳐 유통되었고 수출가격이 매입가격에도 미치지 못한 사실, 유통과정에서 폭탄업체<sup>22)</sup>들이 계속 관여한 사실 등에 비추어 볼 때 금지금 도매업체와 폭탄업체의 거래는 면세거래를 과세거래로 전환하기 위하여 세금계산서만을 발행한 명목상의 거래에 불과하고 금지금의 소유권이 이전되어 대금이 지급되는 매매거래가 실제로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고 매입가액에 상응하는 매입세액을 공제 내지 환급하지 않은 과세관청의 처분은 적법하다는 내용이다.<sup>23)</sup>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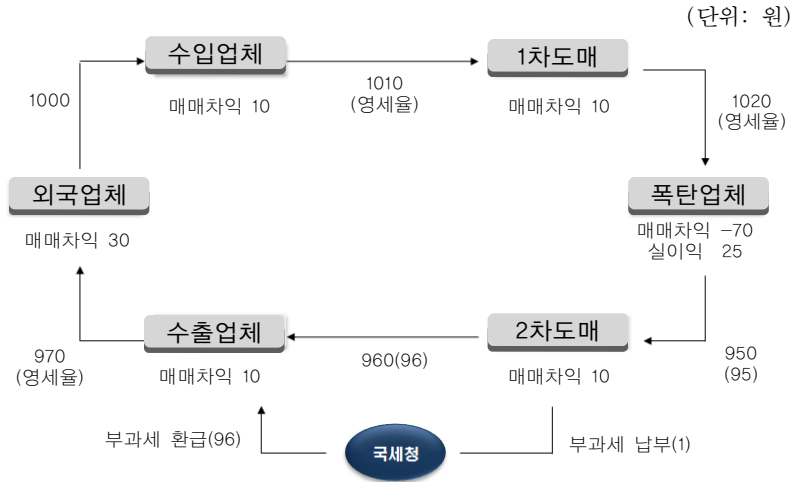
계에서 국내거래로 전환하여 세금신고와 함께 2차 도매업자에게 수입가격보다 낮은 가격에 공급한 후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고의로 폐업하고, 2차 도매업자는 수출업체에 금을 공급하며, 수출업체는 외국업체에 금을 공급하는데 이때 국세청으로부터 폭탄업체를 포함한 전 단계 업체들이 납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아 순환 유통에 참여한 모든 업체에 분배하는 것이다.

22) 폭탄업체는 금지금 유통과정에서 특정 업체의 지시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뿐 실제로는 금지금의 거래나 운송을 하지 않는 명목상의 업체이다.

23) 대법원 2011. 1. 20. 선고 2009두13474 판결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III. 부가가치세제의 문제점 및 발생원인 61

[그림 III-10] 금지금 국제시장 변칙거래 구조도(1000원 기준 거래시)



주: 1. 실질환급 = 포탈액(95)분배 = 수입업체(10)+수출업체(10)+1,2차 도매업체(20)+폭탄업체(25)+외국업체(30)

2. ( ) 안은 부가가치세

자료: 서울중앙지검

2) 신용카드 갱(24)을 통한 탈세

여신금융협회는 2010년 상반기 신용카드 불법할인(갱) 가맹점 및 회원 제재건수가 17,489건, 30,142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22.1%,

24) 신용카드 불법할인은 일명 '카드갱'으로 불리며, 이는 "불법 현금유통"이란 범죄행위로 해당업체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에 의거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금융질서 문란자로 등재되어 5년간 금융거래상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그 대표적 유형으로는 실물거래가 없는 카드할인(카드갱)으로서 신용카드로 위장가맹점을 통해 허위 매출을 발생시켜 현금을 유통하는 행위, 실물거래가 있는 카드할인(현물갱)으로서 신용카드로 실제 물품(명품, 귀금속, 농산품, 전자 제품, 상품권 등)을 구입한 후 재판매하는 방법으로 현금을 유통하는 행위, On-line상의 카드할인(사이버 카드갱)으로서 인터넷 쇼핑몰에서 매출을 가장하거나, 경매를 가장하여 PG가맹점 또는 인터넷 경매사이트를 통해 허위매출을 발생시켜 현금을 유통하는 행위 등이 있음.

〈표 Ⅲ-14〉 2010년 상반기 신용카드 불법할인(깡) 회원 제재

(단위: 건, %)

구분	직접적 제재(구성비)		계
	거래정지	한도축소	
'09년 상반기	4,605(19.9)	18,570(80.1)	23,175(100)
'09년 하반기	5,856(20.8)	22,255(79.2)	28,111(100)
'10년 상반기	6,835(22.7)	23,307(77.3)	30,142(100)
증감률 ('09 상반기 대비)	48.4	25.5	30.1

자료 : 여신금융협회

〈표 Ⅲ-15〉 신용카드 불법할인(깡) 회원 제재 현황

(단위: 명)

기간	05년	07년	08년		09년		10년
	상반기	상반기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
제재내역	54,734	28,924	18,711	18,716	23,175	28,111	30,142

자료 : 여신금융협회

30.1% 증가했다고 밝혔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 제4항에서는 가맹점의 준수사항으로 아래의 5가지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이 없이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한 것으로 꾸미는 행위
- 신용카드로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를 하는 행위
- 다른 신용카드 가맹점 명의로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하는 행위<sup>25)</sup>

25) 여전법 제70조 벌칙규정에서 이를 위반할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

### III. 부가가치세제의 문제점 및 발생원인 63

- 신용카드 가맹점의 명의를 타인에게 대여하는 행위<sup>26)</sup>
-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대행하는 행위<sup>27)</sup>

신용카드 불법할인(깡) 가맹점은 다음과 같은 자를 의미한다.

-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하거나 실제 매출금액을 넘겨 신용카드로 거래하거나 이를 대행하게 하여 자금을 융통하여 준 자 또는 이를 중개·알선한 자
- 신용카드 회원으로 하여금 신용카드로 구매하도록 한 물품·용역 등을 할인·매입하여 자금을 융통하여 준 자 또는 이를 중개·알선한 자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탈세를 목적으로 다양한 형태의 ‘신용카드 깡’이 발생하고 있으며, 그 예는 다음과 같다.

-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등의 간접세 부담을 회피하기 위하여 사용되고 있는 방식: 유흥업종 등에서 매출을 곡물·축산물 판매로 처리하거나, 특정사업자 단체에 부여한 면세사업자의 매출로 이동 처리하여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를 모두 탈세하는 현상이 나타나며, 유흥음식점의 경우에는 ‘봉사료’를 과대 계상하는 방식으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를 포탈하는 경우도 있다.
- 누진세 구조에 의한 소득세 부담을 분산시키기 위하여 소득분산 목적으로 활용하는 경우: 대형 음식점에서 분점 설치 시 타인의 명의로 사업장을 개설하고 매출을 분산 처리하는 경우
- 국가 간의 간접세율 차이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간접세 부담이 적

---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26) 여전법 제70조 벌칙규정에서 이를 위반할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27) 여전법 제70조 벌칙규정에서 이를 위반할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은 해외에 서버를 설치하고, 국가 간의 간접세율의 차이를 헷징(Hedging)하기 위한 목적으로 활용되는 방식

- 불법 사채업자를 통한 단기금융 활용 목적으로 이용되는 형태: 사채업자와 대형 할인점 등이 공모하여 할인점 등의 신용카드 매출과 연계하여 개인대출 처리하는 경우
- 신용카드 가맹점주가 자신 또는 가족의 카드를 자기 단말기에서 매출 처리하여 단기금융 목적으로 활용하는 경우
- 비사업자의 자기금융 목적으로 전자상거래 중계 사이트에서 P2P 거래로 위장하여 단기금융 활용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 인터넷 쇼핑몰에서 신용카드로 물품을 구매한 후 불법할인(깡)업자에게 직접 배달되도록 하면 이를 할인 매입하는 방법으로 자금을 송금하는 경우
- 신용카드를 보내주면 물품을 구매한 후 동 물품을 할인 매매하는 방법으로 자금을 융통하여 인터넷뱅킹으로 입금하는 경우
- 신용카드 번호 및 유효기간을 알려주면 본인 여부를 확인한 후 물품판매를 가장한 신용카드 거래를 통해 자금을 융통해주는 경우
- 신용카드회사들이 다단계 또는 방판업체 등에는 신용카드 결제 한도를 부여하지 않거나 적은 한도를 부여한 경우 해당 업체들이 위장가맹점을 개설하여 신용카드 결제를 실행하는 방식
- 백화점, 할인점 또는 가전제품 대리점 등에서 매출 목표 달성을 위하여 납품업체와의 담합을 통하여 '신용카드 깡'을 실시하는 경우
- 현금매출 비중이 높은 유통업체 등에서 특정 일자의 현금매출을 동 일자 신용카드 매출로 바꾸는 방식으로 이용되는 경우
- 국내에서 불법으로 규정된 도박과 관련된 게임머니 결제를 위하여 해외 PG를 이용하여 결제를 실행하는 경우
- 온라인 거래를 위장한 신용카드 불법 사용방법으로서, 허위 전자상거래 사이트를 개설하여 오프라인 가맹점의 매출을 온라인

### Ⅲ. 부가가치세제의 문제점 및 발생원인 65

P2P 거래로 위장하여 매출이동 처리하는 경우

- 상품권을 이용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하는 경우

#### 3) 덤핑거래

대기업 대리점 등이 본사 결제 부족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대량의 보유 재고를 세금계산서의 교부 없이 덤핑업자에게 현금 판매하는 경우로, 덤핑사업자는 무자료로 소매유통시장에 판매 처리하게 된다. 덤핑사업자들이 선호하는 대상품목은 현금화가 용이하고, 저장이 가능한 컴퓨터, 가전제품, 식자재, 공산품 또는 음료수 등이다.

#### 4) 거래자 간 담합

첫째, 세금계산서를 미발행하는 경우이다. 간이과세자, 종교단체 또는 아파트 관리사무소 등은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한 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는 조건으로 할인 공급하거나 세금계산서 발행자와 수취자가 담합하여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와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둘째, 전문직 사업자와 고객 간 담합하는 경우로 변호사, 치과의사, 성형외과 의사 등은 현금 납부조건으로 할인 혜택을 부여한다.

셋째, 부동산 임대시 부동산 임대사업자와 임차인 간에 담합하여 이중계약으로 처리한다.

마지막으로, 도덕적 해이 현상이 관행화된 시장을 들 수 있다. 소비자들도 소형 음식점에서의 신용카드 결제 거부에 불만을 표시하면서도, 재래도매시장이나 전자상가에서 거래를 하는 경우 신용카드 대신 현금할인 거래를 선택하는 거래방식이 관행화<sup>28)</sup>되어 있다. 이러한 환

28) 실질적으로 가맹점은 신용카드 거래시 과표 노출, 가맹점수수료 부담 등으로 현금매출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비용이 상승하나 여신전문금융업법

경에서 사업자들은 과표가 드러난 부분에 상당하는 세금계산서를 자료상 등으로부터 구입하여 세무신고를 하고 있으며, 이러한 불법적인 거래 및 신고방식이 정상적인 것으로 착각하는 도덕적 해이 현상이 관행화되어 있다.

## 2. 문제점의 발생원인

문제점의 발생원인은 부가가치세제가 제도를 둘러싸고 있는 사회·경제적 환경의 변화를 수용하지 못한 결과이다. 부가가치세가 도입된 지 33년이 경과하여 그동안 우리 사회의 경제·사회적 환경이 크게 변화하였으나, 부가가치세제는 도입 당시의 거래징수의 기본 골격을 수정·보완없이 그대로 유지하여 30여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는 제도의 현실 적합성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

### 가. 사업자의 영세화

외환위기 이후 대기업들은 앞다투어 비용절감을 위하여 아웃소싱을 확대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중소영세기업이 양산되었다. 대체로 중소영세기업은 자본축적 기간이 짧거나 자본축적 기회를 갖기 어려운데, 이런 상황에서 비용부담이 집중 전가되면서 체납 및 결손액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외형 및 수익성 위주 사업의 영위는 영세기업의 사업환경을 악화시키게 되어 세금체납이 증가하게 된다.

1990년대 이후 종업원 수 5~9명인 영세기업의 비율은 급속하게 증가한 반면에 중·소기업은 오히려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영세기

---

제19조 제1항에서 신용카드가맹점은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이유로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거절하거나 신용카드회원을 불리하게 대우하지 못하도록 하고, 제3항에서는 가맹점수수료를 신용카드회원으로 하여금 부담하지 못하도록 규정하여 현금거래시 할인 등을 조장하는 경향이 있음.

Ⅲ. 부가가치체제의 문제점 및 발생원인 67

업의 비율은 1990년에 31.4%이었지만, 2007년에는 48.3%로 증가하였다. 반면, 종업원 수 10~49명인 소기업의 비율은 1990년에 54%에서 2007년 42.9%로 감소하였고 종업원 수 50~299명인 중기업의 비율은 1990년에 12.8%에서 2007년 7.5%로 감소하였다.

〈표 Ⅲ-16〉 중소기업의 영세화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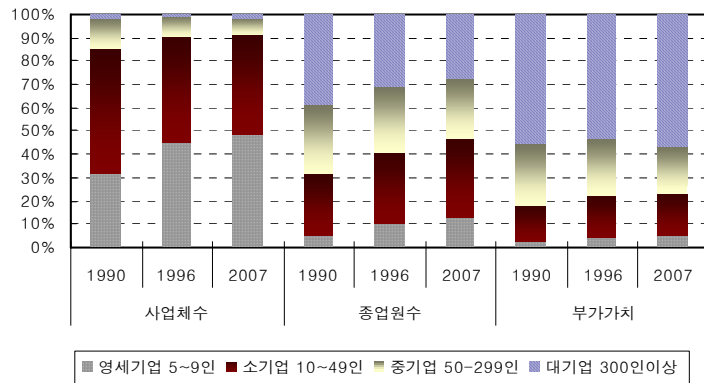
(단위: %)

구 분		사업체 수			종업원 수			부가가치			
		1990	1996	2007	1990	1996	2007	1990	1996	2007	
중소 제조 기업	소 계	98.3	99.1	98.7	61.7	69.2	73.1	44.3	47.2	43.9	
	영세	5~9인	31.4	45.3	48.3	4.9	9.9	12.9	2.3	4.5	5.1
	소	10~19인	29.2	27.1	27.1	9	12.2	14.8	4.7	6.2	7.1
		20~49인	24.8	18.3	15.8	17.4	18.5	19.2	10.6	11.2	10.7
	중	50~299인	12.8	8.4	7.5	30.3	28.6	26.2	26.7	25.5	21.0
대기업	300인 이상	1.7	0.9	1.3	38.3	30.8	27.0	55.7	52.8	56.2	

자료 : 통계청, 『광업·제조업조사보고서』, 각 연도

[그림 Ⅲ-11] 규모별 사업체 수, 종업원 수, 부가가치 현황

(단위: %)



자료 : 통계청, 『광업·제조업조사보고서』, 각 연도

## 나. 시장에서의 역학관계 변화

시장이 공급자 우위에서 수요자 우위로 변화하고 있다. 인터넷의 급속한 발전과 유통산업구조의 혁명적 변화<sup>29)</sup> 등으로 그 동안 공급자(제조업체)가 보유하고 있던 상품에 대한 가격결정권 등이 막강한 구매력을 가진 매입자(대형유통업체, 인터넷으로 연결된 소비자)로 이전되었다. 할인점의 시장규모는 2002년에는 약 17조 4천억원 수준이었으나 그 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09년에는 약 31조 2천억원 수준에 이르러 2002년 대비 79.3% 이상 크게 증가하였다. 반면 할인점 시장규모 증가율은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며 2009년에는 2008년 대비 6.6%포인트 하락한 2.3%를 나타냈다.

〈표 III-17〉 할인점 시장규모 증가추이

(단위: 억원, %)

구 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시장규모	174,050	197,080	215,000	235,303	255,000	280,000	305,000	312,000
증가율	25.7	12.1	10.3	9.4	8.5	9.8	8.9	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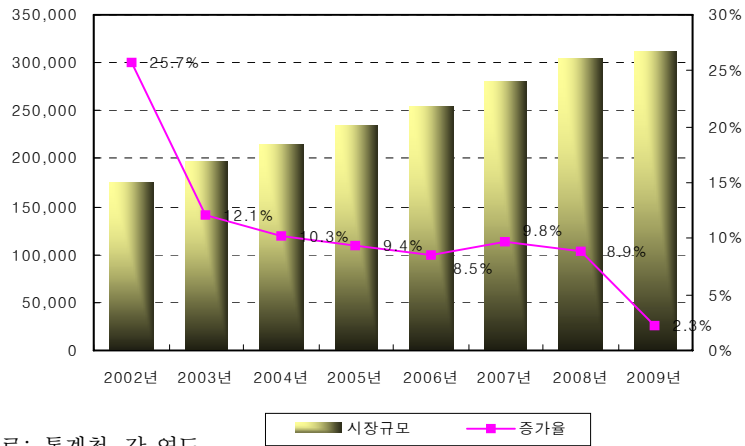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각 연도

시장에서의 역학관계가 수요자 우위로 변화됨에 따라 부가가치세 거래징수를 담당하는 공급자가 거래관계에서 “을”의 위치로 변경되었으며, 무한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단가 인하 등이 이루어짐에 따라 중소영세공급사업자의 영업환경이 크게 악화되었고, 이에 따라 부가가치세 거래징수 부담도 증가하였다.

29) 재래시장, 슈퍼마켓 등 생계형 유통업자에서 할인점, 홈쇼핑업체 등 대규모 기업형 유통업자로 전환

[그림 III-12] 할인점 시장규모 증가추이

(단위: 억원, %)



자료: 통계청, 각 연도

#### 다. 사업자의 세무이행능력의 차이를 고려하지 않은 조세채권관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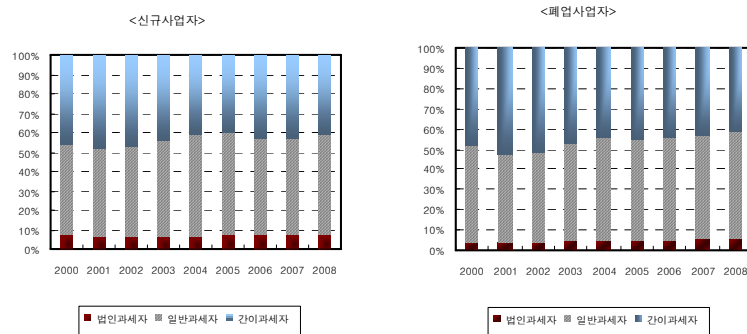
금융기관의 경우 대출 시 처음부터 부실화나 대손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부채상환능력(신용상태 및 재무상태, 기업실적, 대출거래실적 등)에 따라 기업이나 개인을 조직적으로 평가하여 그 결과에 A, B, C, D, E와 같이 등급을 차등적으로 부여하여 대출가능 여부, 대출액 한도, 금리 등을 세분화하여 관리하고 있다. 하지만 조세채권은 사업자별로 세무관리능력, 납세의식 수준, 납세준응도 등 세무이행능력의 차이가 매우 크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는 거의 모든 사업자가 동일한 수준의 세무이행능력이 있는 것으로 간주되어 관리되고 있다.

부가가치세법의 경우에는 재화 등을 공급하는 모든 사업자에게 비차별적으로 부가가치세 거래징수권리·의무를 부여함으로써, 영세사업자에게 조세채권의 연체(체납)나 대손(결손)이 집중 발생하고 있으며, 이들에게 납세협력비용이 역진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세무이행능

력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사업자, 시장역학관계에서 부가가치세를 전가시킬 수 없는 사업자, 생계형 사업자까지 부가가치세 거래징수권리·의무자가 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자영업자 비율이 지나치게 높아(OECD 평균 2배) 경쟁이 치열하고, 개업과 폐업이 매우 빈번하고, 영세한 규모가 대부분이며, 사업 영속성이 매우 짧아 세무이행능력을 제대로 갖춘 사업자가 적다. 2008년 한 해만 하더라도 약 110만개의 신규 사업자가 발생하고 약 85만개의 사업자가 폐업하였으며, 2007년에는 110만개의 신규 사업자가 발생하고, 90만개의 기존 사업자가 폐업하였다.

[그림 Ⅲ-13] 과세사업자 유형별 신규 및 폐업 비중



주: 신규 및 폐업은 해당연도 중 신규 등록 및 폐업한 사업자 수입.  
 자료: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

<표 Ⅲ-18> 신규 및 폐업사업자 현황(2008년)

(단위: 명)

전체			법인사업자			개인사업자		
총계	신규	폐업	총계	신규	폐업	총계	신규	폐업
5,234,702	1,087,533	844,171	504,588	75,797	50,040	4,730,114	1,011,736	794,131

주: 신규 및 폐업은 해당연도 중 신규 등록 및 폐업한 사업자 수입.  
 자료: 『국세통계연보』(2009)

Ⅲ. 부가가치세제의 문제점 및 발생원인 71

개인사업자를 세분하여 보면 일반사업자, 간이사업자, 면세사업자 모두 사업의 영속성과 안정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사업자의 경우 2008년 기준 약 50만개의 사업자가 새로 개업을 하는 반면, 약 40만개의 사업자는 폐업하였다. 간이사업자의 경우 2008년 기준 약 40만개의 사업자가 새로 개업을 하는 반면, 약 32만개의 사업자는 폐업하였다. 면세사업자의 경우에는 2008년 기준 약 10만개의 사업자가 새로 개업을 하는 반면, 약 8만개의 사업자는 폐업하였다.

〈표 Ⅲ-19〉 개인사업자의 신규 및 폐업 현황(2008년)

(단위: 명)

개인사업자								
일반			간이			면세		
총계	신규	폐업	총계	신규	폐업	총계	신규	폐업
2,532,644	503,789	398,824	1,676,995	402,528	316,624	520,475	105,419	78,683

주: 1. 총계는 2008년 12.31 현재 가동사업자 기준임.  
 2. 신규 및 폐업은 해당연도 중 신규 등록 및 폐업한 사업자 수임.  
 자료: 『국세통계연보』(2009)

2008년 과세기간 말 개인사업자 중에서 사업존속 연수가 3년 이상인 업체의 비율은 약 58.1%에 불과하여 사업의 영속성이 매우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 10년 이상 지속되는 개인사업자의 비율은 약 19.5%에 불과하다.

〈표 Ⅲ-20〉 개인사업자 사업존속 연수

(단위: 명, %)

총계	6월 미만	6월 이상	1년 이상	2년 이상	3년 이상	5년 이상	10년 이상	20년 이상
4,730,730	449,515 (9.5)	408,737 (8.6)	682,822 (14.4)	440,381 (9.3)	660,053 (14.0)	1,168,182 (24.7)	772,752 (16.4)	142,672 (3.0)

주: 총계는 2008년 12.31 현재 가동사업자 기준임.  
 자료: 『국세통계연보』(2009)

2008년 중 사업개시 후 2년 이내에 폐업한 사업자의 비율이 약 50.4%에 달하며 10년 이상 사업을 지속한 후 폐업하는 비율은 7.4% 정도에 불과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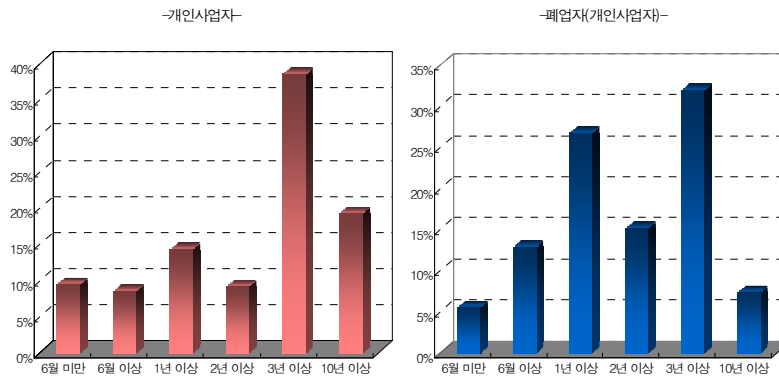
〈표 Ⅲ-21〉 폐업자(개인사업자) 사업존속 기간

(단위: 명, %)

총계	6월 미만	6월 이상	1년 이상	2년 이상	3년 이상	5년 이상	10년 이상	20년 이상
794,131	44,133 (5.6)	103,105 (18.0)	212,862 (26.8)	120,900 (15.2)	120,660 (15.2)	133,708 (16.8)	50,575 (6.4)	8,188 (1.0)

주: 1. 존속연수는 폐업시점을 기준으로 산정  
 2. 해당연도 중에 폐업한 사업자를 기준으로 작성  
 자료: 『국세통계연보』(2009)

[그림 Ⅲ-14] 사업존속기간 현황



자료: 『국세통계연보』(2009)

이제는 과거의 조세채권관리 관행에서 탈피하여 세제환경의 변화를 수용하고 급증하는 체납액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새로운 조세채권관리 시스템의 도입이 필요한 시점이다. 예를 들면, 사업자의 세무이행능력을 평가하여 부가가치세 거래징수권리 부여 여부, 신고방법, 기한 연장, 신고안내, 담보나 압류 등과 연계시킬 필요가 있다.

라. 소비자 결제환경 변화의 미수용(직접결제 → 간접결제)

정부는 자영업자의 과표를 양성화하기 위하여 소비자에게 소득공제 제도와 복권제도를 도입하였고, 가맹점 측면에서는 사실상 신용카드 가맹점 가입의 의무화와 신용카드 매출세액공제 등을 통하여 신용카드 사용을 장려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신용카드는 사회적으로도 가장 중요한 조세 투명성 인프라로 자리매김하였으며, 특히 조세부문에서는 사업자의 대부분이 신용카드 매출액을 수입금액으로 신고하고 있다.

한편 국세청은 1999년 3월과 9월, 2005년 5월 등 3차례에 걸쳐 신용카드 가맹점 확대를 추진하였다. 2001년 6월부터는 소비자 상대 업종 228종목에 해당되는 연간 매출액 2,400만원 이상 모든 사업자를 가맹 대상으로 확대하였다. 2004년부터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 권장과 더불어 가맹 실적이 저조한 업종을 중심으로 가입 확대를 추진하였다.

국세청의 신용카드 가맹점 확대정책 중 세제관련 혜택은 다음과 같다.

첫째,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 2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에 의하여 사업자(법인은 제외)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급하거나 전자적 결제 수단에 의하여 대금을 결제받는 경우 납부세액에서 공제한다.<sup>30)</sup>

〈표 III-22〉 신용카드매출세액공제

사업자	공제액	공제한도
일반과세자	신용카드매출액의 1.3% (1.0%)	연간 700만원(500만원)
간이과세자	신용카드매출액의 2.6% (2.0%) (음식점 또는 숙박업 영위 간이과세업자의 경우)	연간 700만원(500만원)

주: ( )은 2013년 1월 1일 적용 예정  
 자료: 국세청

30) 납부세액-다른 공제할 세액+가산할 세액(가산세 제외)을 초과하는 경우 그 부분은 없는 것으로 한다.

둘째,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 제2항 「수입금액의 증가 등에 대한 세액공제」에 의하여 신용카드 가맹점인 사업자 등은 종합소득산출세액에 신용카드매출액 증가분(전년 대비)의 50%가 연간 총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증가액 기준) 또는 종합소득산출세액에 신용카드매출액의 5%가 연간 총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해당연도 발생액) 기준 중 하나를 선택하여 그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2010년 12월 31일까지).

셋째,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의 3 「성실사업자<sup>31)</sup>에 대한 의료비 및 교육비(장애인 특수교육비공제 포함)」에 의하여 성실사업자로서 의료비 및 교육비를 2010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지출한 경우 그 지출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사업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신용카드 이용금액은 1997년까지 완만한 증가추세를 보였으나 신용카드 활성화정책이 시행된 2000년 이후로 급격한 증가세를 나타냈다. 2002년 이후 증가세가 둔화되어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다가 2005년 이후 다시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카드발급사(은행계카드사/전업카드사)의 다양한 서비스를 개발로 인한 소비자 유치와 신용카드 소득공제 등의 세제혜택으로 인하여 신용카드 거래는 폭발적으로 증가하여 2009년도 현금서비스를 제외한 신용카드 이용금액은 총민간소비지출의 52.6%인 303조원을 차지하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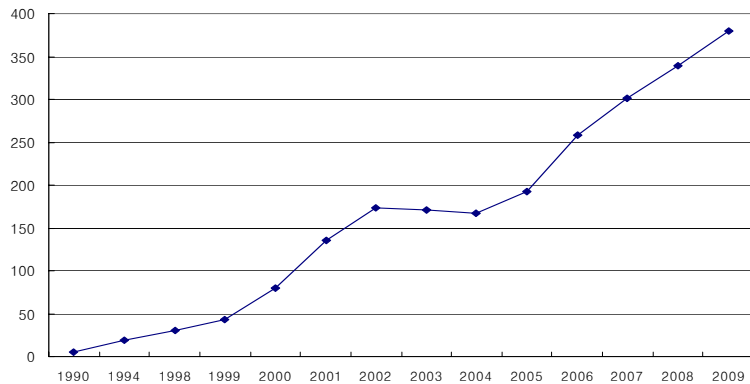
31) 제113조의2 (성실사업자의 범위) 법 제52조제9항 본문에서 "사업용계좌의 개설·신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자를 말한다. ①가. 법 제162조의2 및 제162조의3에 따라 신용카드 가맹점 및 현금영수증 가맹점으로 모두 가입한 사업자. 다만, 해당 과세기간에 법 제162조의2제2항, 제162조의3제3항 또는 같은 조 제4항을 위반하여 법 제162조의2제4항 후단 또는 제162조의3제6항 후단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해당 사실을 통보받은 사업자는 제외한다. ②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의2제1호에 따른 전사적(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 또는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판매시점정보 관리시스템 설비를 도입한 사업자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자

Ⅲ. 부가가치세제의 문제점 및 발생원인 75

있다. 총민간소비지출 대비 신용카드이용금액은 2000년의 24.9%에 비하여 27.7%포인트 증가한 것으로 신용카드가 대금결제의 주요 수단으로 정착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Ⅲ-15] 신용카드 이용금액 추이

(단위: 조원)



자료 :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

<표 Ⅲ-23> 연도별 신용카드 이용도 현황

(단위: 천억원, %)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이용금액(A)	2,249.1 (147.7)	4,433.7 (97.1)	6,229.1 (40.5)	4,805.4 (-22.9)	3,578.5 (-25.5)	3,638.2 (1.7)	3,682.7 (1.2)	3,981.9 (8.1)	4,453.0 (11.8)	4,543.9 (2.0)
이용금액(B) <sup>1)</sup>	778.7 (86.7)	1,342.3 (72.4)	1,740.5 (29.7)	1,705.3 (-2.0)	1,671.0 (-2.0)	1,904.7 (14.0)	2,148.2 <sup>1)</sup> (12.8)	2,410.8 (12.2)	2,793.1 (15.9)	3,039.4 (8.8)
민간소비지출(C)	3,123.0	3,434.1	3,810.6	3,891.7	4,007.0	4,246.3	4,538.7	4,874.1	5,575.9	5,774.0
A / C	34.6	30.3	163.5	123.5	89.3	85.7	81.1	81.7	79.9	78.7
B / C	24.9	39.1	45.7	43.9	41.7	44.8	47.3	49.5	50.1	5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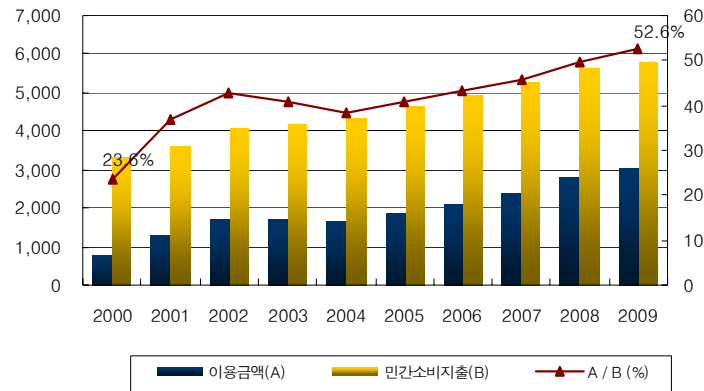
주: 1) 현금서비스 및 기업구매회계 제외(기업구매회계제도 2000년부터 도입)  
자료: 여신전문금융업협회

신용카드 발급매수는 2000년 5,788만장에서 2009년 10,699만장으로 2배 이상 증가하였고, 경제활동 1인당 카드보유 매수는 2000년 2.6장에서 2009년 4.4장으로 크게 높아졌다.

국제청이 1999년 3월과 9월, 2005년 5월 등 3차례에 걸쳐 신용카드 가맹점 확대를 추진한 결과, 신용카드 가맹점 수는 2000년도 861만점에서 2009년에는 1,657만점에 이르고 있다.<sup>32)</sup>

[그림 Ⅲ-16] 연도별 신용카드 이용도 추이

(단위: 천억원, %)



자료: 여신금융협회(2010)

32) 한국은행이 발표한 2007년 '지급결제동향'을 살펴보면, 2007년 가맹점 수가 감소한 이유는 카드사 합병으로 인해 중복 가맹점이 제외되고 일부 카드사에서 실적이 없는 가맹점 및 발급 카드를 2007년 중 일괄적으로 통계에서 제외했기 때문이다.

Ⅲ. 부가가치세제의 문제점 및 발생원인 77

〈표 Ⅲ-24〉 신용카드의 발급현황 및 가맹점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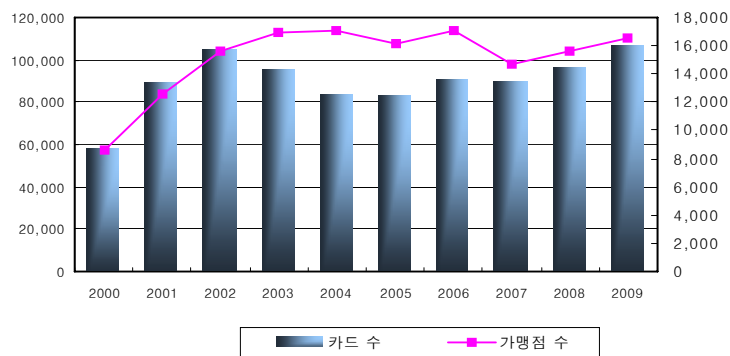
(단위: 천명, 천매, 천점)

	추계인구	경제활동인구	카드 수	경제활동인구 1인당 카드보유매수(매)	가맹점 수
2000	47,008	22,069	57,881 (48.4)	2.6	8,611 (39.1)
2001	47,343	22,417	89,330 (54.3)	4.0	12,627 (46.6)
2002	47,640	22,877	104,807 (17.3)	4.6	15,612 (23.6)
2003	47,925	22,916	95,517 (-8.9)	4.1	16,949 (8.6)
2004	48,082	23,370	83,456 (-16.0)	3.6	17,095 (8.6)
2005	48,294	23,743	82,905 (-0.7)	3.5	16,124 (-5.7)
2006	48,497	23,978	91,149 (9.9)	3.8	17,037 (5.7)
2007	48,456	23,993	89,565 (-1.7)	3.7	14,701 (-13.7)
2008	48,607	24,347	96,248 (7.5)	4.0	15,612 (6.2)
2009	48,747	24,394	106,993 (11.2)	4.4	16,568 (6.1)

주: ( ) 안은 전년 대비 증감률(%)  
자료: 여신금융연합회(2009)

[그림 Ⅲ-17] 신용카드 발급현황 및 가맹점 수 추이

(단위: 천명, 천매, 천점)



자료: 여신금융연합회(2010)

〈표 Ⅲ-25〉 연도별 신용카드 이용내역

(단위: 천억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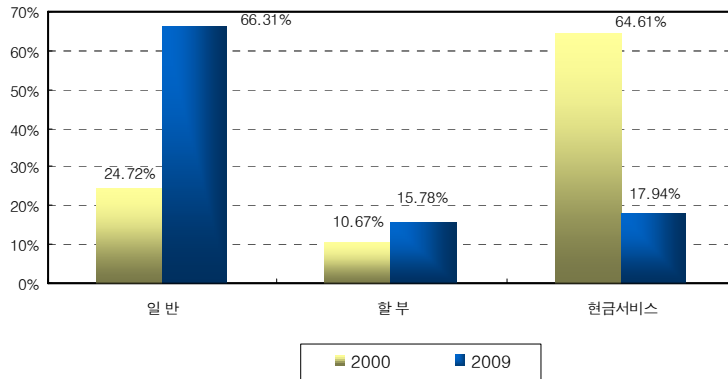
	일 반	할 부	현금서비스	합 계
2000	556 (24.7)	240 (10.7)	1,453 (64.6)	2,249 (100)
2001	1,284 (29.0)	474 (10.7)	2,676 (60.4)	4,434 (100)
2002	1,920 (30.8)	732 (11.8)	3,577 (57.4)	6,229 (100)
2003	1,907 (39.7)	504 (10.5)	2,375 (49.8)	4,786 (100)
2004	1,884 (52.6)	418 (11.7)	1,276 (35.7)	3,578 (100)
2005	2,134 (58.6)	452 (12.4)	1,052 (29.0)	3,638 (100)
2006	2,277 (61.8)	490 (13.3)	916 (24.7)	3,683 (100)
2007	2,548 (64.0)	576 (14.5)	858 (21.5)	3,982 (100)
2008	2,875 (64.6)	690 (15.5)	888 (19.9)	4,453 (100.0)
2009	3,013 (66.3)	717 (15.8)	815 (17.9)	4,544 (100.0)

주: ( ) 안은 총신용카드 이용액 중 신용카드 거래종류별 이용액이 차지하는 비중  
자료: 여신금융업협회

2000년도 초반에는 현금서비스가 전체 신용카드 거래액의 50% 이상을 차지하였으나 점차 현금서비스 이용실적이 줄어들고 대금결제 기능이 강화되고 있다. 또한, 일시불과 할부구매는 지속적인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III. 부가가치세제의 문제점 및 발생원인 79

[그림 III-18] 신용카드 이용내역 현황 비교



자료: 여신금융업협회, 각 연도

IC 현금카드 발급현황을 기능별로 보면 현금카드 이외에 전자화폐, 체크카드, 신용카드 및 공인인증서 등의 부가가능이 있는 카드가 6,791만매로 총발급 매수의 93.7%를 차지하고 있다.

<표 III-26> 카드기능별 발급현황

(단위: 만매)

IC현금카드 총발급매수	현금카드 전용	현금카드기능 + 부가가능	전자 화폐	체크 카드	신용 카드	직불 카드	공인 인증서
7,247 (100.0)	456 (6.3)	6,791 (93.7)	974	3,101	2,139	82	2,860

주: ( ) 안은 구성비(%)

자료: 「2008년 12월 말 IC현금카드 발급현황」, 한국은행 보도자료(2009)

그러나 소비자 결제 환경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한 결과, 신용카드회사에 의하여 수입금액이 노출됨에도 실질 세수로 연결되지 못하고 체납되어 결국 결손처리되는 경우가 과다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신용카드 갭 등 신용카드를 이용한 불법사례 역시 기승을 부리고 있다. 신용카드 가맹의무자인 개인사업자의 체납률은 평균체납비율(약 12%)보다 오히려 높으며, 특히, 유흥음식점은 신용카드에 의하여 수입금액이 노출됨에도 체납이 과다하다.

〈표 III-27〉 신용카드 가맹의무자인 일반과세사업자(개인)  
체납상황(2008)

(단위: 명, %, 억원)

업종	사업자수	체납자수	체납자비율	체납건수	체납액
음식	194,684	28,708	14.7	51,942	621
사업서비스	132,287	19,788	14.9	48,131	1,226

자료: 국세청 통계

#### 마. 면세범위의 확대와 간이과세제도

지난 1977년 부가가치세법 제정 이후 지속적으로 면세대상이 추가되어 경제상황의 변화 등으로 인해 정당한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면세로 유지되고 있는 항목이 있다. 면세가 최종단계가 아닌 중간단계에서 이뤄질 경우에는 누적효과(Cascading Effect)에 의해 오히려 세 부담이 더 커질 수 있다. 전단계세액공제방식에 의한 부가가치세는 세금계산서를 통하여 근거과세를 실현하고 있으나 면세사업자와 간이과세자<sup>33)</sup>는 세금계산서의 작성 및 발행의무가 면제되므로 거래내역을 파악할 수 없어 근거과세원칙을 저해하고 있다. 또한 소규모사업자들의 매출 과소신고를 통한 부가가치세 탈루는 소득세 탈루로 이어지게 되어 근로소득자들과의 과세 형평성을 저해하게 된다. 소규모사업자의

33) 직전 연도의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가 4,800만원 이상 같은 금액의 100분의 1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를 말함.

Ⅲ. 부가가치세제의 문제점 및 발생원인 81

납세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도입된 간이과세제도<sup>34)</sup>는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간 과세불평등을 야기하고 있다.

부가가치세의 사업자유형별 점유비율을 살펴보면 2008년도의 신고인원은 일반과세자 52.5%, 간이과세자 37.5%, 법인사업자 10.0%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과세표준은 법인사업자 78.6%, 일반과세자 20.0%, 간이과세자 1.36%의 순이었다. 간이과세자의 경우 2008년의 신고인원은 184만명으로 전체 사업자의 37.5%를 차지하고 있으나 과세표준은 30조 2,411억원에 불과하여 징세효과는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Ⅲ-28〉 부가가치세 신고인원 및 과세표준 현황(20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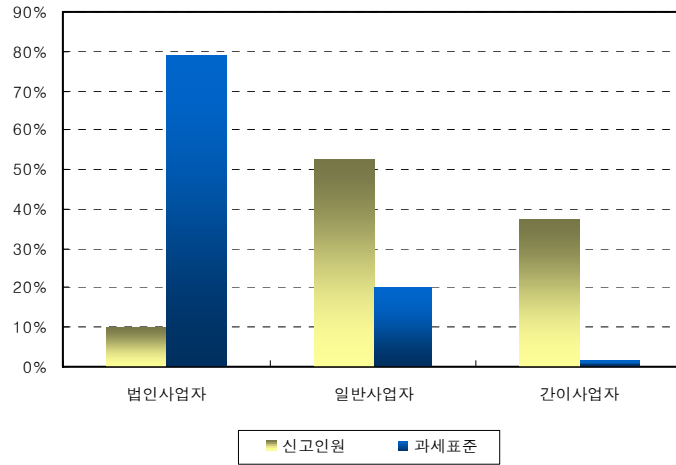
(단위: 명, 백만원, %)

	신고인원		과세표준	
	수	비중	금액(원)	비중
법인사업자	489,997	10.00	1,752,601,202	78.63
일반사업자	2,573,515	52.50	446,204,844	20.02
간이사업자	1,838,260	37.50	30,241,128	1.36
계	4,901,772	100	2,229,047,174	100

자료: 『국세통계연보』(2009)

34) 간이과세제도는 부가가치세 과세특례의 일종으로 일반적으로 기장 능력이 되지 않는 소규모 자영업자에 대하여 미리 정해진 업종별 부가가치율에 따라 간소한 방법으로 과세함으로써 소규모 사업자의 납세편의를 도모하려는 취지에서 운영된다.

[그림 Ⅲ-19] 사업자별 부가가치세 신고인원 및 과세표준 비중(2008)



자료: 『국세통계연보』(2009)

## IV.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제도」 국내외 사례

### 1. EU 지역

#### 가. 개요

「매입자 납부제도」에는 크게 협의의 개념과 광의의 개념 두 가지 종류가 있다. 협의의 개념은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제공받는 용역’ 이외에 기타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까지 확대하여 「매입자 납부제도」를 적용한다. 협의의 개념은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국내에서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에는 공급받는 자가 부가가치세 납부의 의무를 진다.

일반적인 경우에는 「매입자 납부제도」 적용대상 거래가 용역의 공급으로 한정되어 있다(협의의 개념). 그러나 EU 일부 국가에서는 탈세방지 목적으로 특정 재화 및 용역의 공급까지 이를 확대하여 실시하고 있다(광의의 개념)<sup>35)</sup>. 현재 27개 EU 회원국가 중 11개 국가에서 광의의 「매입자 납부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나 부가가치세 사기가 자주 발생하는 특정 재화 및 용역의 공급으로 그 대상이 제한되어 있다.

EU 차원에서 ‘행방불명 무역업자 사기(missing trader fraud)’에 대한 근절대책 중 하나로서 ‘전면적인 「매입자 납부제도」(general reverse charge)’ 도입이 검토되었으나, 2008년 12월에 국가 간에 정치적인 합의 부족으로 무산되었다<sup>36)</sup>.

---

35)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다. EU 내의 「매입자 납부제도」 확대적용 사례” 참조

36) COM(2008) 807, 2008. 12. 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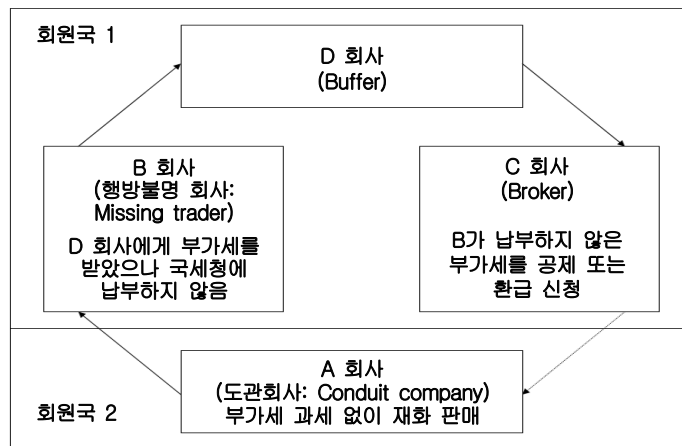
※ 행방불명 무역업자 사기(또는 회전목마 사기(Carousel Fraud))<sup>37)</sup>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EU 역내 취득(intra-community acquisition)<sup>38)</sup>”을 이용하여 부가가치세를 탈세하는 수법

작동원리

- A가 다른 EU 국가 내의 B에게 재화 공급
- B가 부가가치세 없이 재화를 공급받은 후, 이를 동일 국가 내의 C에게 공급
- B가 C에게 재화를 공급하는 때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나, 이를 납부하지 않고 무단폐업
- C가 B로부터의 매입에 대해 부가가치세 환급 신청
- 결국 C가 B에게 지급했던 부가가치세 금액만큼 세수의 손실 발생
- 이후 C가 동일 재화를 A에게 역내 공급하고, A가 이를 다시 B에게 역내 공급하는 방식으로 사기가 반복되기 때문에 이를 “회전목마 사기(carousel fraud)”라고 함
- 이와 같은 사기 행태에선 A와 C의 거리를 떨어뜨려 정상거래로서 위장하기 위해 중간에 다수의 인위적인 거래가 끼어들게 되는데, 이 때 이용되는 회사들을 이른바 “Buffer 회사”라고 함

[그림 IV-1] 행방불명 무역업자 사기 또는 회전목마 사기의 작동방법



자료: COM(2004) 260, 2004. 04. 16, p. 6.

#### IV.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제도」 국내의 사례 85

전면적인 「매입자 납부제도」는 모든 재화 및 용역의 거래(국내외거래 불문)에서 공급받는 자가 부가가치세 납부의 의무를 지는 제도로서 부가가치세 사기 위험이 높은 특정 재화 및 용역의 공급으로 그 대상이 제한되어 있는 현재의 「매입자 납부제도」와는 적용범위에서 차이가 있다. 부가가치세 사기에 의한 세수의 누실을 정확하게 계측하긴 어렵지만, 그 금액이 상당수준이란 사실에 대해서는 많은 EU 국가들이 공감하고 있다.<sup>39)</sup> 일부 EU 국가에선 부가가치세 사기에 의한 세수의 누실이 부가가치세 순수입의 약 10%에 달한다고 추정하고 있다. 특히, 행방불명 무역업자 사기의 경우 과거 수년에 걸쳐 꾸준히 그 건수가 증가하고 있는 바, EU 국가 간에 부가가치세 사기 근절 논의에서 주된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 나. EU 내의 논의 동향

#### 1) 추진경과

2006년 5월, EU 당국에서 부가가치세 사기를 방지하기 위한 공동대처전략으로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대안을 제시<sup>40)</sup>하였다.

- ① 현재의 부가가치세법 체계를 유지하되, 각국의 탈세방지 능력 제고(이를 소위 “전통적인(conventional) 대책”이라 함)
- ② 현재의 부가가치세 체계를 전면 개편하여 “국내거래”까지 확대하여 「매입자 납부제도」 적용(단, 각 국가별로 선택 가능; 이를 소위 “전면적인 「매입자 납부제도」(general reverse charge)”라고 함)

37) COM(2004) 260, 2004. 04. 16, pp. 5~6

38) EU 회원국가로의 수출이나 수입에 대해서는 역내공급 또는 역내취득이란 용어를 사용하고 있음

39) COM(2004) 260, 2004. 04. 16, p. 5

40) COM(2006) 254, 2006. 05. 31.

- ③ 현재의 부가가치세 체계를 전면 개편하여 재화의 역내 공급에 대해 출발지 국가에서 부가가치세 과세(현재에는 도착지 국가에서 부가가치세 과세)

이후 각국 대표가 EU 재무장관 회의(ECOFIN Council)의 의제로서 동 안건을 상정하였으며, 2007년 6월 5일, EU 재무장관 회의에서 세 번째 방안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였다. 두 번째 방안에 대해서는 많은 국가들이 시행 이후 오히려 더 많은 종류의 신종 부가가치세 사기 수법이 출현하게 될 것이라는 점을 들어 유보적인 입장을 취하였다. 그러나 최선의 결론에 도달하기 위해 두 번째와 세 번째 방안의 장단점에 대해 좀 더 심도 깊은 논의와 연구를 진행키로 하였다. 이에 대한 후속작업으로 만들어진 것이 바로 “COM(2008) 109 final”로서 두 번째 또는 세 번째 방안을 도입했을 때의 효과에 대해 구체적인 분석 자료를 제시하였다. 그러나 이후에 열린 EU 재무장관 회의에서 그 이전까지의 논의와는 달리 첫 번째 방안을 채택키로 합의가 이루어졌다.<sup>41)</sup> 이는 많은 국가들이 부가가치세 체계의 전면적인 개편보다 기존 체도의 틀을 유지하는 단기적인 액션 플랜을 선호하는 보수적 입장을 고수한 결과로 보인다.

- 2) “전면적인 「매입자 납부제도」(general reverse charge) 도입에 관한 논의<sup>42)</sup>

#### 가) 개 요

2007년 6월 5일 EU 재무장관 회의 이후 “전면적인 「매입자 납부제도」 도입으로 인한 효과 및 영향에 대해 심도 깊은 논의와 연구가 이

41) COM(2008) 807, 2008. 12. 01.

42) COM(2008) 109, 2008. 02. 22.

#### IV.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제도」 국내의 사례 87

루어졌다. 그 결과가 「COM(2008) 109」에 요약되어 있는바, 다음과 같은 네 개 항목으로 나눠 「매입자 납부제도」 도입으로 인한 효과를 분석하였다.

- ① 「매입자 납부제도」 도입으로 인해 새롭게 출현하게 될 부가가치세 사기 유형의 예측 및 이에 대한 대응방안
- ② 「매입자 납부제도」 도입으로 세무당국 및 기업이 부담하게 될 비용
- ③ 「매입자 납부제도」 도입이 다른 EU 회원국에 미칠 영향
- ④ 「매입자 납부제도」 도입이 EU 내의 부가가치세법 통합(조화) 작업에 미칠 영향

먼저, EU 당국에서 논의의 대상으로 한 전면적인 「매입자 납부제도」 설계방식부터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5,000유로 이상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공급받는 자가 부가가치세 납부의 책임을 진다. 그러나 공급받는 자가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구입에서 발생하는 부가가치세를 전액 공제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졌다면 사실상 납부해야 할 부가가치세가 “0”이 되는데, 별도로 세금을 납부해야 할 필요가 없다. 전면적인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제도」 B2B(Business to Business) 거래에만 적용되는데, 개인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통상적인 부가가치세법 규정에 따라 공급자가 부가가치세 납부의 책임을 진다.

둘째, 국가별로 전면적인 「매입자 납부제도」 적용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

<표 IV-1> 일반적인 부가가치세 징수체계와 「매입자 납부제도」 비교

① 사례

A (제조업자)	B (도매업자)	C (소매업자)	D (최종고객)
→		→	
공급가격 1,000 VAT 100		공급가격 2,000 VAT 200	
		공급가격 3,000 VAT 300	

② 부가가치세 징수방식

	일반적인 경우	「매입자 납부제도」
A	B에게 재화를 공급하는 때 부가가치세 100을 거래징수하여 납부해야 함	B에게 재화를 공급하는 때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해야 할 의무가 없음
B	C에게 재화를 공급하는 때 부가가치세 200을 거래징수하나, A로부터의 매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100을 공제받기 때문에 순액으로 100을 납부하면 됨	A에게 공급받은 재화에 대해 부가가치세 100을 납부해야 하나, 매입세액으로 100을 공제받기 때문에 사실상 납부해야 할 세금이 없음
C	D에게 재화를 공급하는 때 부가가치세 300을 거래징수하나, B로부터의 매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200을 공제받기 때문에 순액으로 100을 납부하면 됨	B에게 공급받은 재화에 대해 부가가치세 200을 납부해야 하나, 매입세액으로 200을 공제받음. 그러나 D가 사업자가 아니기 때문에 재화를 공급하는 때 부가가치세 300을 거래징수 해야 함.

③ 납부세액

	일반적인 경우			「매입자 납부제도」		
	A	B	C	A	B	C
가. 매출세액	100	200	300			300
나. 대리납부세액					100	200
다. 매입세액		100	200		100	200
라. 최종 납부세액 (가+나-다)	100	100	100		0	300

④ 비교

- 일반적인 부가가치세 징수체계하에서는 각각의 거래단계별로 부분적인 부가가치세의 징수가 이뤄지나(A, B, C가 각각 100씩 부가가치세 납부), 「매입자 납부제도」하에서는 최종 소비단계에서 단 한 번 부가가치세의 징수가 이루어짐(C가 300의 부가가치세를 한꺼번에 납부)

#### IV.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제도」 국내의 사례 89

나) 「매입자 납부제도」 도입으로 새롭게 출현하게 될 부가가치세 사기 유형 및 이에 대한 대처방안

「COM(2008) 109」에서는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어 전면적인 「매입자 납부제도」 도입 이후에 오히려 기존의 부가가치세 사기가 더욱 증가하게 될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 소매부문으로 부가가치세 사기가 집중되는 현상

「매입자 납부제도」하에서는 최종 소비단계에서 부가가치 총액에 대해 단 한 번 부가가치세 징수가 이뤄지는데, 부가가치세 세수의 잠재적인 손실이 현재의 부가가치세 체계보다 커질 수 있다. 기존의 부가가치세 징수체계하에서는 각각의 거래단계별로 부분적인 징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특정 단계에서 사기가 발생하더라도 그 금액이 전체 공급사슬에서 발생하는 부가가치세의 일부에 불과하다. 그러나 「매입자 납부제도」하에서는 최종 소비단계에서 단 한 번 부가가치세 징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단 한 번의 사기만으로도 전체 공급사슬에서 발생하는 부가가치세 전부를 징수하지 못 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따라서 소매부문으로 세무조사 노력이 집중되어야 하나, 소매부문에는 숫자 및 규모, 지위 때문에 조사가 쉽지 않은 경제주체들이 모여 있어 탈세의 위험이 높다.

○ 부가가치세등록번호의 불법도용(hijacking) 문제

「매입자 납부제도」하에서는 사업자가 아닌 개인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시점까지의 부가가치 총액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한꺼번에 과세되는 것이 특징이다. 즉, B2B 거래에 대해서는 사실상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 모두에게 부가가치세 납부의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바, 거래의 실질이 B2C 거래인데 불구하고 사업자등록번호를 불법 도용하여 B2B 거래로서 위장하는 사례가 있을 수 있다.

○ 실제 거래금액보다 낮춰 허위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는 문제  
일반적인 부가가치세 징수체계하에서는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

는 자(공급자)와 매입세액 공제 신청을 하는 자(공급받는 자)가 서로 다른바, 공급자가 올바르게 부가가치세를 신고해야 공급받는 자가 동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다(cross-checking 기능). 그러나 「매입자 납부제도」하에서는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는 자(공급받는 자)와 매입세액 공제 신청을 하는 자(공급받는 자)가 동일하기 때문에 실제 거래금액보다 낮춰 허위로 VAT 신고를 할 확률이 높다.

○ 「매입자 납부제도」 도입을 선택하지 않은 다른 EU 국가들로 행방불명 무역업자 사기가 이전되는 현상으로 「매입자 납부제도」 자체의 문제라기보다 「매입자 납부제도」 도입이 국가 간에 선택사항이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이다.

○ 최저금액(5,000유로) 요건을 회피하기 위한 인위적인 거래가액을 분할하는 문제로 「매입자 납부제도」 자체의 문제라기보다 최저금액 요건을 두고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

전면적인 「매입자 납부제도」 도입 이후 출현하게 될 새로운 유형의 부가가치세 사기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으로 「COM(2008) 109」에서는 다음과 같은 전략을 제시하였다.

- 모든 EU 국가에서 「매입자 납부제도」를 의무적으로 도입한다. 선택사항으로 하는 경우에는 국가 간에 부가가치세 사기가 이전되는 현상이 발생한다.
- 최저금액 요건 폐지 또는 기준금액(5,000유로)을 하향조정한다. 거래가액 분할 등을 통해 「매입자 납부제도」 적용을 회피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 모든 국내 거래에 대해 매월 매출·매입명세 제출의무를 부여한다. 인위적인 거래분할 등을 통해 「매입자 납부제도」 적용을 회피하는 사례를 감시하기 위해 최저금액 이하의 거래에도 거래명세의 제출의무를 부여한다.
- 대리납부방식으로 매입을 할 수 있는 자를 식별하기 위한 특수

#### IV.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제도」 국내의 사례 91

신분확인방식을 도입한다. 순수 지주회사(pure holdings) · 위장 회사(sham company) · 사업장이 없는 과세자 · 최종 고객(end customer) 등에 의한 부가가치세 등록번호에 대한 불법도용을 방지하고자 함이다.

- 새로운 데이터마이닝(data-mining) 도구 또는 위험지표(risk indicator)를 도입한다.
- 사업자등록(registration) 및 사업자등록취소(de-registration) 규정을 개선한다. B2B 거래에만 「매입자 납부제도」 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등록 여부 및 이에 대한 확인이 중요하다.
- EU 국가 간에 정보교환을 증진한다.
- 선의의 사업자를 식별하기 위해 전자 ID카드를 도입한다.

다) 「매입자 납부제도」 도입으로 기업 및 세무당국에서 부담하게 될 비용분석

① 「매입자 납부제도」 도입으로 기업이 부담하게 될 비용

20개 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실시 결과, 「매입자 납부제도」 도입으로 기업이 부담하게 될 추가비용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 IT 시스템 변경이나 개조 등에 소요되는 비용
- 모든 고객의 VAT 지위를 확인하고, 검토하는 데 드는 비용
- 행정 · 관리절차 변경에 드는 비용
- 직원훈련비용
- 추가적인 보고의무(예를 들면 매출 · 매입명세 전자신고) 또는 장부기장의무 이행에 드는 비용 등

설문조사 결과 많은 기업들이 「매입자 납부제도」 도입으로 상당히 높은 추가비용이나 행정부담 등이 발생하게 될 것이라고 예상하였으며, 원가-효익 측면에서 살펴봤을 때 「매입자 납부제도」 도입이 부적절한 조치라고 평가하였다. 특히, 5,000유로 이상의 거래를 식별하고,

모든 고객의 VAT 지위를 확인하는 데에 상당히 많은 비용이 들 것이라고 예상하였다.

그러나 현금흐름 측면에서 살펴보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때 기업이 더 이상 부가가치세를 미리 조달해야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유리한 현금흐름의 효과가 발생한다. 기업 입장에서는 이것이 상당한 장점이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은 이와 같은 장점보다는 「매입자 납부제도」 도입으로 인해 부담하게 될 추가비용 쪽에 더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이 이외에도 「매입자 납부제도」 도입이 기업에 미칠 수 있는 영향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 「매입자 납부제도」 도입으로 부가가치세법 규정이 이전보다 복잡해져 신고오류 또는 불부합 건수가 증가할 것이다.
- 고객의 VAT 지위를 잘못 파악하여 「매입자 납부제도」 적용이 잘못 되었다면 공급받는 자가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이로 인한 잠재적인 위험이 증가할 것이다.
- 여러 국가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다국적기업의 경우에는 국가별로 다른 부가가치세 징수방식 때문에 추가적인 원가부담 및 혼란이 발생(즉, 국제거래 저해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② 「매입자 납부제도」 도입으로 세무당국에서 부담하게 될 비용 전체 EU 국가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많은 국가들이 「매입자 납부제도」 도입 첫 해에 IT 시스템 변경, 대(對)국민 홍보활동, 기존직원 훈련 및 신규직원 채용 등에 추가적인 비용이 들 것이라고 응답하였다. 「매입자 납부제도」 도입 첫 해에 현재의 VAT 시스템 관리에 드는 비용의 약 21%에 해당하는 비용이 추가적으로 소요될 것이라고 예측하였다. 그러나 일부 국가들은 「매입자 납부제도」 도입으로 회전목마 사기가 줄고, 매입세액 공제에 대한 관리가 개선되어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세무행정 부담이 경감될 것이라고 예측하였다.

#### IV.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제도」 국내의 사례 93

한편 징수형태 변경과 관련하여서는 많은 국가들이 우려를 표명하였다. 많은 국가들이 「매입자 납부제도」 도입이 중간 유통단계에서 사기를 제거하지 못한 채 단지 사기의 위험을 최종단계까지 이전하는 역할을 하는바, 소매부문에서 탈세가 이전보다 증가하게 될 것이라고 예측하였다. 이론적인 측면에서 살펴보면 징수 형태의 변경이 부가가치세 세수 총액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다. 기존의 VAT 징수체계하에서는 각 거래단계별로 부분적인 징수가 이뤄지는 반면 「매입자 납부제도」하에서는 최종 소비단계에서 일시에 징수가 이루어진다는 차이가 있을 뿐 공급사슬 전체를 놓고 보면 징수되는 부가가치세 총액이 동일하다. 그러나 소매부문에는 통제가 쉽지 않고, 통제에 비용이 많이 드는 수많은 소규모 사업자가 몰려있는 바, VAT 시스템 관리에 드는 비용이 지나치게 증가하고, 세금을 제대로 징수하는 데 문제가 생길 확률이 높다고 우려하였다.

부가가치세 제도의 이점 중 하나가 적은 수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세수의 대부분을 기한에 맞춰 납부하며 아주 적은 세무행정 노력 및 비용이 드는 점이라고 할 수 있는바, 「매입자 납부제도」 도입으로 부가가치세 징수의 책임이 상당 부분 소매부문으로 이전되면 이와 같은 이점이 크게 퇴색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한 EU 국가에서 수행한 연구의 결과에 의할 경우, 「매입자 납부제도」 도입으로 대기업이 납부하는 부가가치세가 22%포인트가량(47%→25%) 감소하는 반면 소기업이 납부하는 부가가치세가 32%포인트가량(33%→1%)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다. EU 내의 「매입자 납부제도」 확대적용 사례

##### 1) 개요

가) 「국내매입자 납부제도」(Domestic Reverse Charge) 도입 현황  
일반적인 경우에는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

인”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라야 「매입자 납부제도」의 적용이 가능하다(협의의 개념). 그러나 일부 EU 국가에서는 탈세방지 목적으로 “국내에 사업장이 있는 거주자 또는 국내법인”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에도 특별히 매입자 납부방식으로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고 있는바, 이를 「국내매입자 납부제도(domestic reverse charge)」라고 한다(광의의 개념). 현재 27개 EU 회원국가 중 11개 국가에서 「국내매입자 납부제도」를 운영중이다.

「국내매입자 납부제도」 도입에 가장 적극적인 국가는 영국이다. 영국의 경우 회전목마 사기를 방지하기 위해 2007년 6월 1일부터 “£5,000 이상의 휴대폰 및 컴퓨터칩 공급”에 대해 매입자 납부방식으로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고 있다.

그러나 영국 외에 다른 EU국가에도 제한적인 형태이긴 하나, 특정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 공급받는 자가 부가가치세 납부의 의무를 지는 국내매입자납부규정이 있다. 가장 대표적인 「국내매입자 납부제도」 적용대상 품목으로 “투자금(investment)”을 들 수 있다. 일부 EU 국가들은 투자금 이외에도 건설공사, 담보·압류·법원결정으로 인한 재화의 이전, 중고자재·폐기물·고철, 부동산, 목재, 의류 등의 공급에 대해 매입자 납부방식으로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고 있다.

#### ※ 투자금에 대한 「국내매입자 납부제도」

- 보통 투자금의 공급·역내취득·수입에 대해서는 EU Directive 98/80/EC에 의거 2000년 1월 1일부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고 있음
- 그러나 투자금을 제조하는 과세자, 금을 투자금으로 전환하는 과세자, 산업 목적으로 통상 금을 공급하는 과세자가 다른 과세자에게 투자금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면세 포기 가능
- 투자금의 공급에 대해 부가가치세 과세 옵션을 선택하는 경우에는 매입자 납부방식으로 부가가치세 과세가 이루어짐
  - 즉, 공급받는 자가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할 의무를 지는 대신 이에 상응하는 부가가치세를 자신의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음
- 현재 벨기에, 스웨덴, 스페인, 네덜란드, 라트비아, 핀란드 등이 VAT 과세 대상 투자금의 공급에 대해 「국내매입자 납부제도」 운영중

IV.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제도」 국내의 사례 95

〈표 IV-2〉 EU의 「국내매입자 납부제도」 도입현황

국가	투자금	건설 공사	담보·압류 · 법원명령	중고자재· 폐기물· 고철	부동산	기타
영국						○ (휴대폰· 컴퓨터칩)
독일		○	○		○	
AU		○	○	○		
벨기에	○					
스웨덴	○	○	○			
스페인	○					
루마니아		○	○	○	○	○(원목)
네덜란드	○	○			○	○ (조선, 의류)
라트비아	○					○(목재)
이탈리아				○		
핀란드	○					

자료: www.ibfd.org

나) 유사제도 적용 사례

회전목마 사기를 근절하기 위해 각국이 추진하고 있는 정책에는 국가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다. 영국의 경우 회전목마 사기에 주로 이용되는 제품(즉, 휴대폰 및 컴퓨터칩)에 대해 대리납부방식으로 부가가치세를 징수함으로써 공급자와 매입자가 공모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하는 사례를 방지하고 있다. 반면 독일과 프랑스의 경우에는 공급자와 매입자가 공동으로 부가가치세 납부의 의무를 지게 함으로써 양측이 공모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하는 사례를 방지하고 있다.

○ 독일의 연대납세의무<sup>43)</sup>

공급자가 고의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았으며, 공급받는 자가 매입계약체결 당시 공급자의 탈세 의도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was or should have been aware of the issuer's fraudulent intention) 공급받는 자가 부가가치세 납부의 의무를 지며, 2004년 1월 1일부터 적용되었다.<sup>44)</sup>

○ 프랑스의 연대납세의무<sup>45)</sup>

공급받는 자가 “당해 재화의 공급과 관련하여 또는 이전의 공급단계에서 부가가치세의 일부 또는 전부가 미납되었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모를 수 없는 경우(where the customer knew or could not be unaware that some or all the VAT payable in respect of that supply, or on any previous supply of those goods would be unpaid)”에는 공급받는 자가 단독으로 또는 공급자와 연대하여 당해 재화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의 책임을 지며, 2007년 1월 1일부터 적용하고 있다.

2) EU 국가들의 적용 사례<sup>46)</sup>

## 가) 영국

2007년 6월 1일 이후 영국 국내에서 이뤄지는 £5,000 이상의 휴대폰 및 컴퓨터칩 제품의 B2B 거래에 대해서는 공급받는 자가 부가가치세 납부의 의무를 진다.

---

43) [www.ibfd.org](http://www.ibfd.org)

44) 해당 재화를 통상적인 시가보다 낮은 가격에 구매하였거나 공급사슬상에 위치하는 이전의 공급자 중 하나가 통상적인 시가보다 낮은 가격에 재화를 구매한 사실을 알고 있는 경우, 탈세의 의도를 알 수 있었다고 간주함.

45) [www.ibfd.org](http://www.ibfd.org)

46) 투자금 외에 기타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 매입자 납부방식으로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고 있는 EU 국가(영국 제외)만을 정리했음.

#### IV.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제도」 국내의 사례 97

##### 나) 독일<sup>47)</sup>

다음과 같은 거래에 대해서는 공급자가 아닌 공급받는 자가 부가가치세 납부의 의무를 진다.

- 부동산의 강제매각(compulsory sale)
- 담보(security right)의 실행으로 인한 재화의 공급
- 부동산을 다른 과세자에게 공급하는 경우(2004년 4월 1일부터 적용)
- 특정 건설 활동(2004년 4월 1일부터 적용)

##### 다) AU<sup>48)</sup>

다음과 같은 거래에 대해서는 공급자가 아닌 공급받는 자가 부가가치세 납부의 의무를 진다.

- 특정 건설공사(construction work service):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개별 건설공사 용역<sup>49)</sup>의 공급을 지시 받았거나 그 자신을 위해 개별공사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 담보·압류·법원명령으로 인한 재화의 이전: 개별 재화가 담보(security), 권리의 압류(retention of title), 법원의 명령으로 이전되는 경우
- 중고자재·고철·폐기물의 공급: 재정부령에서 정한 중고자재(used material)·고철(scrap)·폐기물(waste)을 기업에게 공급하는 경우로 2007년 7월 1일부터 적용되며, 「국내매입자 납부제도」 적용의 대상이 되는 중고자재 등의 범위에 대해서는 재정부령 BCB1129/2007에서 열거하고 있다.

---

47) [www.ibfd.org](http://www.ibfd.org)

48) [www.ibfd.org](http://www.ibfd.org)

49) 건설공사 용역의 범위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바, 건물의 건설·유지·수리·개조 또는 철거와 관계되는 모든 용역 포함(개별 인력이 건설공사 용역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인력의 공급까지 포함)

라) 스웨덴<sup>50)</sup>

특정 건설공사 용역<sup>51)</sup>의 공급(일시적인 건설공사 용역의 공급이나 매입 제외), 투자금의 공급과 같은 거래에 대해서는 공급자가 아닌 공급받는 자가 부가가치세 납부의 의무를 진다.

마) 루마니아<sup>52)</sup>

전통적인 「매입자 납부제도」 이외에도 일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 「국내매입자 납부제도(domestic reverse charge)」를 시행 중이다. 폐기물, 건물, 건물의 일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토지, 건설공사, 원목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공급받는 자가 부가가치세 납부의 의무를 진다. 또한 파산자가 법원의 최종 판결에 의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도 공급받는 자가 부가가치세 납부의 의무를 진다.

바) 네덜란드<sup>53)</sup>

다음과 같은 거래에 대해서는 공급자가 아닌 공급받는 자가 부가가치세 납부의 의무를 진다.

- 특정 하청계약(subcontract): 건축(building)·강철 구조물(structural steelwork)·조선(shipbuilding) 및 의류(신발 제외)산업으로 한정
- 부동산의 공급에 대해 면세의 적용을 포기하는 경우
- 투자금의 공급

50) [www.ibfd.org](http://www.ibfd.org)

51) 건설공사 용역의 범위에는 토지 및 기반작업(주택의 철거, 토지조사 등), 건설작업(주택의 건설, 건축물의 건설, 도로의 건설), 건설설치작업(전기 설비, 단열재, 용수 및 환기작업), 건물의 마감작업(초벌 칠, 외관 작업, 목공, 바닥 및 벽의 도배작업, 페인트칠 및 유리작업), 건설 후 청소, 건설·설비기계 임대, 상기의 서비스를 위한 인력의 임대 등이 속함.

52) [www.ibfd.org](http://www.ibfd.org)

53) [www.ibfd.org](http://www.ibfd.org)

#### IV.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제도」 국내의 사례 99

##### 사) 라트비아<sup>54)</sup>

다음과 같은 거래에 대해서는 공급자가 아닌 공급받는 자가 부가가치세 납부의 의무를 진다.

- 목재(관련 서비스 포함)의 공급: 라트비아 국내에서 목재(관련 서비스 포함)를 공급하는 경우로서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가 모두 과세자에 해당하는 경우
- 특정 금의 공급

##### 아) 이탈리아<sup>55)</sup>

고철(scrap metal), 폐지(waste paper), 기타 폐기자재(scrap material) 공급에 대해 「국내매입자 납부제도」 적용하고 있다.

##### 자) 터키<sup>56)</sup>

터키의 경우 특정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 부가가치세 중 일부 공급받는 자가 원천징수하는 제도가 있다. 일반적인 「국내매입자 납부제도」와는 그 개념이 조금 다르기는 하나, 운영방식이나 기대되는 효과 측면에선 유사하다.

국가 및 지역 공공기관, 대학, 민영화 대상 공공기관(institution subject to privatization), 정부가 51% 이상 지분을 갖고 있는 회사가 아래의 용역을 제공받은 경우에는 공급받는 자가 부가가치세 중 일부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 감사, 자문, 직원급식: 50% 원천징수

---

54) [www.ibfd.org](http://www.ibfd.org)

55) [www.ibfd.org](http://www.ibfd.org)

56) [www.ibfd.org](http://www.ibfd.org)

- 기계장치·장비·기타 고정자산(자동차 제외) 유지보수 및 수선  
용역: 1/3 원천징수
- 청소, 건설, 민간경비: 각각 2/3, 1/6, 4/5 원천징수  
은행이 아래의 용역을 제공받은 경우에는 공급받는 자가 부가가치  
세 중 일부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 감사, 자문, 직원급식, 정원관리, 건물의 유지보수 용역: 50% 원  
천징수
- 기계장치, 장비 및 기타 고정자산(자동차 제외) 유지보수 및 수  
선용역: 1/3 원천징수
- 청소·건설용역: 각각 2/3, 1/6 원천징수

IMKB(Istanbul Menkul Kıymetler Borsası) 상장회사가 직원급식·건물의 유지보수·청소·정원관리·건설 등과 같은 용역을 제공받은 경우에는 공급받는 자가 부가가치세 중 일부를 원천징수해야 하며, 민간경비 및 건물의 유지보수 용역에 대해서는 공급받는 자가 각각 부가가치세의 4/5와 50%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 2. 영국의 사례

### 가. 「국내매입자 납부제도」 도입배경<sup>57)</sup>

영국은 행방불명 무역업자 사기를 차단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해 오고 있다. 2000년 9월, 영국정부는 부가가치세 사기 혐의가 있는 거래의 적발과 탈세업자 기소·탈루세액 추징을 위해 범국가적 차원의 전략을 추진하였다. 이를 위해 사업자등록 신청에 대한 조사 강화, 부가가치세법 상습 위반자에 대한 형사기소 강화, 부가가치세 환급 신

57) <http://www.hmrc.gov.uk/ria/vat-reversecharging.pdf>  
Standard Report on the Accounts of HM Revenue and Customs:  
VAT Missing Trader Fraud, 2007.07.

IV.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제도」 국내외 사례 101

청에 대한 보류조치(탈세가 의심되는 자에 한함), EU 및 기타 국가와의 정보교환 확대 등과 같은 다각적인 조치를 시행하였다.

이로 인해 2002~2003연도와 2003~2004연도에는 행방불명 무역업자 사기가 감소하였으나, 2005~2006연도에는 다시 역대 최고 수준으로 증가하였다. 영국 정부의 부가가치세 환급 보류 조치가 EU 법규 위반이라는 EU 법원의 판결(2006.01.12)<sup>58)</sup> 이후 행방불명 무역업자 사기가 다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영국 국세청의 추정에 따르면 경우 2005~2006연도 동안 약 £3.5조~£4.5조 상당의 세수와 관계되는 회전목마 사기가 영국에서 시도되었으며, 이 중 상당 부분이 사전에 차단됐음에도 불구하고 약 £2조~£3조의 부가가치세 세수 손실이 발생하였다.

〈표 IV-3〉 행방불명 사기로 인한 세수손실 추정금액

(단위: 조파운드)

회계연도	최저추정금액	최고추정금액
1999~2000	1.17	2.29
2000~2001	1.31	2.47
2001~2002	1.72	2.53
2002~2003	1.54	2.34
2003~2004	1.06	1.73
2004~2005	1.12	1.90
2005~2006	2.00	3.00

자료: 영국 국세청

정부의 다각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탈세거래 규모가 증가하자 영국 정부는 추가적인 탈세방지조치를 단행하였다. 2005년 12월, 행방불명 무역업자 사기에 자주 이용되는 재화에 대해 「국내매입자

58) Optigen Ltd, Fulcrum Electronics Ltd and Bond House Systems v Commissioners of Customs & Excise, 2006.01.12.

납부제도」의 도입을 허가하여 줄 것을 EU위원회에 요청하였는데, 이는 제6차 EU VAT Directive에선 공급자에 의한 부가가치세 납부를 원칙으로 하고 있는바, 「국내매입자 납부제도」 도입을 위해서는 EU 위원회의 승인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영국에서 행방불명 무역업자 사기에 가장 흔히 이용되는 재화로는 손쉽게 휴대가 가능하고, 낮은 가격에 대량으로 운송이 가능하며, 가격이 높은 휴대폰·컴퓨터 부품·MP3 플레이어·디지털 카메라 등이 있다. 과거의 기록에 의할 경우 휴대폰 및 컴퓨터칩 제품이 회전목마 사기가 의심되는 거래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07년 4월 16일, EU위원회가 「국내매입자 납부제도」 시행에 관한 영국 정부의 요청을 승인하였다. 다만, 영국 정부에서 최초 요청했던 것과 달리 「국내매입자 납부제도」 적용가능 품목을 휴대폰 및 컴퓨터칩으로 제한하였고, 2009년 12월 31일이라는 일몰기간<sup>59)</sup> 및 최저금액 요건 (£5,000) 설정하였다.

#### 나. 회전목마 사기의 진화과정 및 이에 대한 영국 정부의 대응<sup>60)</sup>

회전목마 사기의 가장 간단한 형태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 ① 영국의 사업자 A가 다른 EU 회원국의 사업자로부터 £1,000,000에 면세(VAT free) 휴대폰 구입한다. 부가가치세 목적상 EU 회원국에 소재하는 부가가치세 등록사업자 간의 공급에 대해서는 영세율이 적용되고 있다.
- ② A가 휴대폰을 다른 영국의 사업자(흔히 “Buffer”라고 함)에게 부가가치세 £157,500 (£900,000×17.5%)을 포함하여 £1,057,500

59) 일몰기한 만료시점에서 계속적용 여부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질 예정

60) Standard Report on the Accounts of HM Revenue and Customs: VAT Missing Trader Fraud, 2007.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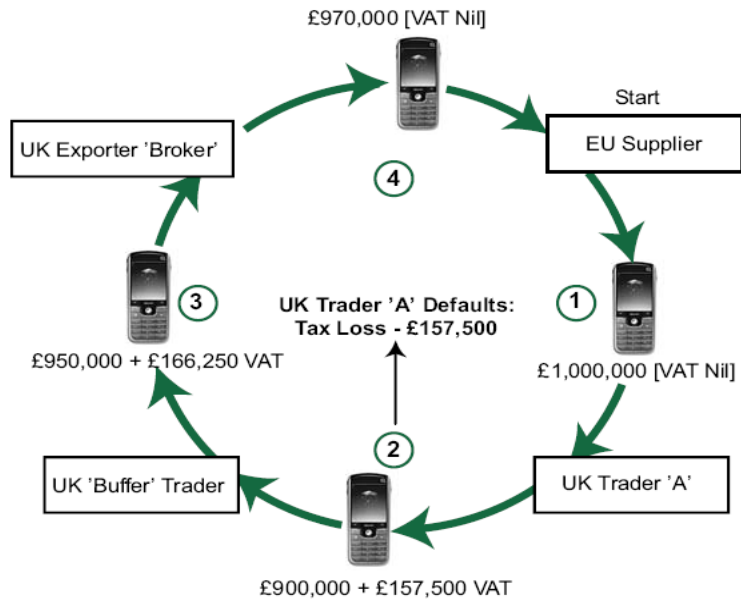
IV.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제도」 국내의 사례 103

에 판매하고, 부가가치세 £157,500을 국세청에 납부하지 않은 채 행방불명 상태가 된다. 보통 회전목마 사기에선 거래의 실질을 위장하기 위해 공급사슬 중간에 버퍼의 역할을 하는 다수의 회사가 개입하게 된다. 또한 연쇄적인 원가의 상승을 막기 위해 가격을 낮춘다(£1,000,000→£900,000).

- ③ 영국 국내의 버퍼 사업자가 수출업자(흔히 “broker”라고 함)에게 부가가치세 £166,250(£950,000×17.5%)을 포함하여 £1,116,250에 휴대폰을 판매하고, 당해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166,250을 영국 국세청에 납부한다.
- ④ 영국의 수출 브로커가 다른 EU 회원국의 사업자(최초 공급자)에게 £970,000(영세율)에 휴대폰을 재판매하고, 영국 국세청에 버퍼 사업자가 납부했던 부가가치세 £166,250의 환급을 신청한다. 수출 브로커가 부가가치세를 환급받게 되면 A가 납부하지 않은 부가가치세 £157,500만큼 세수의 손실이 발생한다.

영국 정부에서는 탈세업자들이 부가가치세 사기 직후 곧바로 무단 폐업하는 것이 아니라 부가가치세의 최종납부기한까지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이에 대한 대응전략 마련하였다. 즉, 부가가치세 사기 혐의가 있는 사업자를 발견하면 며칠 내에 직권으로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종료를 명령하고, 해당 기간의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토록 하였다.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단축으로 인해 사업자등록 취소, 조건부청산(provisional liquidation) 등과 같은 후속조치들이 보다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게 되었으며, 탈세업자들이 부가가치세 사기 행위를 지속함으로써 세수의 손실이 누적되는 것을 막을 수 있게 되었다.

[그림 IV-2] 행방불명 무역업자 사기의 가장 간단한 형태(사례)



자료: National Audit Office

초기에는 주로 EU 국가를 이용하여 회전목마 사기가 이루어졌으나, 정부의 감시가 강화되자 EU 밖의 국가를 이용하여 회전목마 사기를 저지르는 신종 사기수법이 등장하였다. 2005년 들어 EU 밖의 국가(예를 들면 스위스, 두바이 등)에 대한 영국 내 휴대폰 수출이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제3국을 이용하는 경우, 재화의 이동경로 추적 및 supply chain의 인위성 입증은 쉽지 않은 점을 이용한 것이다. EU 역내에서 이뤄지는 거래에 대해서는 EU 법규에 따라 관련 국가의 관세청 및 국세청으로부터 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는 반면 EU 밖의 국가가 개입되는 경우에는 비공식약정을 통해 협조를 요청해야 하기 때문에 조사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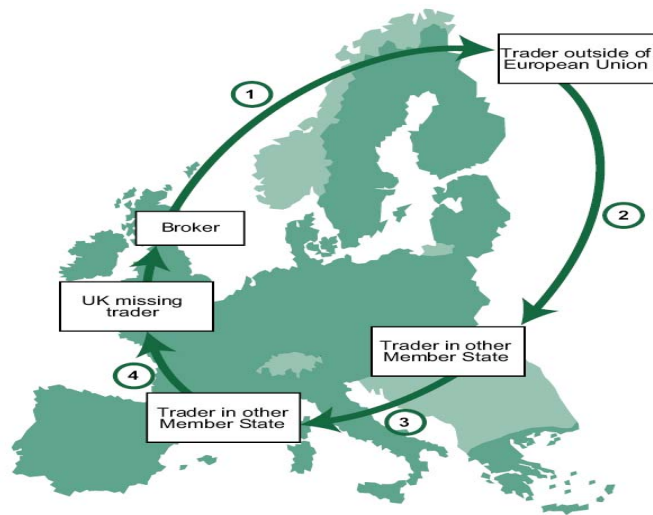
EU 밖의 국가를 이용하여 이뤄지는 회전목마 사기의 사례를 간단

IV.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제도」 국내외 사례 105

하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영국의 supply chain의 가장 끝에 있는 브로커가 EU 밖의 제3국에 재화를 수출하고, 국세청으로부터 매입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 권리를 획득한다.
- 몇 시간 내에 제3국에서 EU역내 지역으로 재화의 재반입이 이루어진다. 일단 EU 역내 지역으로 반입되면 최종적인 도착지 국가(영국)에 도착하기 전까지는 수입관세 납부를 이연받을 수 있다.
- 거래의 실질을 위장하기 위해 다른 EU 국가에 소재하는 여러 사업자를 거쳐 영국으로 재화의 반입이 이루어진다.
- 부가가치세 목적상 EU 회원국에 소재하는 부가가치세 등록 사업자 간의 공급에 대해서는 영세율이 적용되고 있는바, 영국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은 가격으로 재화를 역내취득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림 IV-3] 제3국(EU 외의 국가)을 통한 회전목마 사기



자료: National Audit Office

영국 정부는 이러한 제3국을 통한 회전목마 사기에 대처하기 위해 스위스 및 두바이로의 휴대폰 수출에 대해 관리감독 및 감시를 강화하였다. 먼저 영국의 각 항만에서 휴대폰의 실제 수량과 수출서류상의 내용이 일치하는지에 대해 대조작업 실시하였다. 또한 날인을 찍어 포장하고, 휴대폰의 고유 식별 번호 및 바코드를 스캔하는 작업을 실시하였다. 영국 정부가 시범삼아 272,000개의 휴대폰을 스캔해본 결과, 이 중 36,000개(13%)가 이전에 영국에서 날인이 이루어진 것으로 판명되었다. 스캐너의 사용으로 재화의 순환적인 판매에 대해 손쉽게 입증이 가능해졌으며, 제3국을 통한 회전목마 사기의 방지에도 탁월한 효과를 발휘하였다. 이와 같은 조치의 실행 이후, 스위스와 두바이에 대한 휴대폰 및 컴퓨터칩 수출이 상당 수준으로 감소하는 효과가 발생하였다.

한편 영국 정부가 탈세업자들의 사업자등록을 막기 위해 신규 사업자등록신청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자,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기존의 회사를 인수하여 사업자등록사항을 변경하는 방식으로 국세청의 조사를 회피하는 신종 사기수법이 등장하였다. 이에 대한 대응전략으로 영국 정부에선 2005~2006년도에 사업양수도가 진행중에 있는 약 5만여 건에 대해 신규 사업자등록 신청과 같은 방식으로 위험평가를 수행하였다. 또한 일선의 사업자등록부서가 의심스런 사업자등록사항 변경신청을 식별하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게 신규지침을 만들었다.

#### 다. 구체적인 「매입자 납부제도」 운영방식<sup>61)</sup>

##### 1) 개요

부가가치세 등록사업자(VAT-registered business)가 £5,000 이상의 휴대폰 및 컴퓨터칩 제품을 사업자(영국에서 부가가치세 등록을 하

61) VAT: Reverse charge for purchases and sales of mobile phones and computer chips, VAT Information Sheet 08/07, May 2007, HMRC

IV.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제도」 국내외 사례 107

였거나 할 수 있는 자)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Value Added Tax Order 2007」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받는 자가 부가가치세 납부의 책임을 진다. 그러나 휴대폰 및 컴퓨터칩 제품의 가격이 £5,000에 미달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등록을 하지 않았거나 사업 목적으로 재화를 구입하지 않는 고객에게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매입자 납부제도」의 적용을 배제한다.

2) 적용대상 재화

「매입자 납부제도」 적용대상 재화에는 휴대폰(mobile phone), 컴퓨터칩(computer chip)이 있다.

〈표 IV-4〉 「매입자 납부제도」 적용대상 품목(영국)

품목	세부내역
휴대폰	① 적용대상 • any handsets which have a mobile phone function(i.e. the transmitting and receiving of spoken messages), whether or not they have any other function - it therefore includes other communication devices, such as Blackberrys; • mobile phones supplied with accessories(such as a charger, battery, cover or hands free kit) as a single package; • pre-pay(or 'pay as you go') mobile phones, whether or not the selling price includes an element attributable to the cost of future use of the phones; and • mobile phones locked to a network but not supplied with a contract for airtime. ② 적용배제 • mobile phones which are supplied with a contract for air time; • mobile phone accessories which are supplied separately from a mobile phone; • walkie-talkies • WiFi phones unless also intended for use with mobile phone networks; and • 3G data cards and WiFi cards.
컴퓨터칩	• Small integrated circuits(i.e. Central Processing Units or CPUs); • discrete integrated circuit devices(i.e. Microprocessors or Microprocessor Units(MPUs) and Microcontrollers or Microcontroller Units(MCUs); and • chipsets - the dedicated cluster of integrated circuits which support MPUs.

### 3) 적용요건

「매입자 납부제도」 적용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 [요건 1] 영국 국내공급
- [요건 2] £5,000 이상의 휴대폰 및 컴퓨터칩 공급(부가가치세 포함 전 가격 기준)
- [요건 3]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에 해당하고, 사업 목적으로 당해 재화를 구입하는 것이어야 함

한편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입자 납부제도」 적용을 배제한다.

- 사업 외의 목적으로 고객에게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 공급받는 자가 “중고품 마진제도(secondhand margin scheme)<sup>62)</sup>”를 선택하고 있는 경우
- 사업자가 무상으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 가) 요건 1: 영국 국내공급

부가가치세 등록사업자(VAT-registered business)가 다른 사업자에게 영국 국내에서 휴대폰 또는 컴퓨터칩 제품을 공급하는 경우에만 「매입자 납부제도」를 적용한다. 사업자가 아닌 고객에 대한 재화의 공급, 다른 EU 국가 또는 EU 밖의 국가에 대한 수출에 대해서는 적용을 배제한다.

62) 일반적인 경우에는 판매하는 재화의 총가액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마진제도하에서는 마진(양도가액-구매가액)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과세함. 예를 들어 중고품을 £1,500에 구매하여 £2,000에 판매하였다면 £500에  $7/47 (=17.5\%/(1+17.5\%))$ 을 곱한 £74.74의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면 됨.

#### IV.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제도」 국내의 사례 109

##### 나) 요건 2: 최저금액 요건 (£5,000)

부가가치세 포함 전 가격이 £5,00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매입자 납부제도」 적용을 배제한다. 하나의 invoice에 여러 개의 품목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매입자 납부제도」 적용대상 품목의 공급가액 합계가 £5,000 이상이어야 「매입자 납부제도」를 적용한다. 하나의 invoice에 ‘ 「매입자 납부제도」 적용대상 재화의 공급’과 ‘기타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혼재되어 경우에는 ‘ 「매입자 납부제도」 적용대상 재화의 공급’에만 「매입자 납부제도」를 적용한다. 즉, ‘기타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동일한 invoice에 기재되어 있더라도 「매입자 납부제도」 적용을 배제한다. 부품 중 일부가 「매입자 납부제도」 적용대상이나, 완제품이 「매입자 납부제도」 적용대상 품목이 아니라면 전체 완제품의 공급에 대해 「매입자 납부제도」 적용을 배제한다. 예를 들어 컴퓨터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컴퓨터칩만을 따로 분리하여 「매입자 납부제도」를 적용하지 않는다. 하나의 주문과 관련하여 여러 장의 invoice를 발행하는 경우<sup>63)</sup>에는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당해 주문과 관계되는 모든 공급에 대해 「매입자 납부제도」 적용 가능하다.

- 주문가액(Order Value) ≥ 청구가액(Invoice Value)
- 주문가액(Order Value) ≥ £5,000
-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가 모두 「매입자 납부제도」 적용에 동의해야 함

##### 다) 요건 3: 사업자에 대한 사업목적 공급

공급받는 자가 ① 영국 VAT 목적에서 이미 등록이 되어 있는 상태

63) 많은 사업자들이 단일 주문이라 하더라도 각각의 배송에 대해 별도의 계산서를 발행하고 있음.

거나 등록을 해야 할 의무가 있는 자에 해당하며, ② 사업 목적으로 당해 재화를 구입하는 것이어야 「매입자 납부제도」를 적용한다. 따라서 「매입자 납부제도」 적용 여부 판단을 위해서는 공급자가 공급받는 자의 “부가가치세 등록번호(VAT registration number)”를 징구해야 하며, 할 수 있는 한 당해 번호가 진실하며, 「매입자 납부제도」 적용을 위한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 4) 공급자의 확인의무

「매입자 납부제도」 적용 여부 판단을 위해 공급자가 파악해야 할 항목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 당해 재화가 「매입자 납부제도」 적용대상 품목인지 여부
- 부가가치세 포함 전 가격이 £5,000 이상인지 여부
- 고객에 대한 정보(VAT 등록 여부, 당해 재화의 구입목적 등)

##### 가) 합리적인 검증(reasonable step)

공급자가 공급받는 자의 VAT 지위(VAT status)를 확인하기 위해 “합리적인 조치”를 취했다면 「매입자 납부제도」 적용상에 오류가 있더라도 책임을 묻지 않는다. 단, 업계의 규범(norm) 및 고객과 맺고 있는 관계의 유형에 따라 “합리적인 조치”가 의미하는 바가 다를 수 있다.

고객의 주장을 믿기 전에 공급자가 어느 정도 절차를 취하여야 할지 결정함에 있어 도움을 줄 수 있는 지침들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 고객의 신용이나 업계에서 평판에 대한 확인한다.
- 부가가치세 등록번호가 진실하며, 고객 소유의 번호인지 확인한다. 부가가치세 등록번호 확인을 위해 National Advice Service에서 제공하는 검증 기능 이용이 가능하다.

#### IV.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제도」 국내의 사례 111

- 신규 고객인지, 기존 고객인지 확인한다. 공급자와 안정적인 거래 관계를 맺고 있는 기존 고객의 부가가치세 등록번호에 대해서는 특별한 검증이 필요 없다.
- £5,000의 최저금액 요건을 적용받지 않기 위해 주문의 패턴을 고의로 조작하는 행태에 대하여 검토한다. 특히, 자금세탁행위 또는 사기 등을 방지하기 위해 재화의 가액이나 수량에 기초하여 자체적인 검증을 실시하고 있는 경우에는 유사 방식으로 고객이 최저금액 요건을 고의로 조작하여 「매입자 납부제도」 적용을 회피하는 사례가 있는지를 검토해야 한다.
- 고객이 진실한지 의심이 들게 하는 기타 이유에 대해 검토한다. 한편 국세청의 요청이 있는 경우, 언제든지 자료의 제공이 가능하게 공급자가 자신이 검토했던 사항과 기록들을 보관·유지해야 한다.

##### 나) 의문이 생길 때의 조치

당해 고객이 진실한지 또는 고객의 VAT 지위에 대해 의심이 드는 경우에는 거래를 계속해야 할지 결정해야 한다. 의심이 드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거래를 할 경우에는 고객에게 「매입자 납부제도」의 적용이 잘못 되었을 때 공급자가 부담해야 할 부가가치세를 예치토록 요청하는 것을 고려하여 볼 수 있다. 특히, 공급받는 자가 국세청에 부가가치세 등록번호를 신청하였으나, 아직 사업자등록번호를 받지 못한 경우에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다.<sup>64)</sup>

고객이 진실한지, 고객이 주장하는 부가가치세 등록번호가 진짜 고객에게 귀속되는 번호인지, 최저금액요건 충족 여부 등을 확인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에는 통상적인 방식으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해야 한다. 즉, 공급받는 자가 아닌 공급자가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 해야 한다.

64) 이 경우에는 고객이 부가가치세 등록번호를 받은 증거를 제시하여 예치금을 환급하여 줌.

## 5) 운영방식

「매입자 납부제도」하에서는 재화의 공급에 대해 공급자가 아닌 공급받는 자가 부가가치세 납부의 의무를 진다. 공급자는 부가가치세 납부의 의무를 지지 않는 대신 「매입자 납부제도」 적용 사실이 명시되어 있는 invoice를 고객에게 교부해야 하고, 매입자는 부가가치세 납부의 의무를 지니, 부가가치세 신고 때 통상적인 규정에 따라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 가) 재화의 공급시기

「매입자 납부제도」 적용대상 재화를 공급하는 때에는 공급자가 「매입자 납부제도」 적용 사실 및 공급받는 자가 부가가치세 납부의 의무를 지는 사실을 주석으로 기재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invoice를 교부해야 한다. 한편 「매입자 납부제도」 적용으로 부과되는 부가가치세가 invoice에 명확하게 나타나야 한다.

### 나) 부가가치세 신고

공급자가 신고하는 당기의 “매출총액(total value of sales: box 6에 기재)”에는 대리납부 공급가액 역시 포함되나, “매출세액(output tax: box 1에 기재)”에는 이로 인한 부가가치세가 포함되면 안 된다. 공급받는 자가 부가가치세 납부의 책임을 지기 때문에 공급자의 매출세액으로 신고하여서는 안 된다.

### 다) 대리납부매출명세(Reverse Charge Sales List) 작성 및 제출

「매입자 납부제도」 적용대상 재화를 처음 공급하는 경우에는 30일 내에 개시일자, 자신의 이름과 연락처를 국세청에 통보해야 하며, 공급

#### IV.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제도」 국내외 사례 113

을 종료하는 경우에도 30일 내에 중단일자 등을 국세청에 통보해야 한다. 그 후에 다시 「매입자 납부제도」 적용대상 재화를 공급하게 되었다면 개시일자 및 자신의 연락처를 다시 제출해야 한다.

공급자가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는 때, 대리납부매출명세도 첨부하여 제출한다. 대리납부매출명세에는 고객의 UK VAT 등록번호, 각각의 고객에 대한 각 역월의 대리납부매출총액 등의 정보가 포함되고, 인터넷을 통한 직접 기입 또는 CSV 파일을 통해 제출할 수 있으며 서면신고는 불가능하다.

##### 라) 부가가치세등록을 위한 기준금액 산정

영국의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매출이 기준금액 이상이어야 부가가치세 등록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만약 부가가치세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사업자가 £5,000 이상의 휴대폰 또는 컴퓨터칩 제품을 구입하였다면 동 가액을 포함하여 기준금액 초과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 6) 벌칙규정<sup>65)</sup>

##### 가) 공급받는 자에 대한 패널티

공급받는 자가 대리납부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당해 거래와 관계되는 매입세액 공제를 허용하지 않는다. 공급받는 자가 「매입자 납부제도」 적용대상 거래라는 사실을 통보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기의 의도가 있다고 보아 이 자가 청구하는 다른 매입세액 공제까지 확대하여 세무조사를 할 수 있다.

「매입자 납부제도」 적용대상 거래임에도 불구하고 부가가치세가 과

---

65) 새로운 제도 시행으로 인해 사업자가 겪게 될 혼란을 고려하여 세수의 손실이 없는 경우라면 「매입자 납부제도」 도입 이후 최초 6개월 동안 발생하는 실수에 대해서는 경고조치만을 할 예정

세되었고, 공급받는 자가 이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매입세액 공제 불허 또는 공급자와 공동으로 부가가치세 납부의 의무를 져야 하는 등의 벌칙을 받을 수 있다.

#### 나) 공급자에 대한 패널티

공급자가 대리납부 방식을 적용했고 공급받는 자가 진실한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충분한 조치를 취했으나, 공급받는 자가 고의로 공급자를 속였다면 공급자가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할 의무가 없다. 이와 유사하게 공급자가 정확하게 대리납부 방식을 적용하였으나, 공급받는 자가 이를 잘못 적용하였다면 공급자가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할 의무가 없다.

그러나 공급자가 대리납부방식을 잘못 적용하였거나, 공급받는 자가 진실한지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충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공급자가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한다. 「매입자 납부제도」 적용대상 거래인데 공급자가 잘못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다면 공급받는 자가 그 금액만큼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못한다. 이 경우에는 공급자가 자신이 징수했던 부가가치세를 고객에게 돌려줘야 한다.

#### 7) 대손세액공제

「매입자 납부제도」하에서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을 납부하기 때문에 대손세액공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6개월 이후에도 공급대가 중 일부 또는 전부가 지급되지 않은 경우에는 공급받는 자가 자신이 기존에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금액을 조정해야 한다.

라. 「국내매입자 납부제도」 도입으로 인한 원가 및 효익 분석<sup>66)</sup>

영국 정부에선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측면에서 「국내매입자 납부제도」 도입으로 인한 정책효과를 분석(Regulatory Impact Assessment)한다.

- 「국내매입자 납부제도」 도입으로 사업자(공급자 및 공급받는 자)가 부담하게 될 세무행정비용 및 납세협력비용
- 부가가치세 부정환급 감소와 이로 인한 국고 증가 효과
- 「국내매입자 납부제도」 도입으로 국세청이 얻게 될 비용-효익 분석

1) 사업자의 비용

가) 공급자의 비용에 대한 분석

「매입자 납부제도」 도입 이후 공급자가 부담하게 될 비용에는 다음과 같은 종류가 있다.

- 대리납부매출명세 작성을 위해 모든 고객의 부가가치세 등록번호를 징구하는 데 드는 비용
- 「매입자 납부제도」 적용대상 공급을 식별하기 위해 시스템을 변경하는 데 드는 비용(고객의 부가가치세 등록 지위·사업목적·최저금액 요건 충족 여부 등 확인)
- invoice 양식의 변경에 드는 비용<sup>67)</sup>
- 「매입자 납부제도」 적용대상 재화의 공급을 개시 또는 중단했을 때, 통보의무 이행에 드는 비용
- 대리납부매출명세 작성 및 제출의무 이행에 드는 비용
- 「매입자 납부제도」 규정이나 절차 등에 대한 직원교육 실시에 드는 비용

66) <http://www.hmrc.gov.uk/ria/vat-reversecharging.pdf>

67) 「매입자 납부제도」 적용 사실, 공급받는 자가 부가가치세 납부의 의무를 지는 사실 등을 주석으로 기재하기 위해서는 invoice 양식의 변경 필요

## 나) 공급받는 자의 비용에 대한 분석

「매입자 납부제도」 도입 이후 공급받는 자가 부담하게 될 비용에는 다음과 종류가 있다.

- 공급자가 자신의 부가가치세 지위를 알 수 있게 확인시켜 주는 데에 드는 비용
- 「매입자 납부제도」 적용대상 매입을 식별하기 위해 시스템을 변경하는 데에 드는 비용
- 부가가치세의 신고·납부의무 이행에 드는 비용
- 「매입자 납부제도」 규정이나 절차 등에 대한 직원교육 실시에 드는 비용

## 다) 사업자의 비용 추산

「국내매입자 납부제도」 도입으로 인해 사업자가 부담하게 될 비용을 추산하면 아래 표와 같다.

〈표 IV-5〉 「국내매입자 납부제도」 적용으로 영향을 받게 될 사업자 수(추정)

(단위: 명)

	invoice의 변경, 대리납부매출명세 작성으로 영향을 받게 될 사업자수	기타의 납세순응활동으로 영향을 받게 될 사업자수
휴대폰		
- 제조업자, 수입업체	20	20
- 도매업자	50	50
- 소매업자	25	480
컴퓨터칩		
- 제조업자, 수입업체	20	20
- 도매업자	50	50
- 소매업자	0	200

주: 동일 사업자가 두 번째 열과 세 번째 열에 중복하여 counting 가능  
자료: <http://www.hmrc.gov.uk/ria/vat-reversecharging.pdf>

IV.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제도」 국내외 사례 117

〈표 IV-6〉 「국내매입자 납부제도」 도입으로 사업자가 부담하는  
행정비용 및 납세협력비용(추정)

(단위: £)

	1차 연도 또는 기타의 일시적인 비용	2차 연도 이후 (지속적인 비용)
행정비용		
- 대리납부매출명세	12,000~13,000	12,000~13,000
총액	12,000~13,000	12,000~13,000
광범위한 납세협력비용		
- invoice의 변경	16,500	무시
- 일반적인 숙지비용	40,000	0
- 직원훈련	130,000	0
- IT 변경(H/W)	0	0
- IT 변경(S/W)	1,825,000~5,525,000	0
총액	2,011,500~5,711,500	0

자료: <http://www.hmrc.gov.uk/ria/vat-reversecharging.pdf>

2) 국고증가 효과(Exchequer Effect)

회전목마 사기 감소와 이로 인한 국고증가 효과를 추정하면 아래 표와 같다.

〈표 IV-7〉 「국내매입자 납부제도」 도입으로 인한 국고증가 효과(추산)

(단위: 백만£)

	물가지수 조정 후(indexed)			물가지수 조정 전 (non-indexed)
	2007/08	2008/09	2009/10	2007/08
세수효과	+135	+155	+120	+135

자료: <http://www.hmrc.gov.uk/ria/vat-reversecharging.pdf>

### 3) 국세청의 비용-효익 분석

#### ○ 비용분석

대리납부매출명세 도입을 지원하기 위한 IT 시스템 개발에 약 £350만의 비용이 지출(system 사용 후 3월간의 지원원가 포함)되고, 시스템 관리를 위해 FY2008/09에는 약 £94,000, FY2009/10에는 약 £71,000의 비용이 지출(대량 업로드 시스템 개선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관리감독 및 납세순응문제 해결을 위한 신규직원 채용을 위해 약 £19,800의 비용지출 예상되는데, 대리납부매출명세 확인, 부가가치세 신고내용 검증 등은 기존의 인력 활용을 가정한다.

#### ○ 효익분석

장기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현재 회전목마 사기 사건의 조사를 담당하고 있는 상당수의 국세청 직원을 다른 납세순응문제 해결을 위해 전환 배치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특히, 회전목마 사기 사건을 조사하고 있는 직원들은 부가가치세 사기와 관련하여 폭 넓은 경험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전환배치됐을 때 다른 유형의 탈세 및 사기를 막는 데에 효과적일 수 있다.

### 마. 기타의 회전목마 사기 대응전략<sup>68)</sup>

영국 정부에선 「국내매입자 납부제도」 이외에도 회전목마 사기를 방지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다각적인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 사업자등록신청에 대한 조사 강화
- 부가가치세 환급 신청에 대한 조사 강화

68) Standard Report on the Accounts of HM Revenue and Customs: VAT Missing Trader Fraud, 2007.07.

- 부가가치세에 대한 연대납세의무 확대
- 탈세자에 대한 조사 및 기소 강화

#### 1) 사업자등록신청에 대한 조사 강화

회전목마 사기의 실행을 위해서는 가장 먼저 영국에서 사업자등록이 이뤄져야 하는바, 탈세업자들의 사업자등록을 방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영국 정부에선 탈세업자들의 사업자등록을 방지하기 위해 세무조사 경험이 많은 국세청 직원을 일선의 사업자등록부서에 배치하고, 이들에게 Risk Advisor로서 역할을 수행토록 하고 있다. Risk Advisor는 직권으로 사업자등록신청을 거부할 수 있고, 추가적인 조사가 요구되는 경우에는 관련 부문으로 이첩된다. Risk Advisor 제도 도입 이후, 사업자등록신청에 대한 조사의 실효성이 향상되었으며 위험의 분석과 조사의 이첩에 있어 일관성 있는 접근이 가능해졌다고 평가된다. 2002~2003년도에는 7,000여건의 사업자등록신청을 조사하여 900여건(12.86%)이 거부되었으나, 2005~06년도에는 3,600여건의 사업자등록신청을 조사하여 2,200여건(61.11%)이 거부되었다.

또한 사업자등록신청에 의문이 제기되나, 등록거부 사유가 불충분한 경우에는 등록요건으로 해당 사업자에게 담보제공 의무를 부여한다.<sup>69)</sup> 2004년 4월부터 2006년 2월까지 약 74건의 사업자등록신청에 대해 담보제공 요청이 있었으며, 이 중 18명의 사업자가 사업을 중도에 포기하였거나 등록취소 처분을 받았다. 담보제공 의무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국세청이 사업개시 후 6개월 동안 해당 사업자의 활동을 모니터링하게 된다.

---

69) 주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은 보증서 형태가 많음.

## 2) 부가가치세 환급 신청에 대한 조사 강화

회전목마 사기의 작동원리에서 살펴봤던 바와 같이 영국의 수출 broker가 수출품에 대한 매입 부가가치세를 환급받는 시점에 최종적인 세수의 손실이 발생하게 된다. 즉, 수출 broker의 불법적인 부가가치세 환급 신청을 거부하면 회전목마 사기에 의한 세수의 손실을 방지할 수 있다. 이를 위한 영국 정부의 최초 전략에는 ① 부가가치세 환급 신청이 사기를 위한 포괄적인 사슬의 일부를 형성하고, ② 순환적인 재화의 판매가 아무런 경제적인 실질을 갖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부가가치세의 환급을 보류하는 조치를 포함하였다. 그러나 이와 같은 조치가 EU 법규 위반이란 EU 법원의 판결(2006년 1월)<sup>70)</sup> 이후, 부가가치세 환급 신청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방향을 전환하였다.

현재는 '당해 거래가 사기를 위한 포괄적인 사슬의 일부를 형성하는 사실을 사업자가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증거가 존재하는 경우'에만 부가가치세의 환급을 거부하고 있다. 이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사기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증거가 있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환급 거부 가능성이 있다는 EU 법원의 판결(2007년 6월)<sup>71)</sup>에 따른 것이다.

2006~2007년도 동안 영국 정부에선 700명의 국세청 직원을 재배치하여 회전목마 사기에의 연루가 의심되는 사업자에 대해 조사를 실시하였다. 검증 결과, 조사대상으로 선정됐던 사업자 중 약 95% 이상이 회전목마 사기와 관계되는 거래에 참여하였거나 이로부터 불법적인 이익을 누린 것으로 나타났는데, 총액기준으로 살펴보면 조사대상 거래 중 약 1%만이 적법하게 부가가치세 환급신청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70) Optigen Ltd, Fulcrum Electronics Ltd and Bond House Systems v Commissioners of Customs & Excise, 2006. 01. 12.

71) European Court of Justice Axel Kittel v Belgian State, Case C-439/04, July 2006.

#### IV.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제도」 국내의 사례 121

한편 영국 정부에선 사업자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조사가 진행중인 경우에도 해당 사업자가 담보 또는 은행으로부터 받은 보증서를 제출하면 부가가치세의 환급을 허용하고 있다.

##### 3) 부가가치세에 대한 연대납세의무 확대

영국 정부에선 회전목마 사기에 대한 대응전략 중 하나로서 2007년 5월 1일부터 “부가가치세 연대납세의무(Joint and Several liability) 적용대상 품목”을 확대하여 시행하고 있다. 부가가치세법 1994 section 77A에 따를 경우, 공급사슬상의 어느 단계든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미납되었다는 것을 알았거나 알 수 있는 근거가 있었다면 다른 사업자와 함께 부가가치세 납부의 책임을 져야 한다. 이전에는 전화기·컴퓨터 및 이들 부품에만 적용되었으나, 현재는 광범위한 전자제품 및 부속품까지 확대 적용되고 있다. 영국 정부에서는 연대납세의무 확대를 통해 「국내매입자 납부제도」 적용대상에서 배제되어 있는 기타 품목으로 회전목마 사기가 옮겨가는 것을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 4) 탈세자에 대한 조사 및 기소 강화

2001~2002년도 이후 영국 정부에선 회전목마 사기와 관련하여 약 157건의 유죄 판결을 이끌어냈다. 2001~2006년까지 회전목마 사기와 관련하여 약 603건의 징역형과 £9,700만 상당의 재산몰수형이 선고되었다. 그러나 유죄판결 한 건당 형량이 평균 3.8년에 불과한바, 탈세자가 얻은 재무상의 이익에 비해 형벌이 다소 낮은 편이다. 하지만 정부의 지속적인 문제제기 덕분에 최근 들어 회전목마 사기의 심각성에 대한 법원의 인식이 제고되고 있고, 이에 따라 형량 역시 크게 높아지고 있는 추세이다.

〈표 IV-8〉 회전목마 사기: 기소, 유죄판결, 징역형과 재산몰수

(단위: 건, £)

연도	기소	유죄판결	징역형	무죄판결	유예	재산몰수
01/02	10	23	87	4	3	13,613,600
02/03	15	29	122	9	2	28,146,500
03/04	14	14	46	1	22	10,572,400
04/05	10	20	60	8	8	12,820,900
05/06	17	26	94	10	24	2,759,900
06/07 (2006.12까지)	17	45	194	10	6	29,337,400
합계	83	157	603	42	65	97,250,500

자료: 영국 국세청

그러나 형사기소 사건의 경우 조사가 복잡하고, 확정판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단점이 있다. 형사기소 외에 회전목마 사기에 의해 유발되는 체납 부가가치세의 회수를 위해 취할 수 있는 조치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첫째, 체납 부가가치세의 수준이 상당하고, 사업자가 채무의 지급을 거부하였거나 지급 불가능한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법원에 '조건부청산(provisional liquidation)'을 요청할 수 있다. 조건부청산이 받아들여지는 즉시 사업자의 영업활동이 중지되기 때문에 추가적인 세수의 손실을 막을 수 있다.

둘째, 체납 부가가치세의 지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법원에 회사의 청산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법원이 체납 부가가치세의 지급을 보장하기 위해 회사의 자산을 동결하고, 청산인을 지정하는 절차를 밟게 된다.

2006~2007년도 동안 회전목마 사기에 연루되어 있는 210명의 사업자가 정부의 조치에 의해 파산하였다. 또한 11명의 사업자에 대해 조

#### IV.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제도」 국내의 사례 123

건부청산 조치를 취해 £70만 상당의 부가가치세를 회수하였으며, £2백만 상당의 자산에 대해 담보를 확보하였다. 이 이외에도 115명의 회전목마 사기 연루자(채납세액 £5억 5,700만)에 대해 파산조치가 진행 중이다.

한편 탈세업자들은 회전목마 사기를 통해 얻은 이득을 재빨리 해외 금융기관으로 송금함으로써 정부의 추적을 따돌리고 있다. 영국 정부의 조사 결과, 행방불명 무역업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금융기관은 First Curacao International Bank가 있는데, 행방불명 무역업자들은 First Curacao International Bank의 계좌를 이용하여 자금을 세탁 후, 이 중 일부를 UAE(주로 두바이)의 금융기관으로 송금하고 있다.

영국 정부에선 네덜란드 및 UAE 정부와의 협력을 통해 탈루 부가가치세의 회수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First Curacao International Bank에 대한 조사를 진행중에 있는 네덜란드 정부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탈루 부가가치세의 추적을 위해 UAE 정부와 상호지원약정(mutual assistance arrangement)을 체결하였다.

### 3. 뉴질랜드 사례<sup>72)</sup>

#### 가. 「국내매입자 납부제도」 도입배경 및 동향

뉴질랜드 경우에는 EU와는 다른 이유에서 「국내매입자 납부제도」 도입에 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회전목마 사기의 근절방안 중 하나로 「국내매입자 납부제도」 도입이 논의되고 있는 EU 지역과는 달리 뉴질랜드에선 “부가가치세의 중립성(GST neutrality) 강화” 측면에서 「국내매입자 납부제도」 도입이 검토되고 있다.

---

72) Options for strengthening GST neutrality in business-to-business transactions-an officials' issues paper, June 2008, Policy Advice Division of Inland Revenue and New Zealand Treasury

2008년 6월 9일 뉴질랜드 국세청과 재정부가 공동으로 B2B 거래에서 부가가치세의 중립성을 강화하기 위한 8가지 개선방안(Options for Strengthening GST Neutrality in Business-to-Business Transactions)을 제시하였다. 8가지 개선방안에는 고가의 거래에 대해 매입자 납부 방식으로 부가가치세를 징수함으로써 부가가치세의 중립성을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2008년 7월 11일 의견수렴 절차가 완료되었으나, 최종적인 입법에는 아직 도달하지 못한 상태이다.

**※ 부가가치세의 중립성(GST Neutrality)**

“부가가치세의 중립성”이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구입하는 때 부담했던 부가가치세를 매출세액에서 공제가 가능하게 허용하여 줌으로써 B2B 거래에서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부담을 제거하여 주는 것을 말함

일반적인 경우 “前단계 세액공제 방식”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면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재화 또는 용역을 구입하는 시점에 자신이 지급했던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음

그러나 부가가치세법 적용에 오류가 발생하여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재화 또는 용역을 구입하는 시점에 자신이 지급했던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없기 때문에 부가가치세의 중립성이 훼손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됨

뉴질랜드에선 그 동안 “계속기업(going concern) 양도”에 관한 부가가치세법 규정이 불확실하여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계속기업이란 용어의 정의가 명확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양도자가 영세율 적용대상 거래라고 판단하여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지 않은 사업양수도 거래에 대하여 국세청이 일반적인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였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995년과 2000년, 두 차례에 걸쳐 관련 부가가치세법 규정이 개정되었으나 아직까지 일부 부분에선 논란의 여지가 있다. 따라서 사업양수도와 같이 부가가치세법 적용이 잘못 되었을 때 사업자가 지나치게 많은 부담을 져야 하는 고가의 거래에 대해서는 대리납부방식으로 부가

가치세를 징수함으로써 부가가치세의 중립성을 제고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 계속기업(going concern) 양도에 관한 뉴질랜드 부가가치세법 규정

계속기업 양도에 대해서는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 양측이 모두 동의하면 영세율 적용 가능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상당히 큰 것이 일반적인 바, 공급받는 자가 거의 예외 없이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것이 예상되는 거래에 대해 매출세액 징수를 하는 것은 국고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으면서 사업자에게 불필요한 자금조달비용 등을 유발하기 때문에 계속기업 공급에 대해서는 영세율 적용을 허용하고 있음

나. 「국내매입자 납부제도」 개요(정부案)<sup>73)</sup>

1) 주요 내용

다음과 같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공급자가 아닌 공급받는 자가 부가가치세 납부의 의무를 진다(의무사항).

-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가 모두 부가가치세 등록이 되어 있는 자이어야 한다.
- ① 계속기업(going concern), ② 토지 또는 ③ “고가(NZD 5천만 초과)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한다. 재화 또는 용역의 판매를 위한 계약(contract)이나 약정(agreement) 등에 나와 있는 부가가치세 포함 이전 가격을 기준으로 고가의 거래 해당 여부를 판단한다.

뉴질랜드의 경우 부가가치세에 의해 창출되는 cash flow 영향을 제

73) 아래의 내용들은 정부案에 나와 있는 것을 요약·정리하였으며, 구체적인 운영방식 등에 대해서는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았으므로 추후 변경이 있을 수 있음

거하고, 과세대상 B2B거래에서 부가가치세의 중립성을 강화하는 것이 「국내매입자 납부제도」 도입의 가장 주된 목적이라 할 수 있다.

첫째, 부가가치세 「국내매입자 납부제도」를 도입함으로써 부가가치세 과세 때문에 발생하는 양수자의 불필요한 자금조달비용을 제거할 수 있다. 일반적인 경우에는 공급자가 공급시점에서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 하는 바, 공급받는 자가 부가가치세를 지급하는 시점이 관련 매입세액 공제를 신청하는 시점보다 앞선다. 예를 들어 A(공급자)가 NZD 800,000 상당의 재화를 공급하였다면 B(매입자)가 매입 당시 NZD 100,000(=800,000×12.5%) 상당의 부가가치세를 A에게 지급해야 한다. 그러나 B가 매입세액 공제 또는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당해 과세기간 종료시점까지 기다려야 한다. 「매입자 납부제도」하에서는 두 시점 간에 시간적인 격차가 존재하지 않는바, 공급받는 자가 부가가치세 납부를 위해 불필요한 자금을 차입해야 할 필요가 없다.

둘째, 과세대상 B2B 거래에서 부가가치세의 중립성이 강화된다. 고가의 거래를 할 경우 이에 따른 부가가치세 부담이 상당히 큰데 부가가치세법 규정의 불확실성이나 착오·오류 등에 의해 매입세액 공제를 못 받게 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의 중립성이 심각하게 훼손되는 결과를 초래한다. 그러나 「매입자 납부제도」하에서는 최종적인 소비 단계에서 단 한 번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기 때문에 기존방식보다 부가가치세의 중립성을 제고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매입자납부제도를 도입하고자 한다.

## 2) 운영방식

### ○ 공급자의 의무

공급자가 공급받는 자의 부가가치세 등록 여부를 확인하고, 이를 입증하는 서류를 보관해야 한다. 공급 당시 공급받는 자의 부가가치세 등록번호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통상적인 부가가치세법 규정에

#### IV.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제도」 국내외 사례 127

따라 공급자가 부가가치세 납부의 의무를 진다.

##### ○ 공급받는 자의 의무

「매입자 납부제도」하에서는 공급받는 자가 부가가치세 납부의 의무를 진다. 다만, 해당 부가가치세를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다. 이 과정에서 공급받는 자는 거래 관련 증빙(invoice, 기타 문서)을 보관할 의무가 있다.

##### ○ 공급시기

「매입자 납부제도」하에서는 당해 거래를 정산하는 날을 공급시기라고 본다(settlement date).

##### ○ invoice 발급

invoice의 발급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방안이 현재 논의 중에 있다.

- 공급자가 발행하는 방안
- 공급받는 자가 발행하는 방안
- 매출 또는 매입에 관한 약정으로 대체하는 방안: 매출 또는 매입에 관한 약정에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에 관한 세부사항(부가가치세 등록번호, 이름, 주소 등)' 그리고 '거래에 관한 세부사항(거래가액, 정산일자 등)' 등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invoice를 별도로 발행해야 할 필요가 없다. 이는 '중소기업 납세협력비용 절감'에 관한 정부의 토론 자료에서 제시했던 방안(매입세액 공제를 위한 입증자료로서 invoice 대신 일상적인 사업과정에서 생산되는 서류 이용)과 넓게 보면 일맥상통하는 방안이라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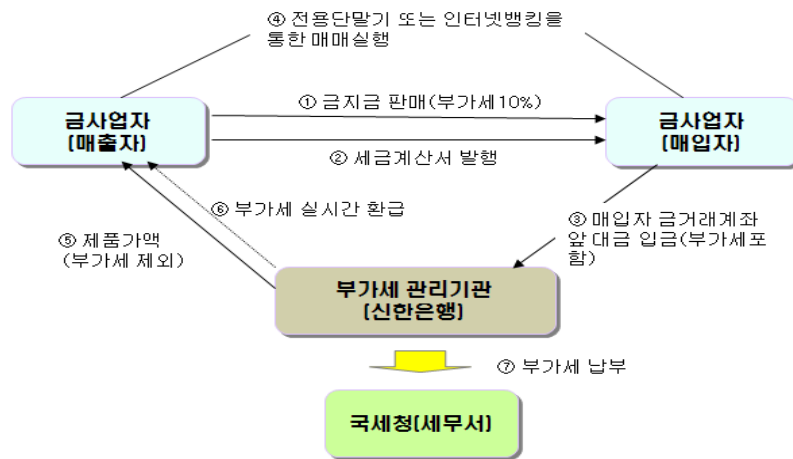
## 4. 국내 유사 운영사례

### 가. 금 매입자 납부특례제도

금 매입자 납부특례제도는 현행 부가가치세 '매출자 납부제도'의 허

점을 이용한 부가가치세 탈세방지와 금지금 거래의 투명화를 위하여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금 매입자 납부특례제도 시행 이전에는 매출자가 매입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 납부토록 하는 제도를 악용, 무자료로 매입한 금지금을 과세로 매출하여 매입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받은 후 이를 정부에 납부하지 않고 도주하는 방식의 부가가치세 포탈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였다. 이와 같은 금지금을 이용한 부가가치세 포탈을 근원적으로 차단하기 위하여, 금지금에 대하여는 매출자 납부방식에서 매입자 납부방식으로 전환하게 된 것이다. 금 매입자 납부특례제도는 금지금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제도의 시행에 따라 금지금거래의 투명성이 크게 제고되고 세원이 양성화되어 금지금을 이용한 부가가치세 포탈이 근원적으로 차단되고 귀금속산업의 건전한 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림 IV-4] 금거래 결제업무 흐름도



정부가 2008년 7월부터 도입한 금 매입자 납부특례제도는 매출자가 거래징수한 부가가치세를 무납부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기존의 매출자에 대한 거래징수제도를 매입자납부제도로 전환하였고, 적용대상

은 특정거래로 한정된다. 즉, 금지금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제도는 금사업자 간에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금지금을 거래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사업자 간 거래에만 적용되므로 소비자가 금지금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금지금을 거래하는 사업자는 금지금·귀금속의 제조업, 도매업, 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12,000명 정도로 추산된다.

### 1) 적용 대상

금 관련 제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제도는 금사업자 간에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금지금 또는 고금<sup>74)</sup>을 거래하는 경우에 적용되며 사업자 간 거래에만 적용되므로 소비자가 금지금 또는 고금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동 제도는 금 사업자 간에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금지금과 고금 거래에만 적용되며 소비자가 금지금이나 고금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2) 주요 내용<sup>75)</sup>

#### 가) 금거래계좌의 개설

제도 시행을 위해서 금사업자는 지정은행 지점에서 금거래 계좌 개설 및 금 거래전용카드<sup>76)</sup>를 발급받아야 하고, 지정은행은 금거래 전용 단말기(신용카드결제기능 포함)를 금사업자에게 무상제공하여야 한

74) 금지금이란 금괴(덩어리), 골드바 등 원재료 상태인 것으로서 순도가 1천분의 995 이상인 금을 말하며, 고금이란 소비자가 구입한 사실이 있는 반지 등 제품 상태인 것으로서 1천분의 585 이상인 금을 말함. Karat의 약자인 K는 금의 순도를 나타내는 단위로서 24K를 100%로 함.

75) 황종대 외(2010), pp. 998~1004

76) 현금인출 기능 등 제한

다. 금지금 매매 사업자는 국세청 지정은행(신한은행)에 금거래 전용 계좌(보통예금)를 개설<sup>77)</sup>하며, 동 계좌는 금거래 결제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 나) 금거래계좌를 이용한 대금결제 및 부가가치세액 입금

금사업자가 금지금 또는 고금을 다른 금사업자에게 공급할 때에는 공급받는 사업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지 않고 공급받는 사업자가 공급한 사업자를 특정하여,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을 지정금융기관의 본인 금거래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금사업자는 금거래계좌 입금 시 인터넷뱅킹, 기업폰뱅킹 또는 전용단말기를 이용할 수 있다. 금거래계좌를 개설하면서 전용단말기를 신청하는 경우, 지정금융기관에서 무상으로 제공한다.

금거래 처리를 위한 서비스 이용 채널은 금거래 전용 단말기 및 기업인터넷 뱅킹이 있다.<sup>78)</sup> 금거래 전용 단말기를 이용할 경우 수수료를 면제하며, 거래한도는 1회 1억원, 1일 1억원이다.<sup>79)</sup> 기업인터넷 뱅킹 이용 시 거래한도는 1회 10억원, 1일 50억원(자율 설정 가능)이다.

금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는 일반사업자와 동일하게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다. 지정금융기관을 통해 국고에 입금한 부가가치세액은 부가가치세 신고서상 '금지금 매입자납부특례 기납부세액'란에 금액만 기재하여 예정/확정신고 기한에 관할 세무서에 신고한다.

77) 복수계좌 개설 가능

78) 금거래는 일반적인 계좌이체거래와 달리 은행 Host 시스템에서 특수한 기능을 수행하여야 하므로, 범용창구 또는 무인자동화 코너 등에서의 처리를 제한하고, 특수채널에서 금거래 식별 코드값을 받아 구분처리할 수 있어야 함.

79) 한도 설정 근거: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및 「전자금융감독규정」

IV.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제도」 국내외 사례 131

[그림 IV-5] 단말기 형태 및 기능

구 분	기 능
금거래결제	즉시결제/외상결제/환입거래/감소거래 처리 기능
신용카드결제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결제 가능
일반금융거래	계좌이체 및 잔액조회
지정송금기능 (사업용 계좌)	단말기에 거래처 통장번호 사전 등록하고, 대금 지급 시 매입처 통장번호를 입력하지 않고 대금결제 처리 (Cf. 휴대폰의 One touch Call)
기타기능	현금영수증 발급, 수표번호 조회 등

다) 금거래계좌에 입금된 부가가치세의 정산·환급 및 국고납입

금거래 매입대금 지급거래 발생 시 부가가치세를 금거래 통장을 거쳐 사업용계좌로 실시간 입금 처리하며 부가가치세 예정 및 확정 신고 기간에 지정은행은 국세청에 부가가치세를 납부한다.

지정금융기관의 부가가치세 계좌에 입금된 금액의 처리절차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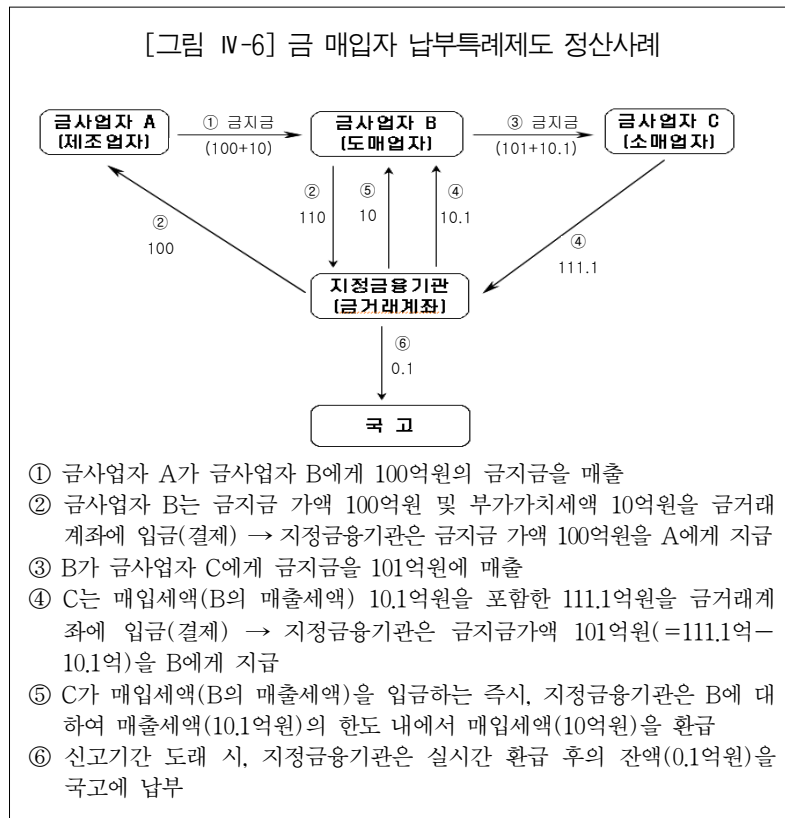
(1) 매입세액의 실시간 환급처리

금거래 사업자는 금 매출과 관련된 부가가치세의 인출제한으로 매출자의 사업자금이 동결되어 자금활용 기회를 상실하게 되는 바, 금거래 사업자의 자금부담 완화를 위하여 해당사업자의 금거래 매입세액 발생 시 매출세액 범위 내에서 금 매입세액을 실시간 환급 처리한다. 금지금 수입업자는 수입시 세관 또는 금거래계좌를 통하여 정해진 방식으로 납부한 부가가치세를 매입세액으로 보아 매출세액의 범위 내에서 환급처리한다. 금지금 체련업자는 매입자가 입금한 부가가치세액

(매출세액)에서 그 제련업자가 입금한 부가가치세액(매입세액)을 차감한 금액의 70%를 매입세액으로 보아 환급<sup>80)</sup>받을 수 있다.

(2) 부가가치세 예정 또는 확정신고 기한에 부가가치세 잔액을 국고이체

환급되지 않고 남아 있는 세액은 예정 또는 확정신고 납부기한에 금사업자(매출자)별로 국고에 입금된다.



80) 다음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환급받을 세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 ② 체납이나 포탈 등의 우려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표 IV-9〉 금 매입자 납부특례제도 정산사례

순번	매입세액	매출세액	실시간 환급세액	국고입금예정세액
1	100			
2		110	100	10
3	100		10	-10
4		111.1	101	10
5			10	10
분기결산	221	221.1	221	0.1

라) 금거래계좌 사용 시 세제혜택

금사업자가 금거래계좌를 사용하여 금지금의 가액을 결제하거나 결제받은 경우(매입자납부 익금 또는 손금)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법인세액 또는 소득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 증가분 방식

$$\text{산출세액} \times \frac{\text{당해과세연도의 이용금액} - \text{직전과세연도의 이용금액}}{\text{익금및손금의 합계액}} \times 50\%$$

○ 당기분 방식

$$\text{산출세액} \times \frac{\text{매입자납부익금및손금의 합계액}}{\text{익금및손금의 합계액}} \times 5\%$$

마) 금거래계좌 미사용에 대한 불이익

금거래계좌를 미사용하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하고 매입세액 불공제의 불이익이 있다.<sup>81)</sup>

## (1) 가산세

금매입사업자가 금거래계좌를 사용하지 않고 금지금 거래 대금을 결제한 경우에는 공급한 금사업자 및 공급받은 금사업자에게 금지금 가액의 100분의 20을 가산세로 징수한다.

$$\text{금거래계좌 미사용가산세} = \text{제품가격} \times 20\%$$

한편 금지금을 공급받은 금사업자가 금지금을 공급받은 날에 부가가치세액을 금거래계좌에 입금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일 3/10,000 (연환산 금리 10.95%) 가산세를 부과하며 부가가치세 지연은 예정/확정 신고기간까지만 가능하며, 이후에는 매입세액을 불공제한다. 즉, 부가가치세 신고기한까지 납부하지 않는 경우 가산세를 징수하지 않고 매입세액을 불공제한다.

$$\text{납부불성실가산세} = \text{부가가치세액} \times \text{미입금기간}^{82)} \times 0.03\%$$

## (2) 매입세액 불공제

금지금을 공급받은 금사업자가 금거래계좌를 통하여 부가가치세액을 입금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금지금을 공급한 금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더라도, 동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81)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4③에 의거하여 부가가치세만 금거래계좌를 통하여 납부할 수 있는 거래는 다음과 같다. ①환어음·판매대금 추심의 회서 ②기업구매전용카드 ③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제도 ④구매론제도 ⑤ 네트워크론제도

82) 공급받은 날의 다음날부터 부가가치세액을 입금한 날까지(과세표준신고기한 한도)



## 나. 주류결제 시스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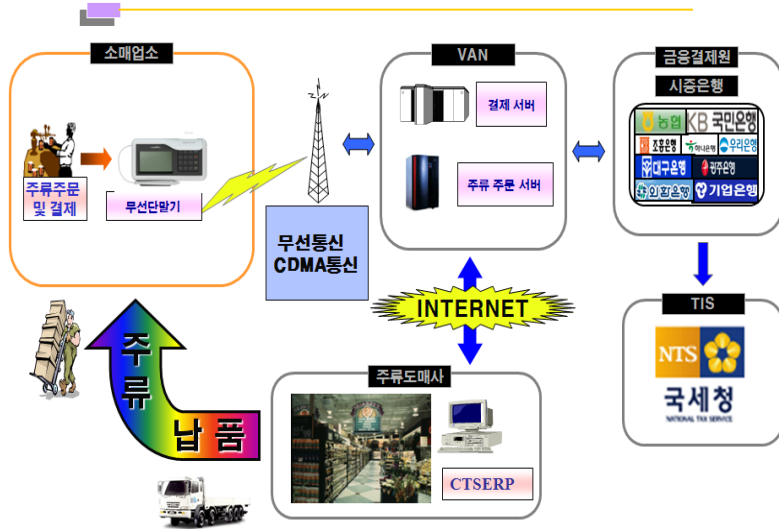
주류결제 시스템은 주류거래의 투명성 확보 및 음식점 등 주류소매상의 과표 적정성 판단을 위한 자료 축적 등의 목적으로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이용 비율은 2002년 말 기준 약 95.7%에 이르고 있다.

주류결제 시스템에 참여하는 이해 당사자는 크게 주류도매상 및 소매상, 결제담당은행, 무선단말기 공급업체, 주류 ERP시스템 운용업체 등이 있다.

- 주류도매상: 주류결제를 위하여 무선단말기를 운용하며 주류 결제금액의 0.12%를 수수료로 부담한다.
- 주류소매상: 주류결제 참여은행에서 주류구매전용카드(현재까지 약 63만장 발급)를 발급받아 도매상 보유 단말기를 통하여 주류 대금을 결제한다.
- 결제 담당은행: 신한은행 및 농협 등 다수 시중은행이 참여하고 있으며, 주류결제 정보의 국세청 통보 등 결제시스템을 운용하는 대가로 수수료를 수취한다.
- 무선단말기 공급업체: 금융결제원 및 KS Net 등 다수업체가 참여하고 있으며, 무선단말기를 무상 공급하고, 주류결제금액의 일부를 수수료로 수취한다.
- 주류 ERP 시스템 운용업체: 주류 도매업자를 위하여 주종별 주문, 출고, 입고 및 결제 정보를 제공한다.

IV.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제도」 국내의 사례 137

[그림 IV-7] 주류결제 시스템 운영 흐름도



## V. 거래징수제도 개선방안

우리나라는 소득과약 및 근거과세를 실현하기 위해 세금계산서 제도(부가가치세 거래징수)와 지급조서 제도(소득·법인세 원천징수)를 운영하고 있다. 두 제도는 우리나라 세제의 기본 축으로 납세자 간 상호견제 기능을 통해 현행 자진신고 납부제도의 운영을 가능하게 한다.

원천징수는 소득자, 즉 원천납세의무자와 정부 간에 납세의무가 존재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그 징수방법에 있어서 과세권자가 직접 징수하지 아니하고 당해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원천징수의무자가 되어 그 소득에 대한 조세를 징수하여 납부하도록 하는, 징수방법에 관한 특례를 인정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이러한 원천징수는 법에 규정함으로써 비로소 그 효력이 발생하는 창설적 규정이다.<sup>83)</sup> 반면, 거래징수는 부가가치세를 소비세제로 운영하는 한 각 거래단계마다 대금의 일부로 전가되어 최종소비자에게 당해 조세가 귀착되어야만 하기 때문에 이러한 거래징수에 관한 명문규정이 없다 하더라도 당연히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야 하는 것을 선언한 확인적 또는 선언적 규정이라 할 것이다.<sup>84)</sup> 이에 대하여 헌법재판소에서는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는 사업자이므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거래상대방은 재정학상 사실상 담세자로서의 지위를 갖고 있을 뿐 조세법상 납세의무자로서의 지위에 있는 것은 아니며 부가가치세를 사실상 누가 부담하며 어떻게 전가시킬 것인가 하는 문제는 거래당사자 간의 약정 또는 거래관행 등에 의하여 결정될 사항이지 조세법에 따라 결정되는 사항은 아니라고 결정하여 거래징수가 확인적 규정임을 밝

83) 최명근·나성길(2007), p. 446

84) 강만수·이강류(1977)

하고 있다.<sup>85)</sup>

소득세·법인세 원천징수제도와 부가가치세 거래징수제도는 새로운 납세환경에 부합하게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 원천징수제도는 세수확보 측면만 강조되어 사업자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침해할 소지가 있고 납세협력비용을 많이 발생시킨다는 문제가 있다. 부가가치세 거래징수는 결제 흐름과 역행하여 거래징수자체가 용이하지 않고, 비용이 역진적으로 발생한다는 문제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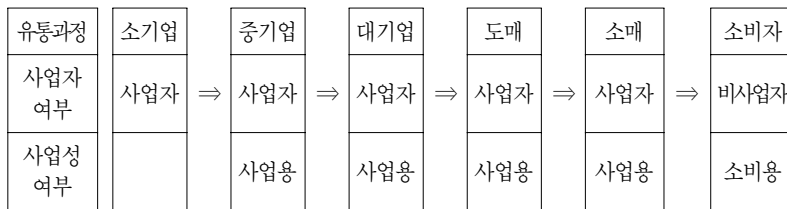
〈표 V-1〉 징수제도의 특성

구 분	원천징수제도	거래징수제도
적용세법	직접세(소득·법인세)	간접세(부가가치세)
적용대상	사업자, 비사업자 모두	사업자만
적용범위	용역	재화와 용역
결제흐름과 납세자	지급자	지급받는 자
납세자	일반상황	담세자(소득자)의 상대방
	특수상황 (유통단계)	개인→법인 : 법인 <sup>1)</sup> 법인→개인, 법인 : 법인 <sup>2)</sup> 개인, 법인→금융기관 : 금융기관 <sup>3)</sup>
		담세자(매입자)의 상대방 * 금지금 예외

- 주: 1) 「소득세법」 제133조의 2에 따르면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채권 등의 발행법인으로부터 이자 등을 지급받거나 해당 채권 등을 발행법인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에게 매도하는 경우, 해당 채권 등의 발행법인 등을 원천징수의무자로 한다.
- 2) 「법인세법」 제73조 제8항에 따르면 내국법인이 「소득세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채권 등에서 발생하는 이자, 할인액 및 투자신탁의 이익의 계산기간 중에 해당 채권 등 또는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타인에게 매도하는 경우 원천징수대상채권 등의 보유기간에 따른 이자 등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법인이 원천징수의무자를 대리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 3) 「법인세법」 제73조 제5항에 따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등이 내국법인이 발행한 어음이나 채무증서를 인수·매매·중개 또는 대리하는 경우에는 금융회사 등과 그 내국법인 간에 대리 또는 위임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본다.

85) 헌재 200.3.30, 98헌바7.18(병합)

「사업자와 최종소비자(B2C) 거래」에 있어서는 사업자가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사업자와 사업자(B2B) 거래」에 있어서는 원천징수제도와 같이 납세편의, 납부의무의 이행 가능성을 고려하여 대리납세자를 유연하게 정할 필요가 있다. 즉, 「사업자와 최종소비자(B2C) 거래」는 당연히 사업자에게 거래징수권리·의무를 부여하고, 「사업자와 사업자(B2B) 거래」는 전단계세액공제법이든 후단계세액공제법이든 납세자 편의, 징수를 제고를 위하여 유연하게 거래징수제도를 운영할 필요가 있다.



선진국 사례에서처럼 「매입자 납부제도(Reverse Charge)」를 도입함으로써 기존의 부가가치세 거래징수제도의 혼란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있을 수 있으나<sup>86)</sup>, 매입자 납부제도는 현행 「전단계세액공제법」으로 발생되는 문제점을 보완·완성하기 위하여 공급자의 거래징수를 부인하는 것이 아닌 거래징수의 대리제도이며, 적용대상도 세무이행능력을 감안하여 일부사업자에 한정하자는 것이다. 「법인세법」 제73조에 따르면 금융기관 등의 원천징수 대리 금융기관과 법인에게 별도의 대리 및 위임의 관계가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라도 금융기관이나 법인의 월등한 원천징수의무 이행능력, 실무상의 편의를 감안

86) 현행 부가가치세법은 「전단계세액공제방법」을 적용하여 공급자가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고 있는데, 매입자를 거래징수자로 하는 경우 현행 부가가치세제의 운영체제와 충돌되어 혼란을 줄 수 있다고 우려할 수 있음.

하여 금융기관이나 법인을 원천징수의무자로 의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부가가치세는 간접세로서 납세자가 본인의 세금이 아닌 담세자의 세금을 징수하여 납부하는 제도이며, 따라서 납세편의와 납세자가 담세자로부터 징수된 세금을 탈루하지 않고 그대로 국고로 납부하는 납부의무의 이행이 가장 중요하다. 소득세 등 직접세에 적용되는 원천징수제도도 이러한 점을 반영하여 납세자를 원칙적으로 담세자의 상대방으로 하되 개인과 법인 또는 금융기관 간의 거래 등에 있어서는 예외적으로 법인이나 금융기관이 대리하여 그 의무를 이행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부가가치세 거래징수제도는 금지금을 제외하면 예외 없이 담세자의 상대방을 납세자로 하고 있다.

정보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다양한 방식으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 바, 그 중 전자상거래<sup>87)</sup> 규모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최근의 전자상거래동향을 살펴보면 2009년 전자상거래 총거래액<sup>88)</sup>은 672조 4,780 억원으로 2001년에 비해 465%, 2008년도에 비해서는 6.7% 증가하여 꾸준히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다. 연간 증가율은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2009년도의 연간 증가율은 2001년도의 통계작성 이래 6.7%로 2001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나타냈다.

87) 전자상거래란 컴퓨터와 네트워크라는 전자적인 매체를 통하여 상품 및 서비스의 거래가 이루어지는 방식으로 거래의 여러 과정 중에서 입찰·계약·주문 중 최소한 하나의 절차가 컴퓨터 네트워크상에서 이루어진 경우를 말함.

88) 전자상거래액은 기업간(B2B), 기업·정부간(B2G), 기업·소비자간(B2C), 소비자간(C2C) 전자상거래액을 모두 합산하여 집계한 것임.

〈표 V-2〉 거래주체별 전자상거래 규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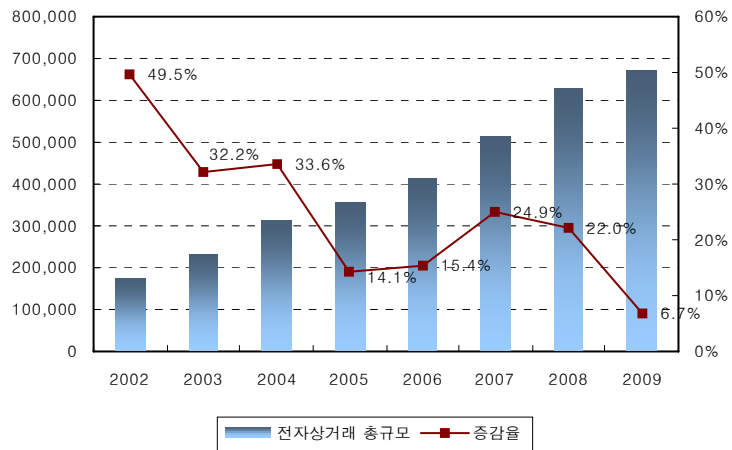
(단위: 십억원)

구분	전자상거래 총규모	기업간거래 (B2B)	기업·정부간 거래 (B2G)	기업·소비자간 거래 (B2C)	소비자간 거래 (C2C)
2001	118,976	108,941	7,037	2,580	418
2002	177,810	155,707	16,632	5,043	427
2003	235,025	206,854	21,634	6,095	442
2004	314,079	279,399	27,349	6,443	888
2005	358,450	319,202	29,036	7,921	2,292
2006	413,584	366,191	34,435	9,132	3,826
2007	516,514	464,456	36,801	10,226	5,032
2008	630,087	560,255	52,266	11,359	6,207
2009	672,478	592,965	59,455	12,045	8,012

자료: 통계청, 각 연도

[그림 V-1] 전자상거래액 및 규모(전년도 대비)

(단위: 십억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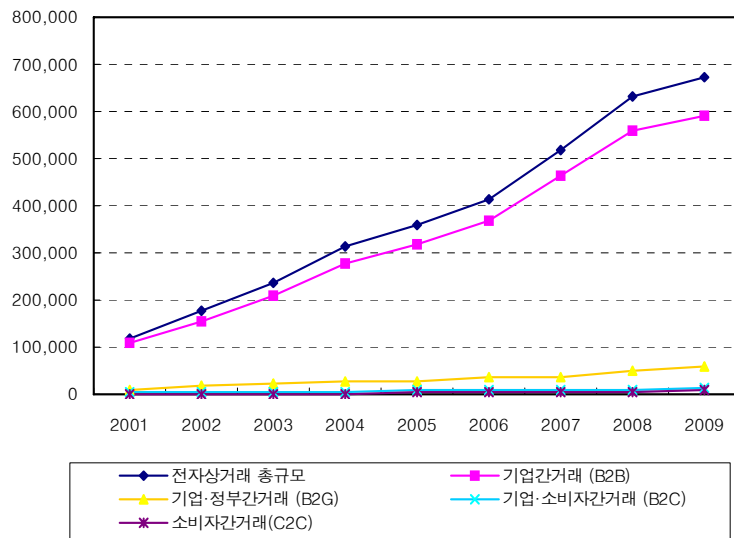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각 연도

2001년도 이후 거래주체별 전자상거래 규모 추이를 살펴보면, 각 부문별 거래금액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09년에는 2001년도에 비해 소비자간 전자상거래(C2C)가 약 19배, 기업·정부간 전자상거래(B2G)가 약 8.4배, 기업·소비자간 전자상거래(B2C)가 약 4.7배, 기업간 전자상거래(B2B)가 약 5.4배의 순으로 각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자상거래 총규모의 추이는 부문별 거래내역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기업간 전자상거래(B2B)와 유사한 형태를 보이고 있다.

[그림 V-2] 연도별 거래주체별 전자상거래 규모 추이

(단위: 십억원)



자료: 통계청, 각 연도

전자상거래 총규모가 2008년 대비 6.7% 증가한 요인을 부문별로 살펴보면 거래액 비중이 가장 높은 기업간 전자상거래(B2B, 88.1%)가

592조 9,650억원으로 2008년에 비해 5.8% 증가하여 평균보다 낮게 나타난 반면, 기업·정부간 전자상거래(B2G)가 59조 4,550억원으로 13.8%, 소비자간 전자상거래(C2C)가 8조 120억원으로 29.1%로 비교적 높은 증가를 나타냈다.

2010년도 부문별 거래내역 구성비중을 살펴보면 기업간 전자상거래(B2B)가 592조 9,650억원, 88.18%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기업·정부간 전자상거래(B2G)가 59조 4,550억원으로 8.84%, 기업·소비자간 전자상거래(B2C)가 12조 450억원으로 1.79%, 소비자간 전자상거래(C2C)가 8조 120억원으로 1.19%의 순으로 나타났다. 전년도인 2009년에 비해 기업간 전자상거래(B2B), 기업·소비자간 전자상거래(B2C)는 -0.74%포인트, -0.01%포인트 각각 축소된 반면, 기업·정부간 전자상거래(B2G), 소비자간 전자상거래(C2C)는 0.54%포인트, 0.2%포인트 각각 확대되었다.

〈표 V-3〉 부문별 거래내역

(단위: 십억원, %)

구 분		2009년		2010년		증감률
			구성비		구성비	
총 거래액		630,087	100.0	672,478	100.0	6.7
거 래 주 체 별	- 기업간(B2B)	560,255	88.92	592,965	88.18	5.8
	- 기업·정부간(B2G)	52,266	8.30	59,455	8.84	13.8
	- 기업·소비자간(B2C)	11,359	1.80	12,045	1.79	6.0
	- 소비자간(C2C)	6,207	0.99	8,012	1.19	29.1

자료: 통계청, 각 연도

2009년도 산업별 거래액은 전년도에 비해 제조업은 375조 2,460억원으로 4.3%, 도·소매업 105조 730억원으로 9.2% 각각 증가한 반면, 건설업은 56조 9,780억원으로 10.0% 감소하였다.

〈표 V-4〉 연도별 산업별 기업간 전자상거래(B2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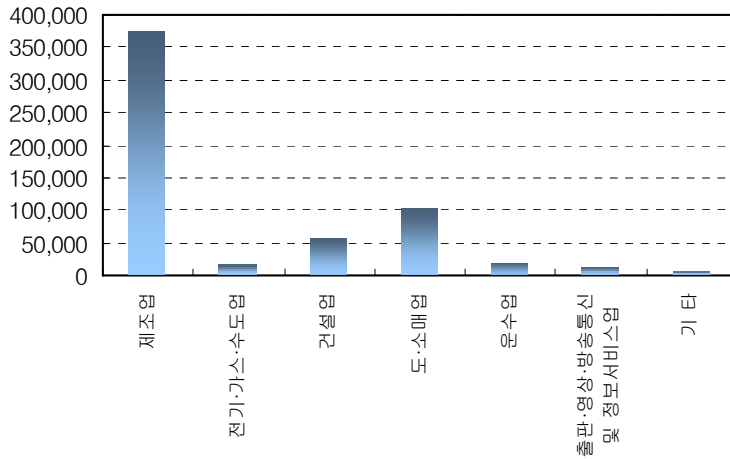
(단위: 십억원)

구분	산업별 기업간 전자상거래(B2B)							
	총합계	제조업	전기·가스·수도업	건설업	도·소매업	운수업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기타
2001	108,941	86,984	815	4,437	14,195	933	1,240	336
2002	155,707	117,935	1,070	5,774	25,730	1,223	3,293	682
2003	206,854	146,132	2,289	9,664	41,117	1,447	4,778	1,426
2004	279,399	197,067	3,657	16,097	51,421	1,463	7,478	2,217
2005	319,202	212,086	5,186	24,046	62,413	2,879	7,329	5,262
2006	366,191	239,323	8,552	29,334	68,035	4,667	10,136	6,143
2007	464,456	298,399	9,518	46,160	82,478	7,850	11,029	9,022
2008	560,255	359,732	10,807	63,288	96,185	8,456	11,514	10,273
2009	592,965	375,246	15,066	56,978	105,073	19,305	13,713	7,582

자료: 통계청, 각 연도

[그림 V-3] 산업별 기업간 전자상거래(B2B) 비중(2009년도)

(단위: 십억원)



자료: 통계청, 각 연도

산업별 기업간 전자상거래(B2B) 비중은 제조업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도·소매업, 건설업, 운수업, 전기·가스·수도업,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기타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제조업의 경우 2009년도에 63.3%의 비중을 차지하여 2008년도 64.2%에 비해 0.9%포인트 축소된 반면, 운수업과 도·소매업은 각각 1.71%포인트, 0.5%포인트 확대되었다. 특히, 산업별 거래내역 중에서 거래액이 경기침체 등으로 처음으로 감소한 건설업의 경우에는 그 비중이 2008년도에 비해 약 2.4%포인트 축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2009년도 사이버쇼핑 거래액<sup>89)</sup>이 소매판매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8.21%로 처음으로 8% 수준을 상회하였으며 이는 2008년도 7.5%에 이어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추세이다. 2009년도 소매판매액은 251조 5,500억 원으로 2008년도에 비하여 3.9% 증가하였으나, 사이버쇼핑 거래액은 13.8% 증가한 20조 6,420억 원을 나타냈다. 사이버쇼핑은 가격 경쟁력과 편의성이라는 장점으로 인하여 지속적인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다.

〈표 V-5〉 소매판매액에서 사이버쇼핑(B2C 등)의 거래비중 비교

(단위: 십억원, %)

구 분	2005	2006	2007	2008	2009
소매업태별 판매액(연간경상, A)	203,412	213,970	226,630	241,996	251,550
사이버쇼핑(연간경상, B)	10,675	13,459	15,765	18,146	20,642
비중(B/A)	5.25	6.29	6.96	7.50	8.21

자료: 통계청, 각 연도

사이버쇼핑 거래의 지불결제수단별 구성비를 살펴보면, 2009년 연간 지불결제수단별 구성비는 카드 68.5%, 계좌이체 27.7%, 전자화폐

89) 사이버쇼핑 거래액은 B2C거래액을 중심으로 사이버쇼핑몰에서 거래된 부분을 집계한 것임.

0.7%, 기타의 순으로 나타나 지불결제수단으로 신용카드가 가장 많이 사용되었다. 2008년도에 비해 카드는 1.3%포인트 비중이 확대되었으나 계좌이체는 -1.6%포인트 축소되었다.

〈표 V-6〉 지불결제수단 및 배송수단별 구성비 동향

(단위: %, %p)

구 분		2008년	2009년p	전년 대비 증감
합 계		100.0	100.0	
지불결제 수단별	계좌이체	29.3	27.7	-1.6
	카 드	67.2	68.5	1.3
	전자화폐	0.7	0.7	0.0
	기 타	2.8	3.2	0.4

주: P는 잠정치임  
자료: 통계청, 각 연도

## 1. 「사업자와 최종소비자간(B2C) 거래」

국제행정도 새로운 전자금융 및 결제 환경의 변화에 부응하여 개선되어야 하며,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도 거래징수의 효율화를 도모하고 새로운 금융기회를 창출해야 한다. IT강국으로서 우리나라가 보유하고 있는 최첨단 인프라 및 결제시스템을 세무행정에 반영하여 세계 최고수준의 징수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가능하다.

1999년도 정부의 신용카드 활성화 정책의 결과로 신용카드가 보편적 결제수단으로 자리매김함에 따라, 신용카드사를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의무자로 지정하여 우리나라 세수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부가가치세 세수의 안정적 확보를 달성할 수 있다. 과거에는 결제단계가 「소비자 → 사업자 → 국가」의 순이었으나 현재는 「소비자 → 전자금융업자(신용카드회사) → 사업자 → 국가」의 순으로 변화하여 신용카드를 통한 수입금액이 노출되고 있다. 따라서 전자금융업자인 신용카드

사업자를 부가가치세 거래징수 및 대리납부자로 지정함으로써 사업자와 최종소비자 거래시 부가가치세 징세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다.

2010년 현재 신용카드 가맹점은 약 160만개, 재화와 용역의 결제대금은 약 379조 5천억원에 이르나 대부분의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 시 신용카드매출과 현금영수증 발행금액만을 매출로 신고하는 실정이다.

〈표 V-7〉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실적

(2009. 12 기준, 단위: 조원, %)

현금매출과표(A)	신용카드(B)	현금영수증(C)	비율(B/A)
448.2	379.5	68.7	84.7

자료: 여신전문금융업협회, 국세청

〈표 V-8〉 신용카드 사업자현황(2010년 6월말 기준)

구분		사업자수	사업자명
전업카드사	은행계	4	비씨, 신한, 산은캐피탈, 하나SK
	전문계	3	삼성, 현대, 롯데
겸영 은행		14	경남, 국민, 기업, 농협, 대구, 부산, 우리, SC제일, 한국씨티, 제주, 수협, 전북, 광주, 외환
유통계 겸영 신용카드업자		11	백화점, 쇼핑센터 등 유통업체
총 사업자수 (전업 및 겸영)		32 (21)	

주: 1. 산은캐피탈 : 기업구매카드에 대해서만 신용카드업 허가(2002. 1월)  
 2. LG카드 : 신한카드와 통합(2007. 10. 1)  
 3. 하나SK카드 : 하나카드출범(2009.11.2) 후, 하나SK카드사 명 변경(2010.2.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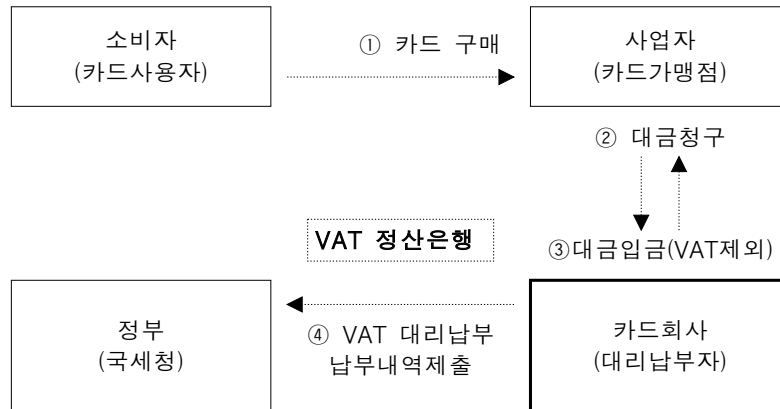
자료 : 여신금융업협회(2010.06)

## 가. 개선방안

### 1) 개요

신용카드 사업자(또는 은행)를 부가가치세 거래징수 및 대리납부의 무자로 지정한다.

[그림 V-4] 신용카드 결제분 거래징수 개념도



- ① 소비자(카드사용자)는 신용카드로 대금을 지급하고 물품을 구매
- ② 신용카드가맹점은 신용카드회사에 대금을 청구
- ③ 신용카드회사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을 카드가맹점에 대금으로 지급
- ④ 신용카드회사는 VAT 정산은행을 통하여 정부(국세청)에 매출세액을 대리납부하고 납부내역을 제출

## 2) 관련법령 검토(유사사례)

### 가) 사업자단위과세제도<sup>90)91)</sup>

#### (1) 의 의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 사업장이 아닌 사업자 단위로 모든 납세의무를 이행하는 제도이다. 각 사업장별로 납부(환급)세액의 신고·납부, 사업자등록 및 세금계산서 교부를 하게 되면 그 절차가 복잡하여 과세관청이나 납세자 모두 불편하고 비효율적이므로 사업자의 납세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사업자단위과세제도를 운영중이다.

사업자단위과세제도는 전산시스템의 발달로 본사 또는 주사업장에서 기업자원관리설비 등 전산시스템설비를 갖추어 구매·생산·판매·물류 및 회계 등을 통제·관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장별과세원칙에 따라 각 사업장별로 납부(환급)세액의 신고·납부, 사업자등록 및 세금계산서 교부를 하게 되면 그 절차가 복잡하여 과세관청이나 납세자 모두 불편하고 비효율적이므로 사업자의 납세편의를 제고하기 위한 제도이다.

부가가치세를 사업자단위과세제도로 운영함에 따라 당해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서 총괄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다. 따라서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등록·세금계산서 수수·세액계산·신고·납부·수정신고·경정청구 등 모든 의무를 총괄하며, 결정·경정의 관할기관 판정기준도 본점·주사무소가 된다. 사업자등록은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서 하며,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자등록번호로 단일화한다.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서 하나의 사업자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90) 「부가가치세법」 제4조, 제5조

91) 황종대 외(2010), pp. 225~228

(2) 사업자단위과세 적용사업장

사업자단위과세 적용사업장은 법인인 경우에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로 하고, 개인인 경우에는 주사무소로 한다. 따라서 법인의 본점이 아닌 지점은 사업자단위 적용사업장이 될 수 없다.

(3) 적용 요건 및 적용시기

2010. 1. 1.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는 기존의 사업자단위과세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2항에 따라 등록한 것으로 간주되고, 새로이 사업자단위과세제도를 하는 사업자는 전산시스템 구비요건을 요하지 아니한다.<sup>92)</sup>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사업자단위로 해당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단위과세 사업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 계속사업자는 그 적용받으려는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까지 등록하여야 하며, 신규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을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신청이 있는 경우 그 신청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사업자단위과세가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4) 사업자단위과세의 효력

사업자단위과세 적용사업장인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각 사업장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법이 적용된다. 따라서 사업자등록, 세금계산서의 교부, 과세표준의 계산, 신고·납부 등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사업자단위과세 적용사업장만을 사업장으로 보아 사업자등록을 하고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

92) 종전에는 사업자단위과세를 적용받기 위하여 사업자가 전 사업장의 자원을 통합하여 전자적 형태로 관리하기 위한 전사적 기업자원관리설비로서, 제조업의 경우에는 구매·생산·판매·재고 및 회계기능을 모두 처리하여 보관할 수 있어야 하고, 제조업 외의 업종인 경우에는 구매·판매·재고 및 회계기능을 모두 처리하여 보관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을 갖추어야 했다(구 부령 §6의 2).

사업자단위과세의 적용을 받는 사업자는 사업자단위과세 적용사업장의 관할세무서장에게 과세표준과 세액을 총괄하여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사업자단위과세 적용사업장 외의 종된 사업장은 신고·납부의무가 없다. 사업자단위과세제도에서는 사업자단위과세 적용사업장을 각 사업장으로 보도록 하고 있으므로 수정신고도 사업자단위과세 적용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하여야 한다.

사업자가 사업자단위과세의 적용을 받는 과세기간에 반출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 (5) 사업자단위과세의 변경·철회 및 포기

2010. 1. 1.부터 사업자단위 과세제도의 승인요건인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 전산시스템설비 구축규정이 없어지고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게 되었다. 모든 사업자에게 사업자단위 과세제도의 선택이 허용되었으며, 이에 따라 사업자단위과세와 관련한 승인의 변경 및 철회규정도 함께 폐지되었다.

사업자단위과세 사업자가 각 사업장별로 신고·납부하거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주사업장 총괄납부를 하려는 경우에는 그 납부하려는 과세기간이 시작되기 20일 전에 사업자단위 적용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포기신고를 하여야 한다.<sup>93)</sup> 이 경우 사업자단위과세의 포기는 사업자단위과세 사업자로 등록한 날로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할 수 있다.

#### 나) 주사업장 총괄납부제도<sup>94)95)</sup>

주사업장 총괄납부제도란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신고·납부하는

93) 사업자의 인적사항, 사업자과세단위 포기사유, 그 밖의 참고사항을 적은 사업자단위과세포기신고서를 제출

94) 「부가가치세법」 제4조

95) 황종대 외(2010), pp. 214~221

것이 원칙이나 동일한 사업자에게 2개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로서 관할세무서장에게 총괄납부 신청한 때에는 부가가치세를 각 사업장마다 납부하지 아니하고 주된 사업장에서 주사업장 이외의 사업장의 납부세액까지 총괄하여 납부할 수 있는 제도이다.

2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가 전체 사업장으로 볼 때는 납부액이 없지만, 사업장 단위로 보면 어느 한 사업장에서 납부세액이 발생하고 다른 사업장에서는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경우, 사업자는 절차상 납부를 먼저 해야 하고 환급은 나중에 받아야 하므로 이로 인한 자금상의 부담이 생기므로 자금압박문제를 해소하고 납세편의를 도모하기 위함이다.

[그림 V-5] 주사업장총괄납부 개념도

5.1 매입 10,000	제 조 장	직매장	6.1 매출 12,000
	매출세액 0	매출세액 1,200	
	매입세액 1,000	매입세액 0	
	△1,000	1,200	
	환급(8.24)	납부(7.25)	

(1) 총괄납부와 납세지와의 관계

부가가치세의 신고 및 납부의무는 모든 사업장별로 이행함이 원칙이고 주사업장 총괄납부제도는 부가가치세법상 모든 의무 중 단순히 납부에 관한 예외적 규정이므로 총괄납부 신청 이후에도 신고는 각 사업장 소관세무서가 관할세무서가 되며, 총괄납부 신청 자체가 본래 신고납부에 있어서의 사업장 관할을 변경시키는 것은 아니다.

## (2) 대상사업자

주사업장에서 부가가치세를 총괄납부할 수 있는 사업자는 2개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법인 및 개인사업자 포함)로서 주된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총괄납부 신청을 한 사업자로 한다.

## (3) 주된 사업장

법인은 본점 및 지점(분사무소) 중 사업자의 자유로운 선택에 의하여 주사업장으로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장에 있어서는 주사무소를 주사업장으로 한다.

## (4) 총괄납부의 신청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하여 납부하려는 자는 그 납부하려는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에 주된 사업장의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가 총괄하여 납부하려는 경우에는 주된 사업장의 사업자등록증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는 해당 신청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총괄하여 납부한다.<sup>96)</sup>

## (5) 총괄납부의 효력

총괄납부사업자는 각 사업장의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사업장 간에 통산하여 주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거나 환급받게 된다. 총괄납부란 사업장별로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계산된 납부세액(환급세액)을 서로 합산 또는 상계하여 그 잔액만을 납부하거나 환급받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 전 사업장의 과세표준 및 매출세액과 매입세액을 사업장 간에 통산하여 납부세액을 총액으로 산정하라는 것은 아니다. 이것이 「사업장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환급세액)신고명세서」를 제출하는 이유이다.

96) 주사업장 총괄납부 승인절차가 폐지되어 2010년 7월 1일부터는 사업자의 신청만으로 주사업장 총괄납부제도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되었다.

총괄납부를 하는 경우에도 사업자는 과세표준·매출세액 또는 매입세액을 각각 사업장 간에 통산하여 납부(환급)세액을 계산해서는 안 되며, 사업장별로 각각 납부(환급)세액을 계산하여 이를 각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각각 신고하여야 한다. 총괄납부를 하는 경우에도 세금계산서는 각 사업장별로 작성·발급하여야 하며,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의 결정 및 경정은 원칙적으로 각 사업장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이 행한다.

한편 2개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자기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 또는 취득한 재화를 타인에게 직접 판매할 목적으로 다른 사업장에 반출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이나, 총괄납부사업자가 총괄납부를 하는 과세기간 중에 반출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그러나 총괄납부사업자의 경우에도 자기의 사업장 간 직매장 반출 등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이를 신고한 경우에는 재화를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 (6) 총괄납부의 변경·직권취소 및 포기

종된 사업장의 신설 또는 종된 사업장을 주된 사업장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등 일정한 사유발생<sup>97)</sup> 시 변경신청하여야 한다. 주사업장 총괄납부 변경신청을 한 경우에는 그 변경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총괄하여 납부한다.<sup>98)</sup> 주사업장 총괄납부사업자가 ① 사업내용의 변경으로 총괄납부가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 ② 주된 사업장의 이

97) 종된 사업장을 신설하는 경우, 종된 사업장을 주된 사업장으로 변경하려는 경우, 시행령 제11조 제1항 각호에 규정하는 사업자등록 정정사유가 발생한 경우, 일부 종된 사업장을 총괄납부대상 사업장에서 제외하려는 경우, 기존의 사업장을 총괄납부대상 사업장에 추가하려는 경우

98) 다만, 총괄납부사업자의 주된 사업장 또는 종된 사업장에 등록정정사항이 발생한 경우 변경신청을 하여야 하나 이러한 변경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관할세무서장의 직권 취소가 없는 한 당해 총괄납부는 계속 유효하게 적용된다.

동이 빈번한 때 ③ 그 밖에 사정 변경에 의하여 총괄납부가 적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장은 해당 사업장의 주사업장 총괄납부를 직권으로 취소할 수 있다.

총괄납부사업자가 총괄납부를 포기하고 각 사업장에서 납부하려고 할 때에는 주사업장 총괄납부포기신고서를 주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납부하고자 하는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에 ① 사업자의 인적사항 ② 총괄납부포기사유 ③ 그 밖의 참고사항을 기재한 주사업장 총괄납부포기신고서를 주된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주사업장 총괄납부를 직권으로 취소하거나 포기한 경우에 주된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지체 없이 그 내용을 당해 사업자와 주사업장 이외의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3) 구체적 적용방안

#### 가) 거래징수 특례적용 대상자

첫째, 모든 신용카드 거래에 대하여 일괄 적용하는 방안이다. 이 경우 관리능력이 우월한 신용카드회사를 모든 신용카드거래에 대한 대리납부의무자로 지정한다.<sup>99)</sup>

둘째, 부가가치세 거래징수 특례적용 대상자를 업종별·사업자별로 구분하여 지정하는 방법이다. 이 경우 법인을 제외하여 개인사업자만, 또는 주류업자 등 유통질서가 문란하거나 체납비율이 높은 사업자에 한하여 적용한다.

99) 「법인세법」 제73조 제5항에서는 금융기관 등의 원천징수 대리 금융기관과 법인에게 별도의 대리 및 위임의 관계가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라도 금융기관이 법인의 월등한 원천징수의무 이행능력, 실무상의 편의를 감안하여 금융기관이나 법인을 원천징수의무자로 의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V. 거래징수제도 개선방안 157

셋째, 국세청의 신용카드 가맹점 권장대상 사업자를 부가가치세 거래징수 특례적용 대상자로 지정하는 방안이다. 국세청장은 소매업·음식점업·숙박업 기타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납세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가맹점 가입대상자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 3의 규정에 의한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대상자로 지정하여 신용카드가맹점 또는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도록 지도한다. 신용카드 권장대상 개인사업자는 전년도 과세표준 또는 수입금액이 2,400만원 이상인 소비자 상대업종 사업자를 의미한다. 직전연도 신규사업자의 경우에는 연환산 수입금액을 적용한다. 신용카드 권장대상 법인사업자는 소비자 상대업종 전체 사업자를 의미한다.

〈표 V-9〉 신용카드 가맹 권장사업자 현황(2008. 12. 31일 기준)

(단위: 명)

구 분	전체 가입자수	가맹점 업태별			
		소매업	음식·숙박업	서비스업	기타
신용카드가맹점	1,869,706	495,706	537,445	376,605	459,950
현금영수증가맹점	1,918,681	538,496	543,191	447,927	389,067

자료: 『국세통계연보』(2009)

나) 거래징수 특례적용 대상거래

부가가치세 거래징수 특례적용 대상거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거래로 한정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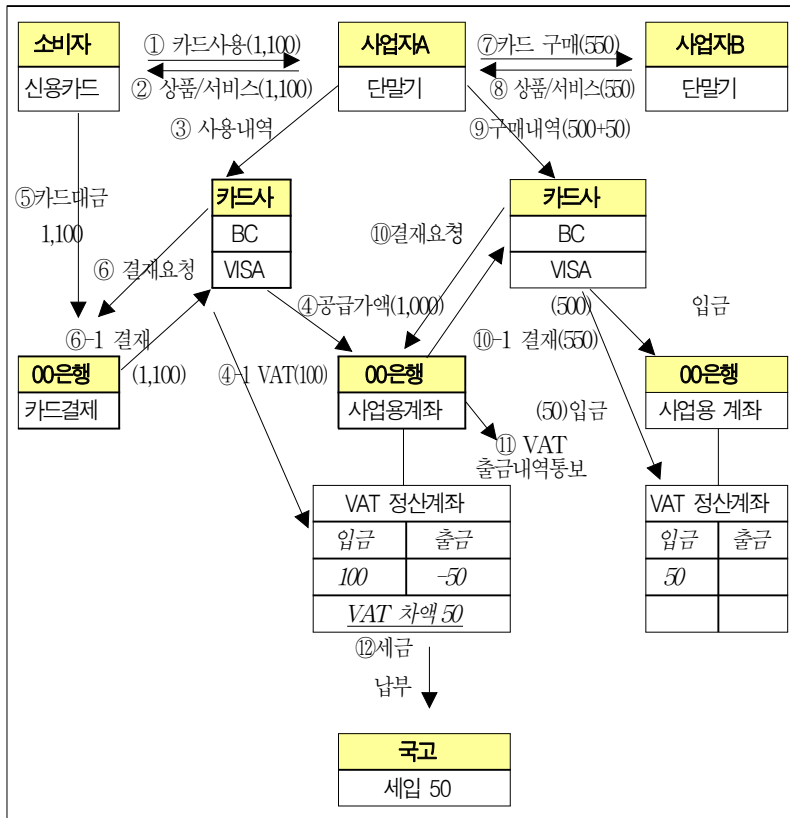
다) 부가가치세 신용카드 결제분 거래징수 절차

신용카드업자를 거래징수 대리자로, VAT정산은행을 VAT납부대리자로 의제하여 운영함으로써 세수누락 방지 등 다양한 효과를 기대

할 수 있다.

- 부가가치세 세수의 예측가능성 제고
- 세수누락(결손, 체납) 방지 효과
- 납세협력비용 및 세무행정비용의 절감
- VAT 금융효과 발생

[그림 V-6] VAT 신용카드 결제분 거래징수 구현도



- ① 소비자는 사업자 A로부터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1,100원의 상품/서비스를 구매
- ② 사업자 A는 상품/서비스를 소비자에게 공급

V. 거래징수제도 개선방안 159

- ③ 사업자 A의 단말기를 통하여 사용내역이 신용카드사에 전송
- ④ 신용카드사는 사업자 A의 사업용계좌 개설은행에 공급가액 1,000원을 입금(결제)
- ④-1. 신용카드사는 사업자 A의 사업용계좌 개설은행의 VAT 정산계좌에 사업자 A의 매출세액 부가가치세 100원을 입금
- ⑤ 소비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대금 1,100원을 거래은행에 입금(결제)
- ⑥ 신용카드사는 소비자의 거래은행에 결제를 요청
- ⑥-1. 소비자의 거래은행은 신용카드사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대금 1,100원을 지급(결제)
- ⑦ 사업자 A는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사업자 B로부터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550원의 상품/서비스를 구매
- ⑧ 사업자 B는 사업자 A에게 상품/서비스를 공급
- ⑨ 사업자 B의 단말기를 통하여 구매내역이 신용카드사에 전송
- ⑩ 신용카드사는 사업자 A의 사업용계좌 개설은행에 결제를 요청
- ⑩-1. 사업자 A의 사업용계좌 개설은행은 신용카드사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대금 550원을 결제
- ⑪ 사업자 A의 사업용계좌 개설은행은 VAT 정산계좌에 매입세액 50원의 출금내역을 통보
- ⑫ 신고기간 도래시, VAT 정산계좌를 통하여 차액 50원의 세금이 국고에 납부

나. 관계법령 개정 검토(안)

신용카드 업자를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자로 지정하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신설이 필요하다.

[조세특례제한법 신설(안)] 신용카드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특례

- ① 부가가치세 제1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업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에게 부가가치세가 과

세되는 재화와 용역의 공급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리하여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 ② 제2항에 따라 신용카드업자가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한다.
- ③ 기타 부가가치세 거래징수의 특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 정한다.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신설(안)] 신용카드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특례의 범위 등

- ① 법 제○조 제1항에서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와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단, 부가가치세법 제25조 간이과세자를 제외한다.
- ② 법 제○조에 따라 신용카드업자가 부가가치세를 납부한 경우에는 납부세액에 대한 확인서를 작성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그 사본을 사업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 2. 「사업자와 사업자(B2B) 거래」

「사업자와 사업자(B2B) 거래」에 있어서는 부가가치세의 거래징수 제도를 납세자의 세무이행능력과 납세자 간 역학관계를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 시장우월적 지위에 있는 자 또는 세무이행능력이 탁월한 자에게 부가가치세 거래징수대리의무를 부여하여 영세사업자를 보호하고, 국세채납 및 결손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방법을 통하여 부가가치세 탈루가 경쟁력의 수단이 됨으로써 납세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는 건전한 정상사업자가 퇴출되는 현실을 타개하고 공정거래를 유도한다는 장점이 있다.

현실적으로 경기가 침체되면서 부가가치세의 전가가 곤란한 사업자

V. 거래징수제도 개선방안 161

의 경우 사업개시부터 수년간, 수십 건을 체납하고 있는 등 국세체납이 상습화, 관례화되고 있으며, 일단 자진납부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자의 국세 자진납부비율은 저조하다. 개인일반사업자의 체납비율이 12.8%로 가장 높고, 법인사업자는 5.2%, 간이사업자는 1.1% 수준이다.

〈표 V-10〉 부가가치세 과세대상별 체납현황 비교  
(2006년 12월 체납자 기준)

(단위: 명, 건, %)

구분	사업자수	체납자수	체납자비율	체납건수	체납금액
개인	2,222,597	284,940	12.8	664,014	15,034
법인	452,453	23,590	5.2	54,710	6,728
간이	1,729,823	19,751	1.1	31,237	153

자료: 국세청 통계

〈표 V-11〉 부가가치세 자진납부 미이행자의 체납비율(2008)

(단위: 억원, %)

구분	합계	무(과소)납부 <sup>1)</sup>	부가예정고지 <sup>2)</sup>	자료결정 <sup>3)</sup>	조사 <sup>4)</sup>	기타 <sup>5)</sup>
고지금액	27,582	7,503	16,776	3,204	95	4
체납발생금액	14,110	6,627	4,781	2,669	31	2
체납발생비율	51.2	88.3	28.5	83.3	32.6	50.0
점유비	100.0	47.0	33.9	18.9	0.2	0.0

- 주: 1) 부가가치세 신고 중 무납부자  
 2)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자 중 무납부자  
 3) 부가가치세 과세자료에 의한 수시고지자 중 무납부자  
 4) 부가가치세 조사 고지 후 무납부자  
 5) 수정신고 등 기타 무납부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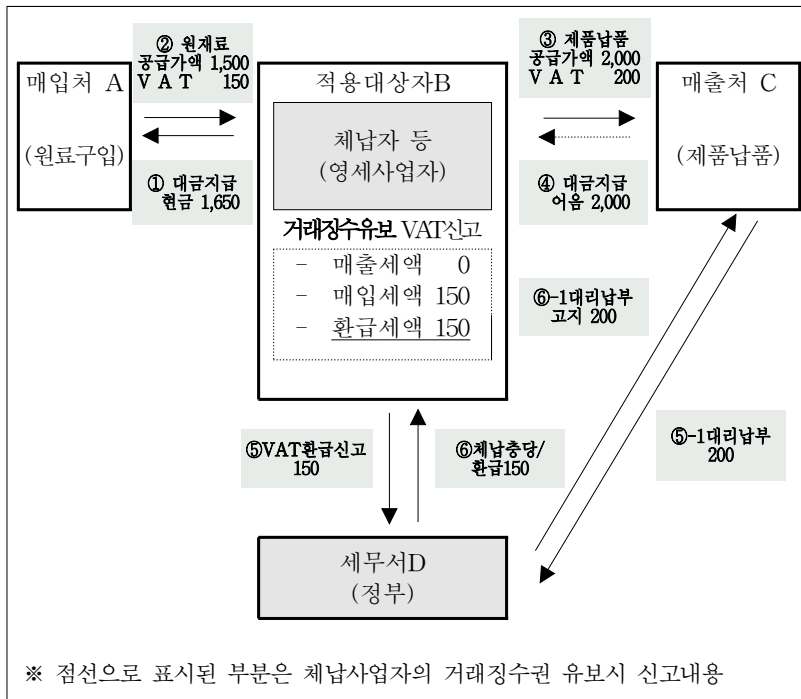
자료: 국세청 통계

가. 1단계 개선방안

1) 개요

고의 체납자 등 불성실 사업자, 부가가치세 전가가 곤란한 한계기업, 생계형 영세사업자 등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거래징수 특례제도를 운영한다.

[그림 V-7] 기본 개념도



- ① 부가가치세 거래징수 특례적용대상자인 사업자 B가 매입처 A로부터 공급대가 1,650원(VAT 150원)의 원재료 매입
- ② 사업자 B는 구입대가로 1,650원을 현금 지급(결제)
- ③ 사업자 B가 매출처 C에 공급대가 2,200원(VAT 200원)의 제품

을 매출

- ④ 매출처 C는 제품납품 대가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공급가액 2,000원을 사업자 B에게 어음으로 지급
- ⑤ 사업자 B는 매입세액 150원을 세무서 D에 환급신고
- ⑤-1. 매출처 C는 사업자 B의 매출세액 200원을 세무서 D에 대리하여 납부
- ⑥ 세무서 D는 사업자 B의 매입세액 150원을 체납세액에 충당하거나 환급
- ⑥-1. 세무서 D는 매출처 C에 200원의 대리납부를 고지

## 2) 관련법령 검토(유사사례)

가) 비거주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제도」<sup>100)101)</sup>

### (1) 개 요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과 국내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국내사업장과 관련 없는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으로부터 국내에서 용역을 제공받는 자가 당해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을 대리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통관절차를 거치지 않아 거래사실의 포착이 어렵고, 비거주자 등 용역공급자들의 성실한 납세의무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국내용역거래와의 과세형평을 기하기 위한 취지이다.

### (2) 대리납부의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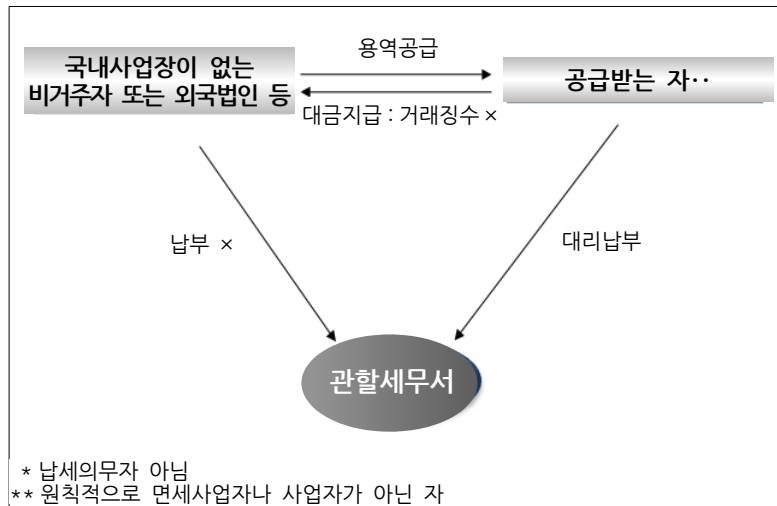
대리납부의무자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 등으로부터 용역을 공급받는 자이며,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 여부와

100) 「부가가치세법」 제34조

101) 황종대 외(2010), pp. 1847~1851

무관하다. 그러나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그 용역을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대리납부의무를 지지 않는다. 따라서 대리납부의무자는 원칙적으로 면세사업자나 사업자가 아닌 자에 한정되며, 과세사업자는 공급받은 해당 용역을 과세사업과 관련없이 소비하는 경우에만 대리납부의무를 지게 된다.<sup>102)</sup>

[그림 V-8] 「매입자 납부제도」



(3) 대리납부세액의 징수시기 및 납부

일반적으로 재화와 용역의 공급 또는 재화의 수입의 경우에는 대가를 언제 지급하는가 여부를 불문하고 거래시기에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여 해당 예정신고기한 또는 확정신고기한 내에 신고납부한다. 그러나,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과 국내사업장이 있는

102) 공급받은 해당 용역을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대리납부를 지우더라도 그 대리납부세액은 공급받은 사업자의 매입세액으로 공제 또는 환급되므로 공급받는 자가 대리납부세액을 부담한 효과는 매입세액공제에 의하여 상쇄된다.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용역을 공급받는 자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에 규정하는 공급시기에 불구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대리납부할 세액을 징수한다.

대리납부의무자는 대리납부대상이 되는 용역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의 규정을 준용하여 다음 사항을 기재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신고서와 함께 이를 징수한 사업장 또는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거나 「국세징수법」에 따른 납부서에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신고서를 첨부하여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 용역공급자의 상호·주소·성명
- 대리납부하는 사업자의 인적사항
- 공급가액 및 부가가치세액
- 기타 참고사항

#### (4) 대리납부불성실 가산세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용역의 대가를 지급하였을 때에는 지급한 날이 속하는 예정신고기한 또는 확정신고기한 내에 부가가치세액을 납부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에 그 세액의 10/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더하여 징수한다.<sup>103)</sup>

#### 나) 금 관련 제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 특례

금지금 및 금제품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으려는 사업자 또는 수입하려는 사업자는 금거래계좌를 개설하여야 한다. 당해 금거래계좌를 통해 금 관련 제품을 거래하는 경우 공급한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을 받은 자로부터 징수하지 아니하며, 공급받은 금사업자는 금거

---

103) 「부가가치세법」 제34조 제2항

래계좌를 사용하여 금 관련 제품의 가액은 공급한 사업자에게, 부가가치세액은 국세청장이 지정한 자에게 입금하여야 한다.

당해 규정은 2007.12.31. 금지금 거래의 투명화·정상화를 통한 귀금속산업의 발전을 지원하고, 금관련 제품 매출자가 거래징수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고 탈세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현행 매출자에 의한 부가가치세 거래징수제도를 매입자 납부제도로 전화하기 위하여 신설하여 2008.6.1 이후 금거래계좌를 개설·신고하고 2008.7.1 이후 최초로 금지금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금관련 제품은 다음의 것으로 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3 제1항에 따른 금지금으로 금괴(덩어리)·골드바 등 원재료 상태인 것으로서 순도가 1천분의 995 이상인 금을 말한다.
- 소비자가 구입한 사실이 있는 반지 등 제품 상태인 것으로서 순도가 1천분의 585 이상인 금(동 규정은 2009.7.1부터 시행함)

#### 다) 사업용계좌제도

##### (1) 개요<sup>104)</sup>

2007년부터 전문직 사업자를 포함한 복식부기의무자의 금융계좌를 사업용과 가계용을 분리하여 사업과 관련한 금융거래는 사업용계좌<sup>105)</sup>를 사용하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하였으며 2009년에는 사업용계좌제도의 합리적인 정착 및 납세자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제도를 개선하였다. 사업용계좌 제도의 무리 없는 정착과 납세자 반발 최소화를

104) 국세청 보도자료(2009)

105) 「소득세법」 제160조의5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계좌"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이하 이 조에서 "금융기관"이라 한다)에 개설한 계좌일 것 2. 사업에 관련되지 아니한 용도로 사용되지 아니할 것

도모하고 사업용계좌의 가산세 부과대상 납세자는 세무사 등을 통해 세무대리할 여유가 없고 세무관련 상식이 거의 없는 소규모 사업자인 경우가 대부분인 현실을 감안하여 가산세 부담을 완화하였다. 사업용계좌 대상자는 복식부기의무자로 복식부기를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사업용계좌의 거래명세서」를 별도 작성하도록 할 경우 이중부담이 발생하고 세무행정상 활용가치도 낮을 뿐 아니라 거래명세서 미작성시 가산세 부과 등 제재가 없어 형식적으로 운용되고 있는 점도 감안하여 사업용계좌의 거래명세서 작성의무를 폐지하였다. 또한 변호사 등 전문직 사업자에 대해 과도한 납세협력의무를 부여한 것을 보완하기 위해 일반사업자와 동일하게 다음연도 개시일부터 3개월 이내 개설·신고하도록 하였다.

#### (2) 사업용계좌의 개설(추가·변경) 및 신고

개인사업자 중 복식부기의무자<sup>106)</sup>와 전문직사업자<sup>107)</sup>는 사업용계좌를 개설·사용하여야 하며, 복식부기의무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용계좌를 신고하여야 한다<sup>108)</sup>. 다만, 전문직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교부일부터 3개월 이내, 2009.1.1. 이후 개업하는 전문직사업자의 경우에는 다음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를 하여야 가산세 등 불이익을 면할 수 있다.

사업장별로 복수의 사업용계좌를 사용할 수 있으며 하나의 사업용계좌를 복수의 사업장에 신고·사용할 수 있다. 「사업용계좌 개설(추가·변경)신고서」를 작성하여 통장사본과 함께 법정 신고기한 내에 사

106) 직전년도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금액 이상인 자

107) 2007.1.1 이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조 제2항 제7에 따른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배제대상 사업자,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료인이 영위하는 의료업, 「수의사법」에 따른 수의사업, 「약사법」에 따른 약사에 관한 업무를 행하는 사업자는 수입금액 규모에 관계없이 모두 복식부기의무자임.

108) 「소득세법」 제160조의5③

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기 사용된 사업용계좌를 변경하거나 추가개설하는 경우 「사업용계좌 개설(추가·변경)신고서」를 작성하여 법정 신고기한 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면 된다.

(3) 사업용계좌의 사용범위<sup>109)</sup>

사업용계좌는 복식부기의무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거나 공급하는 거래의 경우에 사용된다. 금융기관을 통하여 대금의 결제가 이루어지는 거래와 인건비 및 임차료를 지급하거나 지급받는 때에는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거래상대방의 사정으로 사업용계좌를 사용하기 어려운 인건비<sup>110)</sup>는 제외된다.

(4) 사업용계좌의 구분 기록·관리의무<sup>111)</sup>

복식부기의무자는 사업장별로 해당 과세기간 중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여 할 거래금액, 실제 사용한 금액 및 미사용금액을 구분하여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5) 사업용계좌의 미개설·미사용시 불이익<sup>112)</sup>

복식부기의무자가 신고된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사용하지 않은 금액의 0.2%를 가산세로 부과하고, 미개설·미신고한 경우 미개설·미신고기간(개설·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개설·신고일 전일까지의 일수)의 수입금액<sup>113)</sup>과 사용대상 거래금액 중 큰 금액의 0.2%를

109) 「소득세법」 제160조의5①

110) 금융거래 채무불이행으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집중관리 및 활용되는 자, 외국인 불법체류자, 건설 일용근로자로서 국민연금 가입대상이 아닌 자와의 거래

111)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의5⑧

112) 「소득세법」 제81조

113) 수입금액 = 미가맹한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 미가맹기간/365(윤년은 366)

가산세로 부과한다. 또한, 사업용계좌를 이용하여야 할 사업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사업용계좌를 개설·신고하여야 할 사업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세표준과 세액의 경정사유에 해당되어 세무조사를 받을 수 있으며 조세특례제한법상 각종 감면의 혜택이 배제된다.

### 3) 구체적 적용방안

#### 가) 거래징수 특례적용 대상자

##### ① 거래징수 특례신청자

사업자 본인이 세무이행능력이 없어 세무서장에게 신청하는 자

##### ② 수수료 대리점, 아웃소싱업체 등 단가 결정력이 약한 영세사업자 나 부가가치세 전가가 곤란하고 관리능력이 없는 생계형 영세사업자

##### ③ 대금결제기간이 장기이고, 출혈 경쟁을 유도하거나 비용을 전가시키는 특정 기업이나 특정 업종의 거래상대방 또는 특정 기업의 거래처의 세금채납비율이 전반적으로 높은 경우 그 기업의 거래처

##### ④ 고의적 상습적 채납자, 즉 1년간 3회 이상 채납하거나 발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고 채납액이 500만원 이상자

##### ⑤ 한계사업자, 즉 부도 발생, 사업장 폐쇄 등 국세를 채납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

##### ⑥ 유통질서 문란업종으로서 유흥업소, 주류업체, 유류업체 등 소위 폭탄업체를 이용하거나 무자력자를 명의인으로 내세워 조세를 포탈하는 등 세금 탈루와 채납율이 높은 업종<sup>114)</sup>

---

114) 금지금 업체는 이미 시행

⑦ 기타 자료상 혐의 등으로 세무서장이 지정한 자로서, 과거 자료상으로 적발되었거나 자료상과 거래한 사업자

나) 거래징수 특례적용 대상거래의 범위

거래징수 특례적용 대상거래의 범위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거래에 한정된다. 거래징수권리는 세금계산서 교부시 발생하는 것으로 신용카드나 영수증 교부대상거래는 제외된다.

다) 거래징수 특례적용 거래상대방의 범위

특례적용 거래상대방의 범위는 특례적용 대상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모든 사업자로 포괄적으로 적용한다. 효율적 집행을 위해 수수료대리점, 아웃소싱업체 등 하도급관계(예: 건설업 및 제조업에서 원청-하청관계가 분명한 업체 등)가 명확한 경우에는 특정 상대방만을 지정한다.

라) 부가가치세의 신고 등

거래징수 특례자와 그 거래상대방의 거래에 있어 일정거래만을 대리납부하는 것으로 세금계산서 교부, 신고 등은 정상거래와 동일하다. 각 사업자별로 신고, 신청, 청구, 통지, 징수가 이루어진다.

마) 신고 및 납부관리

국세청장은 거래징수 특례적용분 명세서(특례적용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상호대사하여 거래징수 특례적용분 부가가치세의 신고와 납부를 확인한다. 특례적용분 부가가치세의 납부가 누락된 경우 관할세

무서장은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자를 확인하여 즉시 경정한다.

나. 관계법령 개정 검토(안)

□ 부가가치세 거래징수 및 납부특례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신설

[조세특례제한법 신설(안)] 부가가치세 거래징수의 특례

- ① 부가가치세 제1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업자(간이과세자를 제외한다, 이하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자”라 한다)가 대통령이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화와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에는 그 공급한 자(이하 “부가가치세 거래징수 특례자”라 한다)를 대리하여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 ② 제○항에 따라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자가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의 100분의 10<sup>115)</sup>을 가산세로 징수한다.
- ③ 기타 부가가치세 거래징수의 특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 정한다.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신설(안)] 부가가치세 거래징수 특례의 범위 등

- ① 법 제○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란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부가가치세 거래징수 특례자로 지정받은 자를 말한다.
- ② 법 제○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화와 용역”이란 부

---

115) 「부가가치세법」 제34조 제2항 【대리납부】 ② 용역을 공급받은 자가 부가가치세를 사업장 또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장 또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은 그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에 그 세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더하여 국세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공급시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하는 재화와 용역을 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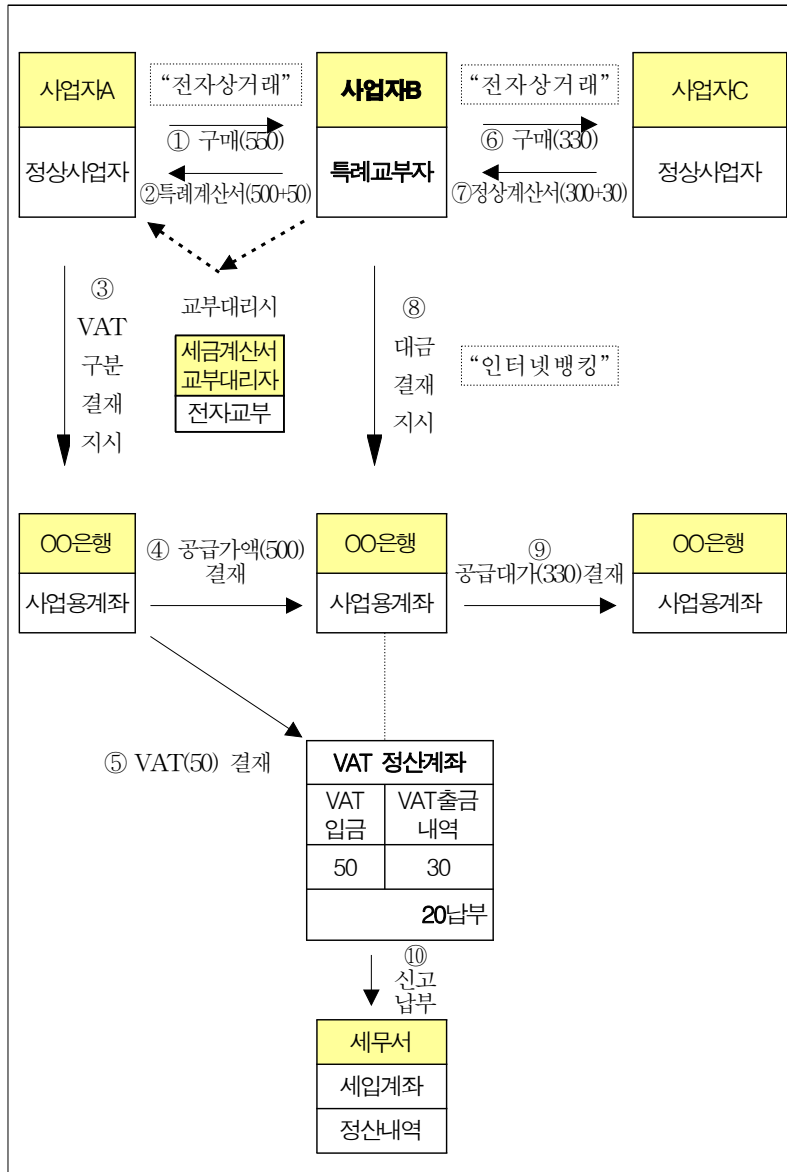
- ③ 부가가치세 거래징수 특례자가 재화와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거래상대방에게 부가가치세 거래징수 특례가 적용되는 사실을 알려야 하며,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징수 특례 적용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 ④ 부가가치세 거래징수 특례자와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부가가치세 예정·확정신고서와 “거래징수 특례적용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작성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⑤ 기타 부가가치세 거래징수 특례자의 지정 및 운용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한다.

[부가가치세 거래징수 특례자 지정 및 운용 고시(안)]-부록

## 다. 2단계 발전방안

초고속 정보통신망의 개통되면서 우리 사회는 급속하게 정보화 사회로 편입되어가고 있으며, 이 같은 정보화의 핵심에는 전자상거래(인터넷뱅킹 포함)가 있다. 전자상거래의 발달로 상거래에 있어서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없어지고 있으며, 이러한 환경 변화를 수용하고, 차제에 산업화시대의 거래징수체계를 정보화시대의 거래징수체계로 일대 변혁을 모색하여야 한다.

[그림 V-9] 전자적 거래징수 개념도(통신/금융/IT/조세 통합)



주: VAT 정산계좌를 사업자별로 운영할지, 금지금의 경우처럼 단독운영할지에 대한 검토 필요함.

- ① 전자상거래를 통하여 사업자 A는 특례교부자인 사업자 B로부터 공급대가 550원(공급가액 500원, VAT 50원)의 물품을 구매
- ② 특례교부사업자 B는 공급가액 500원, 부가가치세 50원에 대하여 특례계산서를 발행하며, 세금계산서를 대리·교부하는 자는 전자교부
- ③ 사업자 A는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를 구분하여 결제할 것을 사업용계좌를 개설한 은행에 지시
- ④ 사업자 A의 사업용계좌 개설은행은 공급가액 500원을 사업자 B의 사업용계좌 개설은행에 지급(결제)
- ⑤ 사업자 A의 사업용 계좌 개설은행은 특례교부사업자 B의 매출세액 50원을 사업자 B의 사업용계좌 개설은행의 VAT 정산계좌에 지급
- ⑥ 전자상거래를 통하여 특례교부자인 사업자 B는 사업자 C로부터 공급대가 330원(공급가액 300원, VAT 30원)의 물품을 매입
- ⑦ 사업자 C는 사업자 B에게 정상 세금계산서를 교부
- ⑧ 사업자 B는 사업용계좌 개설은행에 사업자 C에게 대금을 결제할 것을 지시
- ⑨ 사업자 B의 사업용 계좌 개설은행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공급대가 330원을 사업자 C의 사업용계좌 개설은행에 지급
- ⑩ 신고기간 도래시 사업자 B의 사업용계좌 개설은행은 VAT 입·출금 정산 후의 잔액 20원을 세무서에 납부

## VI. 거래징수 납부특례제도 전산시스템 구축방안

### 1. 「사업자와 최종소비자간(B2C) 거래」

#### 가. 시스템 설계(안)

- ① 신용카드가맹점은 신용카드 결제통장을 발급받는다.
- ② 가맹점은 발급받은 신용카드결제 통장번호를 국세청에 신고한다.
- ③ 가맹점은 지정은행으로부터 전용단말기를 공급받아 설치한다.
- ④ 신용카드사로부터 카드결제대금 입금 시 결제대금을 수취하는 지정은행은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국고계정에 입금 처리하되 인출을 제한한다.
- ⑤ 전용단말기를 이용한 매입세액 발생 시 매출세액 범위 내에서 실시간 매입세액을 환급 처리한다.

#### 나. 사업자의 이행부담 완화

##### 1) 부가가치세 자금 활용 기회상실 보전

음식/숙박업 등 B2C 업종의 경우에는 B2B 업종에 비하여 매출 대비 부가가치세 공제대상 매입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아 자금 활용기회의 상실에 따른 부담이 크므로 세액공제 등 세제상의 혜택을 제공하는 등의 지원책이 필요하다.

## 2) 사업자의 단말기 구입을 위한 경제적 부담 완화

B2C 업종은 이미 대부분 신용카드단말기 보급이 이루어져 있어 추가적으로 단말기 설치를 위한 경제적 부담이 없다. 통상적으로 신용카드 단말기는 신용카드 VAN 사업자가 무상으로 공급을 하고, 월 최대 1만원의 관리비를 징구하고 있는 바, 신규 단말기로 교체 시에도 추가적으로 경제적인 부담이 가중되는 것은 아니다.

## 3) 통장개설 등의 행정부담 완화

기존에 신용카드가맹점이 카드결제대금 수금 목적으로 이미 개설한 통장이 은행을 통하여 국세청에 자동 신고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사업자의 행정 부담을 간소화시킬 수 있다. 기존에 주류결제카드(63만장) 또는 사업용계좌로 국세청에 신고된 통장을 국세청에 자동신고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사업자의 행정부담을 줄일 수 있다.

## 다. 신용카드 인프라 보완 필요

### 1) 신용카드 불법사용 예방

신용카드 불법사용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단말기 위치신고제,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등을 실시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신용카드 불법사용이 빈번한 특정업종에 대하여는 신용카드 단말기 위치 신고제를 실시하여 불법사용을 방지하여야 한다. 신용카드 낱, 매출위장 등 신용카드 불법사용은 신용카드 위장가맹점의 활용이 필수적인바, 대부분 실제 가맹점의 위치와 위장가맹점의 위치가 다르므로 신용카드 결제와 관련된 시간 정보와 공간 정보를 동시에 관리하는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또한 유선 통신망의 경우 통신회사의 가입자 관리시스

템, 무선 통신망의 경우 기지국 ID 정보에 의하여 신용카드 결제 시점에 단말기의 위치 파악이 가능하므로 카드 불법사용과 관련된 가맹점에 대하여는 불법사용으로 발생한 손실에 대한 연대책임을 부여하고, 세무조사대상자 선정 등 불이익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 2) 신용카드사의 적극적 동참 유도

시스템 구축비용 절감, 홍보효과 등을 고려하여 인프라가 잘 갖추어진 신용카드회사를 적격 카드회사로 지정하여 제도를 공동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제도운영을 위해서는 신용카드사의 협조가 필수적이므로 신용카드사의 재무구조 개선, 우량회원 확보 등 제도의 효과를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하며 가맹점 관리 등 카드발급 적격 여부를 심사하여 우수한 신용카드사에게 제도를 적용(신용카드사의 신인도 제고)하도록 한다.

## 2. 「사업자와 사업자(B2B) 거래」<sup>116)</sup>

### 가. 시스템 설계(안)

- ① 부가가치세 거래징수 특례적용자(특정 상품 취급업자 등)는 지정은행에서 통장(사업용계좌)과 현금카드를 발급 받는다.
- ② 발급받은 통장번호를 국세청에 신고한다.
- ③ 지정은행으로부터 전용단말기를 공급받아 설치한다.
- ④ 제품대금 결제 시 전용단말기의 지정송금기능을 이용, 현금카드의 계좌이체 방식으로 지급 처리한다.
- ⑤ 결제를 받는 지정은행은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국고계정에 입금

116) 아래 시스템 설계안은 현금거래비율이 상당한 정도로 높은 업종을 대상으로 함.

처리하되 인출제한 조치를 취한다.

- ⑥ 전용단말기를 이용한 매입세액 발생 시 매출세액 범위 내에서 실시간 매입세액을 환급 처리한다.

## 나. 사업자의 이행부담 완화

### 1) 부가가치세 자금 활용 기회상실 보전

현행 부가가치세 징수제도하에서는 ‘매출부가가치세 - 매입부가가치세’ 상당액의 자금 활용이 가능하지만, 매입자납부제도하에서는 부가가치세 신고기간 종료 시점까지 사업자의 자금 활용기회가 상실된다. 부가가치세 신고기간 중 매출과 매입이 기중 평균적으로 발생한다고 가정할 경우 공급금액이 매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차액에 상당하는 부가가치세 금액에 대한 자금 활용기회가 상실되는 효과가 발생한다.

부가가치세 상당의 자금 활용기회는 국가가 부가가치 거래징수 편의를 위하여 사업자에게 혜택을 부여한 것이다. 따라서, 엄밀한 의미에서 제도변경에 의한 사업자의 자금 활용기회의 상실은 사업자가 손해를 부담한 것은 아니며, 제도변경에 따라 기존 제도하에서 매출사업자가 향유하였던 기회를 상실하게 되는 것이다.

〈표 Ⅵ-1〉 전단계세액공제방식하에서의 VAT 금융효과

구분	매출		매입		VAT 차액	비고
	공급 가액	공급 VAT	매입 금액	매입 VAT		
매출>매입	1,000,000	100,000	800,000	80,000	20,000	자금활용 기회상실
매출<매입	800,000	80,000	1,000,000	100,000	(20,000)	동일한 효과

VI. 거래징수 납부특례제도 전산시스템 구축방안 179

자금활용기회에 대한 보전방안으로 첫째, 신용카드 수수료를 인하해주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다. 매출세액의 향유권으로 발생하는 수익을 감안하여 신용카드 수수료의 대폭적 할인을 유도한다. 신용카드 수수료 부담액 중에서 부가가치세 거래징수비는 2009년 기준 약 7,599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sup>117)</sup> 가맹점수수료는 법적으로는 가맹점이 부담하지만 결국 소비자에게 전가되기 때문에 국민의 부담으로 귀착되며, 가맹점수수료 부담은 신용대란이 일어난 이후인 2003년과 2004년을 제외하고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둘째, 세액공제를 허용해주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다. 매출세액의 이자상당액을 세액공제 해 줌으로써 사업자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

〈표 VI-2〉 신용카드 수수료 부담액 중 부가가치세 거래징수비 해당분  
(단위: 억원)

년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수수료 부담	3,355	4,351	4,263	4,177	4,761	5,371	6,027	6,983	7,599

2) 사업자의 단말기 구입을 위한 경제적 부담완화

상기 시스템은 「매입자 납부제도」 대상 모든 사업자들이 현금카드와 전용단말기가 보급되었을 경우 실현 가능한 시스템으로 사업자에게는 전용금융단말기를 구입하여야 하는 부담이 따르지만, 다음의 환경을 고려할 경우 금융기관이 무상으로 보급할 유인이 충분하다.

첫째, 소매판매를 겸업으로 하는 사업장에는 이미 대부분 신용카드 단말기 보급이 이루어져 있어 추가적으로 단말기 설치를 위한 경제적

117) 신용카드 수수료 부담액 중에서 부가가치세 거래징수비는 신용카드사 용금액 × 10%(부가가치세) × 2.5%(신용카드 평균가맹점수수료)로 추정

부담이 없다.

둘째, 2009년부터 '자본시장통합법'의 시행으로 증권 및 보험업의 통장개설이 허용됨에 따라 치열한 수신확보 경쟁이 예상된다.

셋째, 금융감독원은 도난 또는 복제카드 사용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IC 카드 결제환경 의무화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어, 가맹점에 설치되어 있는 자기식 신용카드단말기가 IC카드 단말기로 교체될 예정으로 있어 동 제도 변경으로 사업자에게 추가적인 부담을 주는 것은 아니다.

### 3) 통장개설 등 사업자의 행정부담 완화

사업자의 행정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 사업자의 기존 주거래 은행의 변경으로 인한 업무 불편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모든 은행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은행 지정요건을 완화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 기존에 국세청에 신고된 주류결제통장 또는 사업용계좌 등을 매입자 납부제도 시행을 위한 통장으로 자동 전환 신고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사업자의 행정부담을 완화시킨다. 가능하면 은행직원이 사업장을 방문하여 통장을 개설을 도와주는 등 사업자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 Ⅶ. 기대효과

### 1. 세수증대

#### 가. 신고자진납부비율의 향상

세금신고는 그 의무는 이행하는 데 있어서 무자력을 이유로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사업자가 많아 신고자진납부비율이 저조하나, 매입자 거래납부제도가 실시되면 이들 사업자는 매출세액 상당액이 거래 상대방에 의하여 자진납부되어 신고한 세금이 대부분 납부될 것으로 기대된다. 체납이 발생한 시점에는 이미 고의적이든 그러하지 아니하든 간에 체납자가 대부분 무자력 상태에 빠져 있어 국세청의 강력한 행정 집행에도 불구하고 징수비율이 저조할 수밖에 없고, 대부분 폐업과 함께 결손처리되어 매년 수조원의 국고손실이 발생하고 있다.

1명당 자납세수 증가효과는 연간 1,400만원, 연간 자납세수 증가효과는 2조 6천억원으로 추정된다. 상기의 거래징수제도의 효과를 측정하기 위하여 우선 상습·고의체납자 1,685명<sup>118)</sup>을 선별, 적용대상자로 가상하여 추정한 결과 연간 자납세수가 약 2조 6천억원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begin{aligned} & \text{연간 세수증대효과(25,222백만원)} = \\ & 1,685\text{명} \times 1\text{인당 세수효과(1,400만원)} \end{aligned}$$

118) A세무서 2002년 체납자중 1년에 3회이상 체납, 5백만원 이상 체납자를 대상

〈표 Ⅶ-1〉 연간 세수증대효과 추정치

(단위: 백만원)

구분	①대리징수납부세액 (1과세기간 매출세액)	② 환급발생액 (1과세기간 매입세액)	연간 세수증대효과 (①-②)×2
금액	33,720	21,109	25,222

자료: 특정 세무서의 sampling 사업자 신고기준

전체 사업자 중 적용예상 사업자는 176,310명으로 예상되며, 1인당 세수효과를 감안하면 연간 세수효과가 약 2조 6천억원으로 추정된다.

- 적용예상사업자(176,310명) × 1인당 연간 세수효과(1,400만원)
- 총과세사업자/적용예상자 비교(2005년 기준)  
 $\text{총 } 4,121,612 / 176,310 = \text{법인}(400,398 / 34,434) + \text{개인일반}(2,117,551 / 141,876) + \text{개인간이}(1,603,663 / 0)$

〈표 Ⅶ-2〉 대리(특례)납부적용 비율

(단위: 건, %)

구분	계	개인		법인
		일반	간이	
과세사업자수	42,271	20,140	18,365	3,766
대리납부자수	1,685	1,361	—	324
비율	3.9	6.7		8.6

자료: 특정 세무서의 sampling 사업자 신고기준

#### 나. 결손 및 체납발생 방지

과세당국이 그동안 무재산으로 결손처리하여 왔으나 거래징수제도

의 개선으로 결손방지 및 미정리 체납액 정리효과가 약 1조 8천억원이 될 것으로 추정(2005년 기준)된다. 적용대상자에 대해서는 기왕의 체납액이 모두 현금 징수되는 효과가 발생하는 것은 물론 더 이상 체납이 발생하지 않게 된다.

〈표 VII-3〉 결손방지 및 미정리 체납액 정리효과(2005년 기준)

(단위: 억원, %)

구 분	결손 및 미정리 처리			현금징수 비율 <sup>1)</sup>	현금징수 금액
	계	결손	미정리		
금 액	39,506	21,534	17,972	47.6	18,804

주: 현금징수비율은 결손 및 미정리 총액에 대하여 적용대상자의 체납액 비율 47.6%를 적용함

자료: 『국세통계연보』(2006)

〈표 VII-4〉 총체납액 중 적용대상자 비율

(단위: 명, 건, %, 백만원)

구 분	인원	건수	금액
총체납자	6,293	13,378	55,498
적용대상자	1,685	5,992	26,439
비율	26.7	44.7	47.6

자료: 특정 세무서의 sampling 사업자 신고기준

#### 다. 부가가치세 추가징수 효과

유흥업소등이 쌀 등의 면세품을 이용한 '신용카드 깡'의 경우에는 당초부터 부가가치세 신고에서 누락됨으로써 부가가치세 탈루규모의 추산조차 어려운 실정이나, 신용카드 단말기 등록제를 실시할 경우 음성 탈루 부가가치세를 추가적으로 징수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을 것이다.

## 2. 중소기업 보호와 공정거래 유도

IMF 외환위기 이후 가격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한 수단으로 대기업들의 아웃소싱이 확산됨에 따라 영세사업자도 증가하였다. 아웃소싱으로 대기업의 비용부담이 영세사업자에게 집중 전가되면서 영세사업자의 체납 및 결손액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영세사업자의 세금탈루와 체납은 단가인하 등 비용전가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왜곡된 거래관행을 정상화시키는 것이 우선이다. 매입자 거래납부제도는 세금 탈루를 경쟁력으로 삼는 악성사업자의 시장진입을 막고, 무리한 단가인하 등을 통한 부가가치세의 역전가 현상으로 발생하는 세금탈루를 차단시켜 건전하게 세금을 납부하고 있는 사업자를 보호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현행 거래징수제도는 공급자가 실질적 거래징수 여부와 관계없이 현금으로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하므로 어음거래 등 외상매출이 많은 영세중소업체는 부가가치세 납부를 위하여 어음할인 등 추가적인 비용을 부담하고 있다.

## 3. 자료상 근절 등 세금계산서 수수 정상화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제도를 통하여 전단계세액공제방법의 맹점인 자료상 문제를 근절할 수 있다. 자료상이나 폭탄업체(세금탈루를 목적으로 한 무재산 사업자) 등을 통한 부가가치세 탈루는 현행 「전단계세액공제법」이 내포하고 있는 문제점이다. 「전단계세액공제법」하에서는 공급자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매입자가 세금계산서를 통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음으로써 자료상 문제가 발생하였다.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제도를 통하여 자료상이나 금지금업자 등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령하는 자는 매입세액을 본인이 직접 납부해야 하므로 근본적으로 자료상이나 폭탄업체들을 이용한 세금탈루가 불가능하게 된다.

#### 4. 현행 사후적 조세채권관리제도의 문제점 해소

현행 체납정리는 경제활동을 가장 활발히 해야 할 사업자를 신용불량자나 자료상으로 전락시켜 더 이상 정상적 경제활동을 영위할 수 없게 만들고 있다. 이는 체납정리를 위해서 잠재적 세수기반마저 무너뜨리는 현상으로 더 많은 문제를 야기시킨다.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나 무재산으로 세무이행능력이 없는 사업자에게는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제도를 통하여 보호해줄 수 있을 뿐 아니라 부가가치세 사후 징수와 관련된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 5. 새로운 금융기회의 창출

신용카드 결제거래에 있어서 신용카드 발급사를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자로 지정하면 카드 발급사는 현재 약 150만개 가맹점의 부가가치세 거래금액(241조원)의 10%를 최소 1달 이상 운용할 수 있는 새로운 금융기회가 창출된다.

- 평균 2개월 운용시 약 2,000억원의 금융기회 창출
- ex) 부가가치세 거래금액의 10%(24조원) × 5%(운용금리) = 1조 2천억원
- 평균 2개월 운용시 = 1조 2천억원 ÷ 6 = 2,000억원

#### 6. 단말기 부가기능을 활용한 납세협력비용 절감

##### 가. 일용근로자 임금지급보고의 편의성 제고

근로장려세제의 도입으로 지급조서 제출의무가 일용근로자에게까지 확대되어 고용주의 행정부담이 크게 증가하였다.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일용근로자 등에게 일당을 지급한 사업자는 분기별로 일용근

로자임금지급조서를 작성하여 국세청에 제출하여야 하고, 불이행 시 가산세를 부담해야 한다.

신용카드단말기 부가기능을 활용하여 사업자의 국세청 임금지급보고를 자동화하는 경우 일용근로자가 소지하고 있는 현금카드를 이용하여 계좌이체 방식으로 임금을 지급할 때 은행을 통하여 국세청에 실시간으로 임금지급 내용이 보고될 수 있다.

#### 나. 사업용계좌제도의 편리한 이행

사업용계좌 도입 이전에는 실물거래 증빙(세금계산서와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중심으로 사업자의 소득을 파악하여 왔으나, 무자료거래, 자료상, 간이과세 제도 등으로 인해 실물거래 증빙 중심의 소득 파악방법에는 일정한 한계가 존재하였다. 대부분의 개인사업자는 관행적으로 계좌를 사업거래와 개인거래에 혼용하여 사용하고 있으므로 과세대상 소득의 분리가 사실상 불가능하였다.

국세청에서는 개인거래와 사업거래를 분리함으로써 실물거래 증빙과 금융자료와의 대차 작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2007년부터 전문직 사업자를 포함한 복식부기의무자의 금융계좌를 사업용과 가계용으로 분리하여 사업과 관련한 금융거래는 사업용계좌를 사용하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하였다. 사업용계좌제도는 사업자의 입장에서는 의무이행을 위하여 은행이나 자동화창구를 방문하여 처리하여야 하는 번거로움과 인터넷뱅킹 또는 모바일뱅킹 서비스 이용의 복잡성으로 인한 행정부담이 있었으나 제도의 도입으로 인하여 신용카드단말기에 매입처별 정보(상호, 사업자 등록번호, 통장번호 및 계정과목 코드)를 사전 등록하고, 대금 지급 시 매입처를 선택하여 통장번호를 입력하지 않고 매입처에 계좌이체 송금 처리함으로써 사업용계좌 의무의 편리한 이행을 가능하게 될 것이다. 또한 은행 방문이나 인터넷 뱅킹을 이용하기 위한 복잡성을 회피할 수 있고 매입처가 신용카드 가맹점이 아닌

경우에도 상기 기능을 이용하여 전자세금계산서를 교부함으로써 부가가치세 공제신청을 간소화할 수 있다.

#### 다. 복식부기의무자의 장부기장의 자동화

정부는 납세자의 편의를 위하여 신용카드매출전표 보관의무를 폐지하고 매입세액 공제신청을 간소화하였으나, 사업자가 이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소득세법 시행령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에 따라 개인사업자가 국세청에 등록된 신용카드를 사용할 경우 국세청에서 구축한 DB를 조회하여, 신용카드전표를 보관하지 않고도 간편하게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거래상대방이 신용카드 가맹점이 아닌 경우나, B2B 거래인 경우에도 과도한 신용카드 수수료 부담해야 하므로 이용이 제한되고 있다.

신용카드 결제정보나 현금영수증 발행금액을 회계관리시스템에 연동시킴으로써 복식부기장부 작성을 위한 전표작성 및 입력을 자동화하여 납세협력비용을 감축할 수 있다. 또한 신용카드가맹점인 경우 카드결제정보를 신용카드 VAN사로부터 전자적으로 제공을 받을 수 있고 현금영수증 발행금액은 국세청 DB에 접속하여 조회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사업자들은 부가가치세 및 원천세 신고, 법인세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세무대리인에게 위탁 처리하고 있는바, 기존의 수작업처리를 자동화시킴으로써 사업자의 세무위탁처리비용을 감축시킬 수 있을 것이다.

## 참고문헌

- 강만수·이강류, 『부가가치세실무: 부가가치세의 이론과 실제』, 한국세무경리협회, 1977.
-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
- 국세청 보도자료, 『사업용계좌제도, 납세자 부담도 줄이고 편리하도록 개선』, 2009. 3. 18
- 곽태원·현진권, 『조세론』, 법문사, 2007.
- 김동규, 『금융 IC카드의 안전성 제고를 위한 제도적·기술적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은행 금융결제국, 2009
- 김승래·박명호·홍범교, 『우리나라 부가가치세제 정책과제의 경제적 분석: 과세베이스 확대를 중심으로』, 연구보고서, 한국조세연구원, 2007.
- 김유찬, 『납세협력비용 감축의 기본원칙』, 『계간 세무사』, 한국세무사회, 2008.
- 김정길, 『부가가치세법의 이론과 실제』, 영화조세통람, 2007.
- 김진수·한상국, 『체납징수업무의 효율화 방안』, 용역보고서, 한국조세연구원, 2009.
- 이성식, 『부가가치세의 거래징수』, 『계간 세무사』, 한국세무사회, 2004.
- 최명근·나성길, 『부가가치세법론』, 세경사, 2007.
- 통계청 보도자료, 『2009년 연간 및 4/4분기 전자상거래 및 사이버쇼핑 동향』, 2010. 2. 25
- 한국조세연구원, 『국세행정에 대한 납세협력비용 측정』, 한국조세연구원, 2008

- 현진권 · 문춘걸, 『징세비 실증분석을 통한 세무행정의 효율성 및 효과성』, 『공공경제』, 제6권 제2호, 한국공공경제학회, 2002.
- 황종대 · 강인 · 신정기, 『부가가치세 실무』, 삼일인포마인, 2010.

EC, COM 260, Report from the Commission to the Council and the European Parliament on the use of administrative cooperation arrangements in the fight against VAT fraud, 2004.

\_\_\_\_\_, COM 254, Communication from the Commission to the Council, the European Parliament and the European Economic and Social Committee Concerning the Need to Develop A Co-Ordinated Strategy to Improve the Fight Against Fiscal Fraud, 2006.

\_\_\_\_\_, COM 109, Communication from the Commission to the Council and the European Parliament on Measures to Change the Vat System to Fight Fraud, 2008.

\_\_\_\_\_, COM 807, Communication from the Commission to the Council, the European Parliament, the European Economic and Social Committee. on a Coordinated Strategy to Improve the Fight against VAT Fraud in the European, 2008.

HMRC, VAT: Reverse Charge for Purchases and Sales of Mobile Phones and Computer Chips, VAT Information Sheet 08/07, 2007.

IRD, Options for Strengthening GST Neutrality in Business-to-Business Transactions-an Officials' Issues Paper, Policy Advice Division of Inland Revenue and New Zealand Treasury, 2008

NAO, HM Revenue & Customs 2006-07 Accounts: the Comptroller and Auditor General's Standard Report, 2007.

The House of Commons, Standard Report on the Accounts of  
HM Revenue and Customs: VAT Missing Trader Fraud,  
Forty-fifth Report of Session 2006-07, 2007.

Vaillancourt 외, Compliance and Administrative Costs of Taxation  
in Canada, the Fraser Institute, 2008, p. 5.

<http://www.ibfd.org>

<http://www.hmrc.gov.uk/ria/vat-reversecharging.pdf>

## 〈부록 1〉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34조 【대리납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용역의 공급을 받는 자(공급받은 당해 용역을 과세사업에 공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고 제18조 제4항 및 제19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장 또는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1993.12.31, 1995.12.29, 1999.12.28, 2006.12.30>

1. 「소득세법」 제120조 또는 「법인세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국내사업장”이라 한다)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
2. 국내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과 관련없이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용역의 공급을 받은 자가 동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사업장 또는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사업장 또는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은 그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에 그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한다.<개정 1995.12.29>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 4 【금관련 제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 특례】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지금 및 금제품(이하 이 조에서 “금관련 제품”이라 한다)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으려는 사업자(이하 이 조 및

제122조제5항에서 “금사업자”라 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거래계좌(이하 이 조에서 “금거래계좌”라 한다)를 개설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금사업자가 금관련 제품을 다른 금사업자에게 공급한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5조에도 불구하고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지 아니한다.

③ 금사업자가 금관련 제품을 다른 금사업자로부터 공급받은 때에는 금거래계좌를 사용하여 제1호의 금액은 공급한 사업자에게, 제2호의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입금하여야 한다.

1. 금관련 제품의 가액

2. 「부가가치세법」 제13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부가가치세액”이라 한다)

④ 제3항은 제106조의3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 금관련 제품을 공급받은 금사업자가 제3항제2호에 따라 부가가치세액을 입금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금관련 제품을 공급한 금사업자에게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에도 불구하고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매입세액으로 보지 아니한다.

⑥ 제3항에 따라 금거래계좌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금관련 제품의 가액을 결제받은 경우에는 해당 금관련 제품을 공급한 금사업자 및 공급받은 금사업자에게 제품가액의 100분의 20을 가산세로 징수한다.

⑦ 관할 세무서장은 금관련 제품을 공급받은 금사업자가 제3항에 따라 부가가치세액을 입금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금관련 제품을 공급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부가가치세액을 입금한 날(「부가가치세법」 제18조·제19조 및 제27조에 따른 과세표준 신고기한을 한도로 한다)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입금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⑧ 제3항에 따라 공급받은 자가 입금한 부가가치세액은 금관련 제품을 공급한 금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 가산한다.

⑨ 관할 세무서장은 해당 예정신고기간 및 확정신고기간 중 금사업자의 금관련 제품의 매출액이 금관련 제품의 매입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인 경우에는 환급을 보류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환급받을 세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
2. 체납이나 포탈 등의 우려가 적다고 인정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⑩ 금거래계좌 사용대상 금사업자의 범위, 금거래계좌에의 입금방법, 입금된 부가가치세액의 처리 등 제1항부터 제9항까지의 매입자 납부제도를 운영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 2**

④ 국세청장은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에 대하여 납세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가맹점가입대상자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 3의 규정에 의한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대상자로 지정하여 신용카드가맹점 또는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도록 지도할 수 있다. (2006. 12. 30. 개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0조 【신용카드 및 금전등록기의 운영】**

⑤ 법 제32조의 2 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소매업·음식점업·숙박업 기타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사업규모 및 지역 등을 감안하여 국세

청장이 정하는 자를 말한다. <1998. 12. 31. 개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3조 【전자세금계산서】**

① 법 제16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사업자”란 「소득세법」 제160조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인 개인사업자를 말한다. <개정 2010.2.18>

② 법 제16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기재사항을 계산서 작성자의 신원 및 계산서의 변경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공인인증시스템을 거쳐 정보통신망으로 발급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0.2.18>

1.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의2제1호에 따른 전자적(전자적) 기업 자원 관리설비로서 「전자거래기본법」 제18조, 제23조 및 제24조에 따른 표준인증을 받은 설비를 이용하는 방법
2. 「전자거래기본법」 제18조, 제23조 및 제24조에 따른 표준인증을 받은 실거래 사업자를 대신하여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업무를 대행하는 사업자의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시스템을 이용하는 방법
3. 국세청장이 구축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시스템을 이용하는 방법
4.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한 현금영수증 발급장치 및 그 밖에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시스템을 이용하는 방법

③ 제1항에 따른 사업자(실거래 사업자를 대신하여 전자세금계산서 교부업무를 대행하는 사업자를 포함한다)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에 따른 현금영수증 사업자는 제2항제1호·제2호·제4호의 설비 및 시스템에 대하여 국세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0.2.18>

④ 법 제16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이란 전자세금

계산서 발급일(제5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발행일자를 말한다)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을 말한다. <개정 2010.2.18>

⑤ 법 제16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금계산서 발급명세”란 법 제16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0.2.18>

⑥ 법 제16조제4항에 따라 법인사업자 외의 사업자도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전송할 수 있다. <개정 2010.2.18>

⑦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수신함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거나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2항제4호의 시스템 등 수신함이 적용될 수 없는 시스템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2항제3호에 따른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시스템을 수신함으로 지정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0.2.18>

⑧ 전자세금계산서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지정하는 수신함에 입력되거나 제2항제3호에 따른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시스템에 입력된 때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그 전자세금계산서를 수신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0.2.18>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절차 및 보관요건, 각 설비 및 시스템을 구축·운영하는 사업자에 관한 등록절차 및 등록요건, 제출서류, 등록 취소 사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2.18>

#### 법인세법 제73조 【원천징수】

① 다음 각 호의 금액(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수입금액을 포함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등에게 지급되는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과 법인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거나 면제되는 소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을 내국법인에 지급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원천징수의무자”라 한다)가 그 금액

을 지급하는 때에는 지급하는 금액에 100분의 14(「소득세법」 제16조제1항제11호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인 경우에는 100분의 25)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26>

1. 「소득세법」 제127조제1항제1호의 이자소득금액
2. 「소득세법」 제127조제1항제2호에 따른 배당소득금액(같은 법 제17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조로부터의 이익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신탁의 이익에 한정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같은 항 각 호의 소득금액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시점에는 해당 소득금액이 어느 누구에게도 지급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08.12.26>

③ 삭제 <2008.12.26>

④ 원천징수의무자를 대리하거나 그 위임을 받은 자의 행위는 수권 또는 위임의 범위안에서 본인 또는 위임인의 행위로 보아 제1항을 적용한다. <개정 2008.12.26 >

⑤ 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등이 내국법인(거주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발행한 어음 또는 채무증서를 인수·매매·중개 또는 대리하는 경우에는 금융회사 등과 해당 내국법인 간에 대리 또는 위임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아 제1항을 적용한다.

⑥ 삭제 <2000.12.29>

⑦ 상시 고용인원수 및 업종 등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원천징수한 법인세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징수일이 속하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할 수 있다.

⑧ 내국법인이 「소득세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채권 등(법인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채권 등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 등을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채권 등”이라 한다)에서 발생하는 이자, 할인액 및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이 조에서 “이자 등”이라 한다)의 계산 기간 중에 당해 채권 등을 타인에게 매도(중개·알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포함하되, 환매조건부채권 매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74조에서 같다)하는 경우 채권 등의 보유기간에 따른 이자 등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법인이 원천징수의무자를 대리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법인에 대하여는 이를 원천징수의무자로 보아 이 법을 적용한다.

⑨ 제1항·제2항·제4항·제5항·제7항 및 제8항을 적용할 때 이자 소득의 지급시기, 법인세의 원천징수대상소득의 범위 및 금액의 계산, 원천징수세액의 계산 및 납부와 원천징수의무자의 범위, 채권 등의 보유기간의 계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가가치세법 제4조 【신고·납세지】 (2003. 12. 30. 제목개정)

①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2003. 12. 30. 개정)

② 사업자에게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된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하여 납부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사업자 단위로 등록한 사업자(이하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라 한다)는 그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주사무소)에서 총괄하여 신고·납부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는 신고·납부와 관련하여 이 법을 적용할 때 각 사업장으로 본다.

④ 제1항의 사업장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1.1 부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조 【주사업장 총괄납부제도】**

① 법 제4조제2항에 규정하는 주된 사업장은 법인의 본점(주사무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개인의 주사무소로 한다. 다만, 법인의 경우에는 지점(분사무소를 포함한다)을 주된 사업장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00.12.29>

②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하여 납부하려는 자는 그 납부하려는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주사업장 총괄납부신청서를 주된 사업장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1977.12.30, 1994.12.31, 2004.3.17, 2010.2.18>

1. 사업자의 인적사항
2. 총괄납부신청사유
3. 기타 참고사항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가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하여 납부하려는 경우에는 주된 사업장의 사업자등록증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제2항에 따른 주사업장 총괄납부신청서를 주된 사업장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신설 2000.12.29, 2004.3.17, 2010.2.18>

④ 삭제 <2010.2.18>

⑤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가 제3항에 따라 주사업장 총괄납부를 신청하였을 때에는 해당 신청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총괄하여 납부한다. <개정 2010.2.18>

**부가가치세법 제32조 2항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법인은 제외한다)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제16조제1항·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발급 시기에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에 따른 현금영수증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이라 한다)을 발급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결제수단에 의하여 대금을 결제받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금액(연간 500만원을 한도로 한다. 다만, 2010년 12월 31일까지는 연간 700만원을 한도로 한다)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공제받는 금액이 그 금액을 차감하기 전의 납부할 세액[이 법, 「국세기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빼거나 더할 세액(제22조 및 「국세기본법」 제47조의2부터 제47조의5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산세는 제외한다)을 빼거나 더하여 계산한 세액을 말하며, 그 계산한 세액이 음수(음수)인 경우에는 “0”으로 본다]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0.1.1>

1. 그 발급금액 또는 결제금액의 100분의 1(2010년 12월 31일까지는 1천분의 13)에 해당하는 금액
2. 음식점업 또는 숙박업을 하는 간이과세자의 경우에는 발급금액 또는 결제금액의 100분의 2(2010년 12월 31일까지는 1천분의 26)에 해당하는 금액

② 제1항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은 제32조제1항에 따른 영수증으로 본다. <개정 2010.1.1>

③ 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반과세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 가능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급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그 부가가치세액은 제17조제1항 및 제26조제3항에 따라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본다. <개정 2010.1.1>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령명세서를 제출할 것
  2.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제31조제3항을 준용하여 보관할 것. 이 경우 「소득세법」 제160조의2제4항 또는 「법인세법」 제116조제4항에 따른 방법으로 증명자료를 보관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 ④ 국세청장은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 대하여 납세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가맹점 가입 대상자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에 따른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 대상자로 지정하여 신용카드가맹점 또는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도록 지도할 수 있다. <개정 2010.1.1>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따른 세액공제의 범위, 신용카드가맹점 가입 대상자 또는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 대상자의 지정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1.1>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 2항 【수입금액의 증가 등에 대한 세액공제】**

- ②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가맹점인 사업자, 판매시점 정보관리시스템설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파식별시스템(이하 “전파식별시스템”이라 한다) 또는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통합전산시스템(이하 이 조에서 “통합전산시스템”이라 한다)을 도입한 사업자 중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이하 이 조에서 “사업자”라 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또는 「전자거래기본법」에 따른 사이버 몰을 통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방법으로 재화와 용역을 거래(이하 “전자상거래”라 한다)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2010년 12월 31일까지 신용카드(신용카

드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의한 수입금액,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설비에 의한 수입금액, 전과식별시스템을 통한 수입금액, 통합전산시스템에 의한 수입금액 또는 전자상거래에 의한 수입금액(이하 이 항에서 “전자상거래등수입금액”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 중 하나를 선택하여 그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1.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할 때 신고한 사업장별 전자상거래등수입금액이 직전 과세연도의 전자상거래등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사업장별 총수입금액의 증가분을 한도로 한다)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이 해당 사업장의 총수입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해당 사업장의 사업소득에 대한 종합소득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
2.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할 때 신고한 사업장별 전자상거래등수입금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이 그 사업장의 총수입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그 사업장의 사업소득에 대한 종합소득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

####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 3 【성실사업자에 대한 의료비 등 공제】

① 「소득세법」 제52조제9항에 따른 성실사업자(사업소득이 있는 자만 해당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가 「소득세법」 제52조제2항 및 제3항(같은 항 제2호다목은 제외한다)에 따른 의료비 및 교육비(이하 이 조에서 “의료비 등”이라 한다)를 2010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지출한 경우 그 지출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사업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의료비 등 공제 금액이 해당 사업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2. 「소득세법」 제160조제1항에 따라 복식부기의 방식으로 장부를 비치·기록하고,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신고할 것(「소득세

법」 제80조제3항 단서에 따라 추계조사결정이 있는 경우 해당 과세 기간은 제외한다) 4.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직전 3개 과세기간의 연평균 수입금액을 초과하도록 신고할 것. 다만, 사업장의 이전 또는 업종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수입금액이 증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경영할 것 6. 국세의 체납사실, 조세범처벌사실, 세금 계산서·계산서 등의 발급 및 수령 의무 위반, 소득금액 누락사실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할 것

② 제1항에 따른 의료비 공제금액은 「소득세법」 제52조제2항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소득세법」 제52조제2항제1호 및 같은 항 제2호의 “총급여액”은 “사업소득금액”으로 본다.

③ 제1항을 적용받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제받은 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전액 추징한다.

1. 해당 과세기간에 대하여 과소 신고한 수입금액이 경정(수정신고로 인한 경우를 포함한다)된 수입금액의 100분의 20 이상인 경우

2.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사업소득금액 계산 시 과대계상한 필요경비가 경정(수정신고로 인한 경우를 포함한다)된 필요경비의 100분의 20 이상인 경우

④ 제3항에 따라 세액이 추징된 사업자에 대해서는 추징일이 속하는 다음 과세기간부터 3개 과세기간 동안 의료비 등 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 외에 제1항제1호 각 목의 해당 여부의 판정기준, 공제의 신청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 3 【현금영수증사업자 및 현금영수증가  
맹점에 대한 과세특례】

① 현금영수증 결제를 승인하고 전송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춘 사업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청장으로부터 현금영수  
증사업의 승인을 받은 현금영수증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현금영수  
증사업자”라 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현금영수증발급장치 설  
치 건수, 신용카드단말기 등에 현금영수증발급장치를 설치한 사업  
자(이하 이 조에서 “현금영수증가맹점”이라 한다)의 현금영수증 결  
제 건수 및 「소득세법」 제164조제3항 후단에 따른 방법으로 제출하  
는 지급명세서의 건수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해당 과  
세기간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공제받거나 환급세액에 가산하  
여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현금영수증가맹점이 2010년 12월 31일까지 제4항  
에 따른 현금영수증(거래건별 5천원 미만의 거래만 해당하며, 발급  
승인 시 전화망을 사용한 것을 말한다)을 발급하는 경우 해당 과세  
기간별 현금영수증 발급건수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곱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공제세액”이라 한다)을 해당 과세기간의 소  
득세 산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공제세액은 산출세액  
을 한도로 한다.

## 〈부록 2〉 부가가치세 거래징수 및 납부특례 운용(안)

### 1. 근거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조

### 2. 용어의 정의

① 부가가치세 거래징수 특례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였으나 조세특례제한법 제○조에 따라 부가가치세(매출세액)를 거래징수하지 아니하는 자를 말한다.

② 부가가치세 납부대리자: 부가가치세 거래징수 특례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부가가치세 거래징수 특례자를 대리하여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하는 자를 말한다.

### 3. 부가가치세 거래징수 특례자 지정기준

① 국세청장은 국세징수에 필요한 경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간이과세자를 제외한다)를 부가가치세 거래징수 특례자로 지정할 수 있다.

1. 상습·고의적 체납자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국세 체납액이 500만원 이상인 자 중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자

- 나. 국세 체납액이 500만원 이상인 자 중 1년에 3회 이상 체납한 자
- 다. 체납처분을 집행하여도 징수할 금액이 부족한 경우로 관할세무서장이 체납처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2.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 가. 매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하여 제출한 경우 그 기재된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연간 2억원 이상인 자
  - 나. 매입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거나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하여 제출한 경우 그 기재된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연간 2억원 이상인 자
- 3.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 중 국세를 체납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
  - 가. 소득세법 제82조 및 법인세법 제69조에 따른 수시부과 사유에 해당하는 자
  - 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회생계획인가 신청을 한 자
  - 다.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부도발생자
- 4. 신규 사업을 개시하여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자등록한 자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
  - 가. 국세징수법 제8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손처분을 받은 자
  - 나. 국세체납중인 자
  - 다. 조세범처벌법을 위반하여 처벌을 받은 자
  - 라. 기타 세무서장이 유통질서가 문란하여 국세를 체납할 우려가 있어 지정한 관서 내 특정지역, 특정업종 등에 의하여 분류된 자(유흥업소, 공구상가, 주류도매상 등)
- 5. 거래처의 세금체납비율이 50% 이상인 경우 그 거래상대방
- 6. 부가가치세 거래징수 특례 적용을 신청한 자

7. 기타 세무서장이 위호에 준하는 사유로 국세를 체납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한 자

② 다만, 부가가치세 거래징수 특례자 지정과 관련된 사안으로 국세 기본법에 의한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및 행정소송 계류 중인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4. 부가가치세 거래징수 특례적용 거래의 범위

부가가치세 거래징수 특례자가 재화와 용역을 공급시 부가가치세법 제16조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는 거래에 한한다.

\* 영수증 교부거래는 제외

#### 5. 부가가치세 납부대리자의 범위

부가가치세 거래징수 특례자로 지정받은 자로부터 재화와 용역을 공급받는 모든 사업자(부가가치세법 제25조 간이과세자를 제외함)는 부가가치세 거래징수 특례자를 대리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다만, 관할세무서장이 징수의 편의 등을 고려하여 부가가치세 거래징수 특례자의 일부 거래처만을 부가가치세 납부대리자로 한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관할세무서장은 부가가치세 납부대리자를 동시에 지정한다.

#### 6. 지정통지 및 적용시기

① 세무서장은 사업자를 부가가치세 거래징수 특례자로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거래징수 특례를 적용하고자 하는 직전 월의 10일까지 부가가치세 거래징수 특례자에게 등기우편이나 직접송달

의 방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거래징수 특례적용 통지”를 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과 함께 “부가가치세 거래징수 특례적용 통보서”를 교부한다.

②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거래징수 특례적용 통보서”를 받은 달의 다음달부터 부가가치세 거래징수 특례가 적용된다.

## 7. 특례적용 지정 철회

부가가치세 거래징수 특례자가 제3항의 거래징수 특례지정 기준에 해당되지 않게 된 경우나 세무서장이 거래징수 특례를 적용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세무서장은 거래징수 특례적용 철회통지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날까지는 거래징수 특례적용 규정을 적용한다.

## 8. 특례자의 세금계산서 작성 및 교부요령

부가가치세 거래징수 특례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거래징수 특례적용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며 비고란에 “매입자 대리납부”라 표기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사례) 공급가액이 1억원이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 9. 특례자의 세금계산서 합계표 작성 및 제출 요령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거래징수 특례적용 거래에 대하여 거래징수 특례적용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서식 예시)

거래징수 특례적용 세금계산서합계표(갑)						
(           년           기)						
1. 제출자 인적사항						
①사업자등록번호	-	-	②상호(법인명)			
③성명(대표자)			④사업장소재지			
⑤거래기간	년 월 일 ~ 월 일		⑥작성일자	년 월 일		
2. 거래징수 특례적용 발행세금계산서 총합계						
구분	⑦매입처수	⑧매수	⑨공급가액 조 십억 백만 천 일	⑩매입자 대리납부세액 조 십억 백만 천 일		
합계						
3. 거래징수 특례적용 매입처별 대리납부 명세(합계금액으로 기재)						
⑪일련 번호	⑫ 사업자등록번호	⑬상호 (법인명)	⑭매수	⑮공급가액 조 십억 백만 천 일	<16>세액 조 십억 백만 천 일	비고
1						
2						
10						
11						
12						
						(    )쪽

⑰관리번호(매입)	-
-----------	---

210mm×297mm(보존용지(1종) 70g/m<sup>2</sup>)

### 10. 부가가치세 신고서 작성 및 세액계산 요령

거래징수 특례적용 세금계산서 교부분은 매출세액을 “0”으로 표기 하고,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세액은 매입세액란에 △로 표기 하여 신고한다.

- 사례) 일반 세금계산서 공급: 공급가액 10,000,000원
- 거래징수 특례적용 공급: 공급가액 50,000,000원
- 일반 세금계산서 매입: 공급가액 10,000,000원
- 거래징수 특례적용 매입: 공급가액 20,000,000원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input type="checkbox"/> 예정 <input type="checkbox"/> 영세율 등 조기환급	<input type="checkbox"/> 확정 <input type="checkbox"/> 기한후과세표준	신고서	처리기간	
관리번호	□□□□□□□□	신고기간	□□□□	년	□	기( 월 일~월 일)	즉 시	
<b>① 신고 내용</b>								
과 세 표 준 및 매 출 세 액	과 세	세금계산서교부	일반공급	①	10,000,000	- 10 100	1,000,000	
			<b>거래징수 특례적용</b>		<b>50,000,000</b>		<b>0</b>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②		- 10 100			
	영 세 율	기 타	③		- 10 100			
			④		- 0 100			
		⑤		- 0 100				
	예 정 신 고 누 락 분				⑥			
	대 손 세 액 가 감				⑦			
	합				⑧	60,000,000	(가)	1,000,000
	매 입 세 액	세금계산서 수 취 분	일반매입	⑨	10,000,000		1,000,000	
<b>매입자 대리납부</b>				<b>20,000,000</b>		<b>△2,000,000</b>		
고정자산매입			⑩					
예 정 신 고 누 락 분				⑪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⑫				
기 타 공 제 매 입 세 액				⑬				
합계(⑨+⑩+⑪+⑫+⑬)				⑭				
공제받지못할매입세액				⑮				
차				⑯	30,000,000	(나)	△1,000,000	
납부(환급)세액(매출세액(가)-매입세액(나))				(16)		(나)	2,000,000	
경 감 · 공 제 세 액	기타경감·공제세액			(17)				
	신용카드매출전표등발행공제등			(18)				
	합			(19)		(라)		
예 정 신 고 미 환 급 세 액				(20)		(마)		
예 정 고 지 세 액				(21)		(바)		
가 산 세 액 계				(22)		(사)		
차가감하여 납부할 세액(환급받을 세액)(라-마-바+사)				(23)		(23)	2,000,000	
총괄납부사업자 납부할 세액(환급받을 세액)								

### 11. 거래징수 특례적용 부가가치세 납부명세서 작성 및 제출

부가가치세 거래징수 특례자를 대리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는 자는 부가가치세 신고시 “거래징수 특례적용 부가가치세 납부명세서”를 제출한다.

거래징수 특례적용 부가가치세 납부명세서								
신고기간      년    기(    월    일 ~    월    일)								
거래징수 특례적용 지정번호□□□□□□□□								
구분	사업자 등록번호	사업장	적용 기간	공급 가액	세액	가산세	매입세액 납부금액	비고
합계								

22226-38811일  
93.2.9 승인

364mm×257mm  
(신문용지 54g/m<sup>2</sup>)

## 12. 거래징수 특례적용 부가가치세 납부확인서 작성 및 교부

부가가치세 거래징수 특례자를 대리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는 자는 “거래징수 특례적용 부가가치세 납부확인서”를 작성하여 부가가치세 거래징수 특례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거래징수 특례적용 부가가치세 납부확인서							
대리납부자 사업자등록번호 :							
거래징수 특례자 사업자 등록번호 :							
월별	사업장	적용 기간	공급 가액	세액	가산세	매입세액 납부금액	비고
1월							
2월							
합계							

22226-38811일  
93.2.9 승인

364mm×257mm  
(신문용지 54g/㎡)

<국문요약>

##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제도를 통한 거래징수 효율화 방안

김재진

부가가치세는 간접세로서 납세자가 본인의 세금이 아닌 담세자의 세금을 징수하여 납부하는 제도이다. 따라서 납세편의와 납세자가 담세자로부터 징수된 세금을 탈루하지 않고 그대로 국가에 납부하는 납부인의 의무이행이 가장 중요하다.

우리나라의 경우, 1977년 부가가치세가 도입되었다. 도입 시점과 비교하여 경제규모, 공급자와 수요자 간 역학관계 등 부가가치세 제도의 환경은 크게 변화하였다. 그동안 부가가치세 제도와 관련된 연구나 제도 개선이 과세범위, 과세표준, 세율 등과 관련된 부분에 집중되면서 상대적으로 부가가치세 제도 운용비용 절감, 징수구조의 효율화 등에 관한 연구는 다소 미흡하였다.

이론상 세금이 최종소비자에 전가되어 소비자가 담세자가 되며, 사업자는 세금부담이 없는 단순한 납부의무자임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높은 체납비율을 보이고 있다.

새로운 전자금융의 출현 등 시장 환경의 변화를 감안하여 부가가치세를 현실적으로 개선하여 명실상부하게 기간세목으로 자리매김하도록 하고, 시장에서의 역학관계의 변화와 거래결제시스템의 변화에 주목하여 부가가치세 거래징수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실증하여 실효성 있는 제도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현재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거래징수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매입자 납부제도」의 도입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리고 효율적인

「매입자 납부제도」 도입을 위해서는 「사업자-최종소비자(B2C) 거래」와 「사업자-사업자(B2B) 거래」의 특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사업자와 최종소비자(B2C) 거래」에 있어서는 사업자가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사업자와 사업자(B2B) 거래」에 있어서는 원천징수제도와 같이 납세편의, 납부의무의 이행가능성을 고려하여 대리납세자를 유연하게 정할 필요가 있다.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제도」를 도입함으로써 기존의 부가가치세 거래징수제도의 혼란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있을 수 있으나, 매입자 납부제도는 현행 「전단계세액공제법」으로 발생하는 문제점을 보완·완성하기 위하여 공급자의 거래징수를 부인하는 것이 아닌 거래징수의 대리제도이며, 적용대상도 세무이행능력을 감안하여 일부사업자에 한정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제도의 특징과 전반적인 체계 및 문제점들을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들을 제안한다. 특히, 부가가치세의 징수와 관련한 비효율성을 개선함으로써 부가가치세 세수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여, 결손 및 체납의 세수누락을 방지하여 세수수입의 증가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더불어, 납세협력비용 및 행정비용의 절감, 공정거래를 통한 중소기업 보호 등 사회·경제적 효과도 매우 클 것으로 기대된다.

<Abstract>

## A Study on Measures to Improve VAT Collection by Adopting Reverse Charge System

Jae-Jin Kim

Value-added tax(VAT) is an indirect tax collected by intermediary (such as merchant) from the person who bears the ultimate economic burden of the tax(such as the consumer). Therefore, convenience in tax payment for intermediary and their commitment to carry out the responsibility: transferring the collected tax to the taxation authority are most essential aspects in carrying out a successful VAT in the tax system.

South Korea's VAT was introduced in 1977. Since its introduction, economic environment affecting the VAT's effectiveness, such as the size of economy and the dynamic between intermediaries and tax-bearers, have changed significantly from that of the origin. However, so far, studies and tax policy regarding VAT in Korea has been heavily focused on such topics as the scope and standard of VAT and the tax rate than its effectiveness in operating cost and collection structure.

In theory, for VAT, personal end-consumer is the ultimate tax-bearer and merchants simply transfer the collected tax to the tax authority without taking further tax responsibility. However, in Korea, it maintains relatively high arrear payment rate as

large number of merchants fail to remit the collected tax to the authority.

In order to have VAT as a sound periodic tax item for Korea, it is essential to reform VAT law to catch up with the changes in economic environments, such as merge of electronic finance. Furthermore, in order to improve the VAT collection structure, it is essential to understand changes in transaction settlement system as the system is closely related to implement a better measure to collect VAT.

The tax authority could introduce 'Reverse Charge System' to address problems existing in the current VAT system. Whilst, in order to apply 'Reverse Charge' effectively, it must consider the nature of transaction: 'B2C' or 'B2B'.

It is merchant's responsibility to be acting as intermediary for VAT in a 'B2C' transaction. However, in a 'B2B' transaction, similar to the withholding taxes, it is important to choose which party involved in transaction to carry out intermediary responsibility. The decision must be flexible considering likelihood of party's commitment to honor the responsibility and convenience available.

However, if 'Reverse Charge System' is adopted for all types of transactions, it would cause confusions among tax payers who are accustomed to the existing system. Therefore, 'Reverse Charge System' must not be used as an alternative to defy the existing "Tax Credit Method" but to be used for some specific industries that could carry out the taxation responsibility with confidence.

This study examines characteristics, overall system and problems

in Korea's VAT. Based on that, it provides ways to overcome these impediments the existing tax system faces today, in Korea. Especially, it focuses on VAT's collection structure and its related issues.

If the tax authority successfully addresses such related issues by implementing proper measures like 「Reverse Charge System」, it is expected to raise tax revenue. Moreover, the tax authority would be able to predict VAT revenue more accurately, which helps preventing VAT revenue losses caused by omission and arrear payments. Also, it would reduce tax administration costs and enhance social welfare by promoting fair trading in Korea.



〈著者略歷〉

김재진

서강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미국 Michigan State University 경제학 석·박사

현, 한국조세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자료 수집 및 정리

허윤영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원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제도를 통한 거래징수 효율화 방안

---

---

2010년 12월 23일 인쇄

2010년 12월 30일 발행

저 자 김재진

발행인 원윤희

발행처 한국조세연구원

138-774 서울특별시 송파구 가락동 79-6

전화 : 2186-2114(대), www.kipf.re.kr

등록 1993년 7월 15일 제21-466호

조판및 일지사

인쇄

© 한국조세연구원 2010

ISBN 978-89-8191-526-1

\* 잘못 만들어진 책은 바꾸어 드립니다.

값 7,000 원